

국민관심행사등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isted Events’)

심미선/하주용/홍평기/김지연

2025. 12

연구기관 : 한국방송학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orea Media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5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국민관심행사등의 적절성 및 개선 연구』의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년 12월

연구기관 : 한국방송학회

총괄책임자: 심미선(순천향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하주용(인하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홍평기(고려대학교 박사)

연구보조원: 김지연(고려대학교 석사)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및 핵심 내용	3
제2장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민관심행사 관련 쟁점	4
제1절 미디어 환경 변화	4
1. 레거시 미디어의 침체 및 OTT 경쟁력 증대	4
2.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	12
제2절 국민관심행사 범위 및 디지털 중계권 관련 논의	21
1. 국민 관심 행사 현행 범위	21
2. 국민 관심 행사 범위 적정성 여부 논의	24
2. 보편적 시청권 제도 내 디지털 중계권 개념 부재	25
제3장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민관심행사 관련 쟁점	27
제1절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27
1. 영국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괄	27
2. 영국 국민 관심 행사	42
제2절 호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50
1. 호주의 보편적 시청권	50
2. 호주 국민 관심 행사	56
제3절 유럽연합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61
1. 유럽연합	61
2. 독일	64
3. 프랑스	72

제4절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비교 및 시사점	84
1.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운영 비교	84
2. 시사점	88
제4장 국민관심행사 기준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94
제1절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94
1. 설문조사 개요	94
2. 설문조사 결과	96
3. 요약 및 결론	126
제5장 결론	135
참고문헌	139
부록	149

표 목 차

<표 2-1> OTT 이용률, 유료 이용률 추이(~2024)	8
<표 2-2> OTT 1개 적정 구독료, 최대 지불의사 금액	8
<표 2-3> 구독형 OTT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콘텐츠의 장르별 상대적 우수성 ...	11
<표 2-4> OTT,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 최근 내역 및 현황	20
<표 2-5>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의 주요 내용 ..	23
<표 2-6> 2019년, 2022년 국민관심행사 범위 조정 관련 국민 인식	24
<표 3-1> 영국 미디어법 2024에 따른 방송법 1996의 개정 조항	31
<표 3-2> 2024년 미디어법에 따른 제도 변화 요약	33
<표 3-3> 영국의 Listed Event 관련 법조문(2024 미디어법 개정 사항 반영)	34
<표 3-4> 영국의 국민관심행사(listed events)	43
<표 3-5> 이벤트 특성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목표 차이(A그룹 이벤트)	46
<표 3-6> 호주 방송서비스법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조항	52
<표 3-7> 호주 방송서비스법 Part 10B 146U 원문 및 번역문	54
<표 3-8> 호주 국민적 관심행사 목록(anti-siphoning list)	57
<표 3-9> 호주 국민적 관심행사 유지/제외 가이드라인	59
<표 3-10> 유럽연합 AVMSD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	62
<표 3-11>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주간미디어협약(MStV) 제13조	65
<표 3-12> 프랑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레오타르법 조항	73
<표 3-13> 프랑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행령(원문 영어번역)	75
<표 3-14> 프랑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행령(원문 한글번역)	79
<표 3-15>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85
<표 3-16> 주요 국가의 국민적 관심행사 선정 기준	92
<표 4-1>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설계	95
<표 4-2> 대국민 인식도 조사 개요	95
<표 4-3> 인구통계학적 특성	96

<표 4-4> 보편적 시청권 제도 관련 인식 수준	100
<표 4-5> 연령에 따른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가시청 가구 기준에 대한 의견	102
<표 4-6> 국민관심행사 스포츠경기 시청정도 (2019, 2025)	106
<표 4-7>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 시청방식	108
<표 4-8> 국민 관심 스포츠 경기 생방송 시청 매체	109
<표 4-9>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 인기 VS 비인기 종목 위주의 시청여부	110
<표 4-10>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기에 대한 관심도	111
<표 4-11>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 중 유지 혹은 제외되어야 하는 종목에 대한 의견	112
<표 4-12>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113
<표 4-13> 패럴림픽 시청정도	113
<표 4-14>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식에 대한 의견	114
<표 4-1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식 의견에 대한 연령별 일원변량 분석	115
<표 4-16> (방송채널에서 중계가 되는 경우에도) 온라인 스트리밍, 구독형 OTT의 국민관 심행사 추가 시청 필요성에 대한 인식	116
<표 4-17> 국민관심행사 편성에 대한 의견	118
<표 4-18> 국민관심행사 동시 중계에 대한 의견	119
<표 4-19>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 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120
<표 4-20> 국민관심행사 종목 편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121
<표 4-21> 국민관심행사 중복 편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122
<표 4-22> 국민관심행사 동시 편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123
<표 4-23> 국민관심행사 편성 채널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123
<표 4-24> 추후 인기스포츠 시청을 위해 유료 구독료 등의 비용지불의사 여부	125

그림 목 차

[그림 2_1] 방송사업매출 추이	4
[그림 2_2]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매출 추이	5
[그림 2_3] 하루 평균 TV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 추이	6
[그림 2_4] 국내 1인 가구 TV 보유율, 유료방송 가입률 추이	7
[그림 2_5] 국내 OTT 사업자 MAU 추이	9
[그림 2_6] 1일 평균 전체, 1인가구 OTT 시청시간(분)	10
[그림 2_7] 국내 주요 OTT 사업자 영업이익 추이	13
[그림 2_8]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미치는 영향	14
[그림 2_9] OTT 서비스 유료구독 이유 중 '스포츠 중계 시청' 목적 답변 비중(2024~2025)	15
[그림 2_10] 시청 경험이 있는 OTT 실시간 스포츠 중계 종목(복수 응답)	18
[그림 4_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97
[그림 4_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연령	97
[그림 4_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최종학력	98
[그림 4_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소득수준	98
[그림 4_5]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가시청 가구 기준 의견	101
[그림 4_6] 아시안게임, 축구A매치 등 국민관심행사 가시청 가구 기준 의견	103
[그림 4_7] 추후 인기스포츠 시청을 위해 유료 구독료 등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	126

요 약 문

1. 제 목

국민관심행사등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는 미디어 시장이 레거시 방송 중심에서 OTT·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다매체 경쟁 구도로 전환된 이후에도, 국민관심행사 및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여전히 레거시미디어를 중심으로 설계·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모바일·온라인 시청이 확산된 상황에서, 보편적 시청권은 단순히 추가 비용 부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느 매체에서나 누구나 접근 가능한지’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보편적 방송수단으로 인정할지, 디지털 중계에도 해당 의무를 부과할지 등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한 만큼, 현행 목록이 실제 국민의 관심 구조와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국민적 관심’의 기준과 범위 설정을 둘러싼 논의를 실증과 근거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먼저 OTT 확산과 스포츠 중계권 유통 구조 변화, 중계권 유료화·독점화 심화 등 환경 변화를 토대로 현행 제도의 한계와 정책 쟁점을 진단한다. 이어 영국·호주 등 해외에서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포섭하려는 제도 개편 흐름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적용 가능성과 한계, 부작용 통제 장치의 설계 요소를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민관심행사

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분석과 해외사례 분석을 결합해 고시 및 관련 규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국민관심행사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현행 중계범위 기준과 목록 구성에 대한 수용성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림픽과 월드컵처럼 관심이 매우 높은 이벤트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우세했고, 아시안게임이나 국가대표 축구 A매치 등은 75% 이상 기준이 우세했다. 이는 현행 국민관심행사의 목록이 국민의 인식과 대체로 부합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일부 대회는 2019년 대비 2025년에 시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관심도 변화에 대한 지속 점검 필요성도 확인됐다. 또한 응답자의 다수가 방송 중계와 별개로 온라인 스트리밍이나 유료 OTT를 통한 병행 시청을 원해, 보편적 시청권 논의를 방송 중심으로만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주요국 제도를 비교한 결과, 영국과 호주는 온라인과 스트리밍 환경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직접적이다. 영국은 공영방송의 제공 범위를 스트리밍까지 확장하고, 특정 이벤트의 유료 독점이 공익적 접근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장치를 결합하는 방향을 강화했다. 호주는 권리 취득 우선 구조를 재조정하고, 연결형 TV 환경에서 무료 서비스 접근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도입해 디지털 유통 확대 국면에서도 보편성이 후퇴하지 않도록 규제 범주를 넓혔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틀은 방송 중심을 유지하되, 공영과 지상파의 서비스 전략을 통해 무료 스트리밍 제공을 확대하는 간접적 대응이 두드러졌다.

5. 정책적 활용 내용

첫째, 국민 인식과의 정합성이 확인된 만큼 중계범위 기준은 당장 변경하기보다 현행 틀을 유지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다. 다만 관심도 변화가 확인된 종목은 시청 추이와 사회

적 관심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운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디지털 중계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보편성을 구성하는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한다. 무료 접근 가능성, 추가 비용과 가입 장벽, 국민 다수의 실제 도달 가능성 같은 기준을 중심으로 플랫폼 중립적 원칙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제공을 보장 수단으로 인정할 범위와 조건을 설계해야 한다.

셋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계권 계약과 유통 단계에서 작동할 최소 기준과 절차를 정리해야 한다. 핵심은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전제로 삼아야 할 공익적 하한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공 방식에 대해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넷째, 국민관심행사 목록 운영의 정당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 국가 대표성, 시청자 기대와 관행, 배제 위험과 접근 필요성 등 핵심 요소를 운영지침 수준에서 명문화하고, 재검토 과정에서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6. 기대효과

국민 인식 조사와 해외 사례 비교에 기반해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제도 개편의 근거를 확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설명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또한 공익적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되 중계권 거래의 상업적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운영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과도하게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정책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는 균형점을 확보할 수 있다.

SUMMARY

1. Title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Listed Events'

2. Objective and Importance of Research

This study begins from the observation that, even after the media market has shifted from a legacy broadcasting structure to a multi-platform environment led by OTT services and online platforms, Korea's framework for "events of major public interest" and the universal access regime continues to be designed and operated primarily around legacy media. As viewing increasingly takes place on mobile and online platforms, universal access is no longer limited to the question of additional financial burden; it has expanded into an issue of whether people can reasonably access major events regardless of the medium. Despite this shift, key policy questions remain unresolved, including whether online video services should be recognized as eligible means of universal access and whether comparable obligations should apply to digital rights. In addition, with the statutory review deadline approaching for the Public Notice on "major sports competitions and other event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it is necessary to assess whether the current list adequately reflects actual public interest and evolving market conditions, and to reorganize the debate on the criteria and scope of "public interest" on an empirical and evidence-based foundation.

3. Contents and Scope of the Research

The study first diagnoses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the resulting policy issues in light of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expansion of OTT services, shifts in sports rights distribution, and the growing monetization and exclusivity of rights. It then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institutional reforms i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where policy efforts have moved toward incorporating online streaming into universal access frameworks, in order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Korea, along with constraints and design features to mitigate potential side effects. Building on these findings, the study integrates results from a public perception survey on events of major public interest with the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and proposes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Public Notice and related regulatory provisions.

4. Research Results

The public perception survey on events of major public interest indicates broad acceptance of both the current coverage thresholds and the composition of the event list. For highly salient events such as the Olympics and the FIFA World Cup, the most common response was that broadcasting should be limited to channels accessible to at least 90 percent of the population. For relatively less salient events such as the Asian Games or national team football A-matches, the most common response favored a 75 percent threshold.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current framework is generally aligned with public perceptions. At the same time, certain events showed a relatively larger decline in reported viewing between 2019 and 2025, indicating the need for continued monitoring of interest and viewing trends. The survey also found that many respondents prefer to access events not only through traditional broadcasting but also

through online streaming or paid OTT services, underscoring the limits of an approach that treats universal access as a broadcast-only issue.

International comparison further shows that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have taken relatively direct approaches to bringing online and streaming into the policy framework. The United Kingdom has expanded the practical scope of public service provision to include streaming and strengthened institutional mechanisms intended to prevent paid exclusivity for certain events from undermining public access. Australia has broadened regulatory coverage by recalibrating priority structures for rights acquisition and introducing measures to safeguard access to free services in connected-TV environments, thereby preventing universal access from eroding as digital distribution expands. By contrast, Germany and France largely retain a broadcast-centered legal framework, while expanding free streaming access in practice through public service and terrestrial broadcasters' service strategies.

5. Policy Suggestions for Practical Use

Given the overall alignment between the current thresholds and public perceptions, it is reasonable to retain the existing coverage criteria rather than pursuing immediate revisions. However, where declines in interest or viewing are identified, an operation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eriodically monitor trends in audience behavior and social salience.

To address regulatory gaps around digital rights, policy should move beyond listing media types and instead establish platform-neutral criteria that define what "universality" requires. Core elements include the feasibility of free access, the presence of additional costs and subscription barriers, and the extent to which access is realistically available to a broad share of the public. These criteria should then guide decisions on whether, and under what conditions, online provision can be recognized

as a means of compliance.

To strengthen effectiveness, minimum standards and procedures should be clarified at the contract and distribution stages. The objective is not to block transactions in the rights market, but to articulate a clear public-interest floor that rights deals must respect, and to establish procedural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regulator can intervene when distribution methods materially undermine that floor.

Finally, to improve legitimacy and predictability, selection criteria for events of major public interest should be specified more concretely. Key factors such as social and cultural significance, national representativeness, audience expectations and established viewing practices, risks of exclusion, and the necessity of broad access should be codified in operational guidelines and applied consistently in future review cycles.

6. Expectations

By deriving reform directions from both public perception data and international comparison, the study strengthens the evidentiary basis for institutional change and enhances the legitimacy and explainability of policy decisions. In addition, by establishing an operational structure that clarifies minimum public-interest standards while accounting for the commercial realities of sports rights transactions, the study supports a more sustainable balance in which policy objectives can be achieved without unduly undermining market function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미디어 시장이 레거시미디어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플랫폼·OTT 기반의 다매체 경쟁 구도로 빠르게 재편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 OTT, 온라인 스트리밍 사업자들이 방송 영역으로 본격 진입하면서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스포츠 콘텐츠 유통 또한 전통적인 TV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스포츠 중계 전문 PP뿐만 아니라, 티빙·쿠방플레이 등 OTT 사업자들이 가입자 확보와 이탈 방지를 위해 인기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중계권의 유료화·독점화로 이어지고 있다. 하여, 국민 다수가 관심을 갖는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특정 사업자가 독점할 경우 보편적 시청권의 보장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증대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은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해 왔으나, 플랫폼 중심 시청으로의 전환 속도에 비해 제도의 포섭 범위와 집행 수단은 여전히 방송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적 제도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신삼수 외, 2023).

먼저, '디지털 중계권'을 보편적 시청권 체계에 어떻게 포함할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하다. 온라인 스트리밍과 모바일 시청이 일상화되면서,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은 비용뿐만 아니라 매체 접근성의 문제까지 확장되고 있다. 보편적 시청권을 다양한 매체 환경에서의 접근권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이러한 변화에 기반한다(정두남, 2015). 실제로 스마트폰을 필수 매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3%로 텔레비전의 22.6%를 크게 상회하는 등, 주요 매체 인식 수준은 이미 모바일·온라인 중심으로 이동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온라인 중계는 전통적인 TV 중계보다 복수 종목 동시

제공, 하이라이트·전체 다시보기 등의 기능으로 인해 이용자 편익 및 선호도가 높다. 실제로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온라인으로 독점 중계한 치지직의 경우, 신규 이용자가 중계 이전 기간 대비 약 10배가량 증가한 바 있다(전자신문, 2025.2.16.). 그러나 현행 제도는 지상파·케이블·위성·IPTV 등 전통적 방송 수단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OTT를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윤성욱, 2019).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보편적 방송수단’으로 인정할지, 디지털 중계에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 의무를 부과할지의 여부는 공익적 시청권 보장과 시장 거래 자유 간 충돌을 불러일으키는 쟁점이다. 의무 부과가 디지털 중계권 거래를 위축시키고 사적 자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우려(노창희, 2023)와 공익적 이벤트에 대한 접근권을 플랫폼 시대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도준호, 2025)가 병존하는 만큼, 정책적 관점 및 사업 구조를 포함한 종합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영국과 호주 등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을 방송에 한정하지 않고 온라인 스트리밍 영역까지 포섭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이 진전되는 등,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 권리를 TV와 온라인 모두에서 구현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를 보편적 시청권 이행 수단으로 인정하거나, 보편적 시청권 의무 이행 주체에게 디지털 중계권 협상에서 일정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은 시청 행태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이슈는 시장 경쟁 제한,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 실행 가능성 문제 등 우려 사항도 수반되는 만큼,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제도 도입의 실효성과 부작용을 균형 있게 분석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4호)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해당 고시 내 대회 및 행사 범위의 적정성 또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행 고시는 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WBC 및 축구협회 주관 성인 남자 국가대표팀 평가전 등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대회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는 프로경기나 국내 인기 선수 출전 경기 등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뉴스토마토, 2024.8.6.). 특히 2024년부터 티빙이 KBO 디지털 중계권을 확보하여, 더 이상 포털을 통해 추가비용 없이 경기를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없는 등 시장 변화가 가시화되면서, 국민관심행사의 범위와 기준을 기존 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권영·이영주, 2025). 2019년과 2022년 재검토에서는 기존 수준을 유지했으나, ‘국민적 관심’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스포츠 콘텐츠를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종결되지 않았다. 이는 대형 국제 이벤트는 상대적으로 합의가 용이하지만, 그 외 종목의 포함·제외는 이해관계 충돌이 크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노창희 외, 2022). 국민관심행사의 지정 여부는 방송사업자·플랫폼사업자·스포츠 단체의 수익 구조와도 직결되므로, 국민 후생을 위한 정책 결정이라는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 인식 조사와 다각적 검토를 통한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 연구 목적 및 핵심 내용

본 연구는 현행 국민관심행사 목록이 변화한 미디어 환경과 국민의 관심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고시 재검토와 관련하여 합리적 개선방향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스포츠 중계가 레거시 미디어 중심에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관심행사와 연계된 보편적 시청권의 정의와 정책 목표를 온라인 플랫폼 시대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첫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보편적 시청권 체계에 포함한 국가의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국내 방송·플랫폼 시장 구조와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제도 설계 시 쟁점과 적용의 한계를 도출한다. 둘째, 국민관심행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목록에 대한 국민의 인지·관심 수준을 측정하고, 제외 또는 신규 편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행사, 보편적 시청권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분석한다. 이 결과를 근거로 법·고시 개정 필요 사항과 개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민 인식 변화에 기반한 국민관심행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미디어 환경 변화와 국민관심행사 관련 쟁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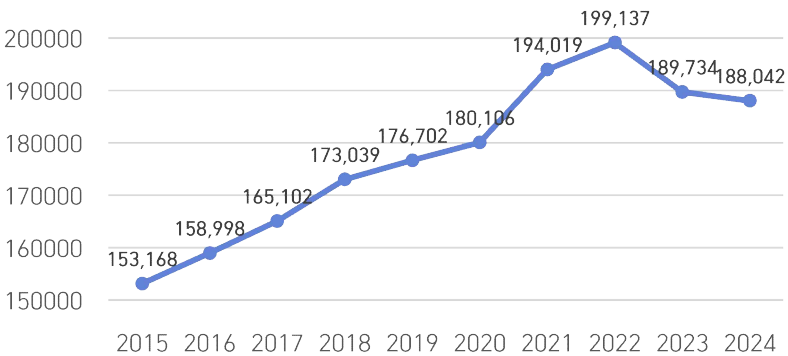
제1절 미디어 환경 변화

1. 레거시 미디어의 침체 및 OTT 경쟁력 증대

디지털 플랫폼 환경의 확산과 함께 영상 콘텐츠 소비의 중심축은 레거시 미디어에서 OTT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인식이 아닌, 실제 수치가 증명하는 명확한 사실이다. 국내 방송사업매출 총액은 최초 집계 이후 2022년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해 왔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경제 자체가 위축되었을 때도 방송시장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팬데믹이 종료된 2023년, 방송시장의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9,403억 원(4.7%) 감소하였다.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는 의견도 일부 제기되었으나, 2024년에 또다시 1,692억 원(0.9%)이 감소하며(방미통위, 2025), 방송시장의 위축이 단순한 일회성 현상이 아닌 미디어 환경 변화가 촉발한 현실로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그림 2_1] 방송사업매출 추이

(단위 : 십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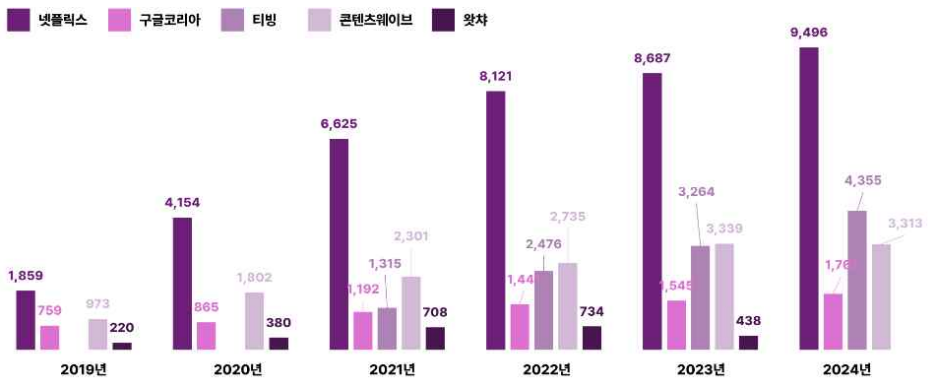


출처 : 2024년도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방미통위, 2025)을 기반으로 재구성

반면 국내 OTT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약 5.6조 원에 이르렀으며, 2027년에는 7조 원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메조미디어, 2024). 국내 OTT 사업자들의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최신년도(2024년) 넷플릭스의 매출액은 9,496억 원으로 2023년 대비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¹⁾. 티빙 역시 전년 대비 33.4% 상승한 4,35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여 국내 OTT 서비스 시장 규모의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구글코리아의 재무제표 매출액 중 유튜브 서비스 관련 연관성이 높은 '광고 및 기타 리셀러 수익'의 경우, 2019년에 759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액이 2024년에는 1,761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방송사업매출과는 달리 규모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_2] 국내 주요 OTT 사업자 매출 추이

(단위 : 억 원)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한국콘텐츠진흥원(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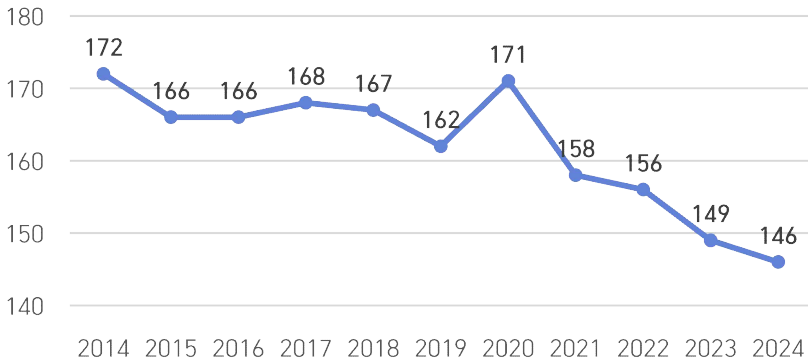
필수 매체에 대한 인식도, 이용 시간 측면에서 TV와 온라인 매체는 상반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의 필수 매체에 대한 인식률은 스마트폰이 75.3%로 전년(70.0%) 대비 5.3%p 늘어난 반면, TV는 22.6%로 전년(27.2%) 대비 4.6%p 감소하여 약 3.3

1) 2020년에 설립한 '넷플릭스엔터테인먼트코리아', 기존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두 기업 매출액의 합

배 이상으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70대 이상에서도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2022년 14.4%에서 2024년 27.2%로 증가해, 매체 영향력의 전이가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방미통위, 2025).

하루 평균 TV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하락추세를 그리고 있다. 2014년에는 172분으로 3시간에 육박하던 TV 시청시간이 2024년에는 146분까지 감소한 것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TV시청시간은 각각 43분과 58분으로 평균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문제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TV시청시간의 감소가 확대될 경우 전 세대에 걸쳐 TV 매체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TV 매체의 영향력 및 경쟁력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2_3] 하루 평균 TV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시청시간 추이
(단위 : 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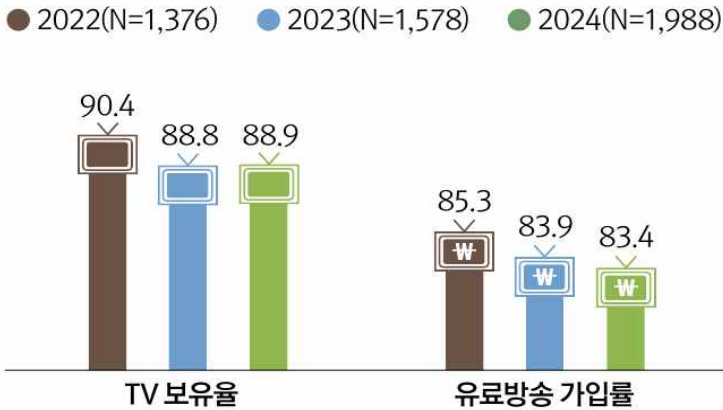


출처 : 202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미통위, 2025)를 기반으로 재구성

물론 해외 선진국들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코드커팅 현상이 표면적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023년까지는 총 가입자 수가 한번도 감소한 적이 없었고, 2024년 최초로 줄어들긴 했으나 감소폭이 상반기 -0.02%, 하반기 -0.05%로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과기부 2025). 이로 인해 OTT와 국내 유료방송 서비스 간 대체보완성 논의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며(한영주, 2022; 백지원, 2023; 이선미, 2024), 최근 일각에서는 OTT가 유료방송의 보

완재로 기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백진주, 2025). 그러나 통계를 상세히 살펴보면, 개별 가입자 단위의 코드 커팅은 이미 2021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서 한 번도 유료방송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코드네버(cord-nevers) 현상 또한 나타나고 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4). 1인 가구의 비율이 2022년 34.5%, 2023년 35.5%, 2024년 36.1%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통계청, 2025),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유지 되려면 독립하는 젊은 층이 신규로 가입해야 하나, 상술했듯 TV를 이용한 콘텐츠 이용 시간이 매우 낮은 세대가 굳이 추가 요금을 지출하면서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유인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1인 가구의 TV 보유율은 2024년과 2023년 사이 변화가 없었지만, 유료방송 가입률은 0.5% 감소하였다. 이는 2025년 상반기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2024년 하반기 대비 전체적으로 -0.38% 감소(방미통위, 2025)한 비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향후 본격적인 시장 위축을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림 2_4] 국내 1인 가구 TV 보유율, 유료방송 가입률 추이



출처 : 202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미통위, 2025)

반면 국내 전체 OTT 서비스 이용률, 유료 이용률은 모두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유료 이용률이다. 2020년에는 21.7%에 불과하였으나, 2021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50.1%로, 2024년에는 59.9%까지 증가했기 때문이다. 과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기가 존재해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실질적인 지출을 매우 꺼려왔

던 한국인의 특성(곽동균 외, 2015)을 감안하면, 이는 유의미하게 높은 수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1> OTT 이용률, 유료 이용률 추이(-2024)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OTT 이용률	66.3%	69.5%	72.0%	77.0%	79.2%
OTT 유료 이용률	21.7%	50.1%	55.9%	57%	59.9%

출처 : 202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미통위, 2025)를 기반으로 재구성

유료 이용률뿐만 아니라, 현재 OTT 1개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또한 증가하고 있다. 2024년 유료 OTT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출한 OTT 1개의 적정 구독료는 7,294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7,939원으로 8.8% 증가하였다. 광고 요금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 구독료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 최대 지불의사 금액은 15,191원에서 14,076원으로 감소하여 두 지불의사 간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향후 OTT 사업자가 가격 인상을 검토할 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2025).

<표 2-2> OTT 1개 적정 구독료, 최대 지불의사 금액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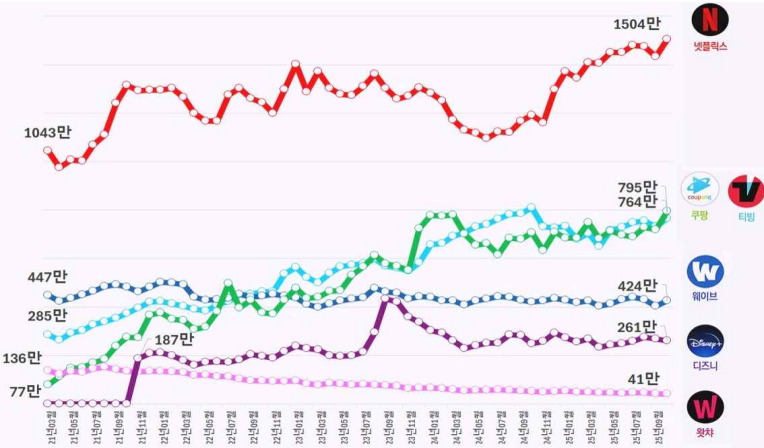
구분	2024년	2025년
OTT 1개 적정 구독료	7,939	7,939
OTT 1개 구독 최대 지불의사	15,191	14,076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24, 2025)

OTT 유료 이용률의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국내 구독형 OTT 서비스 이용자 수 또한 자연스럽게 확대되었다. OTT의 경우 추가입자 수에 대한 정부나 기관의 공식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자 또한 이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별도로 조사한 OTT 앱의 이용자 수 데이터를 활용한다. 국내 OTT 서비스의 스마트폰 앱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는 2025년 상반기 최초로 2,000만 명을 상회하였으며, 2025년 11월 기준

넷플릭스 이용자 수는 약 1,504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쿠팡플레이는 이용자 795만 명을 기록하며 765만 명의 티빙을 3위로 끌어내리고, 2위를 달성하였다(미디어오늘, 2025.12.10). 중북 집계임을 감안하더라도 2021년 약 2,200만 명 수준이었던 총합 MAU가 2025년 말에는 약 3,800만으로 72% 증가한 셈이다.

[그림 2-5] 국내 OTT 사업자 MAU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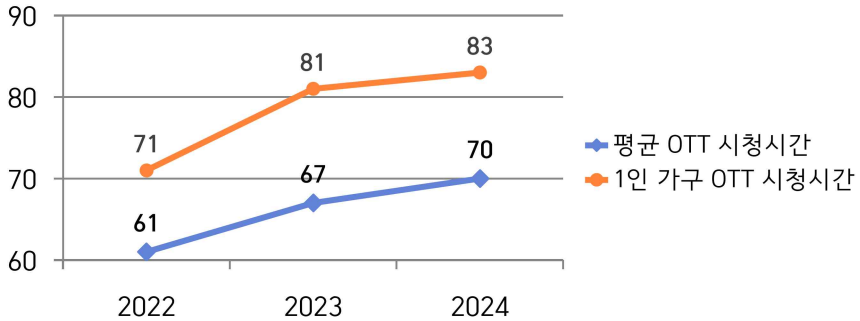


출처 : 모바일인덱스; 미디어오늘(2025.12.10)

TV를 이용한 방송프로그램 시청 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OTT 이용 시간은 이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전체 이용자 기준 일평균 OTT 이용시간은 2022년 1시간 1분에서 2023년 1시간 7분, 그리고 2024년에는 1시간 10분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이용 시간이 2년 전에 비해 12분 증가한 1시간 23분으로,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며 OTT 이용 시간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이는 1인 가구의 유료 방송 가입률이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인 흐름이다(방미통위, 2025).

2) OTT의 경우, 유료방송과 같이 가입자 수가 정확히 집계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업체에서 조사하는 스마트폰 앱의 이용자 수로 현황을 평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림 2_6] 1일 평균 전체, 1인가구 OTT 시청시간(분)



출처 : 2024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방미통위, 2025)를 기반으로 재구성

미디어 소비자가 레거시 미디어를 외면해하는 이유는 매체 특성에서 기인한 접근성, 편의성 때문만이 아니다. 유료방송 가입자 중 상당수는 OTT 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실시간 방송채널 시청 시간과 채널 수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를 중복 응답으로 집계한 결과, ‘OTT 제공 콘텐츠를 보기 위해서’가 67.8%로 1위, ‘유료방송 제공 프로그램에 흥미를 잃어서’가 32%로 2위를 차지했다(방미통위, 2025). 이를 고려하면, 실시간 TV 프로그램의 내용 자체가 경쟁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즉,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가 콘텐츠 체감품질 측면에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드라마와 영화 장르에서 OTT 콘텐츠가 유료 방송보다 품질이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특히 영화 장르의 경우 OTT가 우수하다고 답한 비율이 43.8%, 유료방송은 16.2%로 OTT가 약 2.7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두 서비스가 제공하는 영화 자체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실제로 영화, 드라마 장르의 기여도가 높은 유료방송 사업자의 VOD 매출은 OTT 이용자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³⁾, VOD 매출의 대다수가 영화 및 드라마 장르에서 발생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 가능하다.

3) 유료방송 사업자의 VOD 매출액은 2020년 7,556억 원, 2021년 6,305억 원, 2022년 6,077억 원, 2023년 4,877억 원, 2024년 4,460억 원으로 매년 감소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가정 체류시간이 폭증한 2020년, 2021년에도 매출 감소는 이어졌다.

<표 2-3> 구독형 OTT 서비스와 유료방송서비스 콘텐츠의 장르별 상대적 우수성

(단위 : %)

콘텐츠 장르	OTT가 우수	유료방송이 우수	유사	해당 장르 시청안함
드라마	35.2	14.4	48.4	2.1
영화	43.8	16.2	37.8	2.2
뉴스	4.8	28.4	55.3	11.5
다큐멘터리	18.0	16.9	50.8	14.4
예능	17.8	17.8	59.4	5.0
어린이	13.7	14.2	42.7	29.4
스포츠	14.8	22.6	46.0	16.7
시사교양	9.4	18.0	55.5	17.2

출처 : 2024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방미통위, 2025)

반면 뉴스, 스포츠 등 실시간 콘텐츠는 아직까지 유료방송이 더 우수하다는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뉴스의 경우 구독형 OTT 중 티빙과 웨이브에서만 실시간으로 종편 및 보도 채널을 시청할 수 있을뿐 다른 OTT에서는 뉴스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방법은 TV를 통한 유료방송이 유일하다. 그러나 스포츠의 경우 TV에서 방영되는 대다수의 경기를 구독형 OTT에서 시청 가능하고, F1처럼 TV 채널이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기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유료방송이 우수하다는 답변의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 또한 후술할 OTT 사업자의 적극적인 스포츠중계 마케팅을 통해 향후 역전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콘텐츠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인 광고시장 또한 레거시 미디어의 침체를 여실 없이 보여준다. 특정 매체의 이용 시간과 콘텐츠에 대한 관심 수준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광고주의 선호도도 떨어진다. 광고 매체 선정은 정량적, 정성적인 다양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지만, 광고 집행의 일차적인 목표는 다수의 매체 수용자에게 광고 노출의 기회를 획득하는 데 있으므로, 광고주와 광고 예산의 이동은 매체 수용자의 이동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방송사업자의 광고 매출의 저하로 이어져 전반적인 재원 흐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온라인 광고비는 9조 3,653억 원으로 방송광고비 3조 3,899억 원의 약 3배에 달하며, 2025년 역시 온라인 10조 136억 원, 방송 3조 252억 원으로 격차가 더욱 확대될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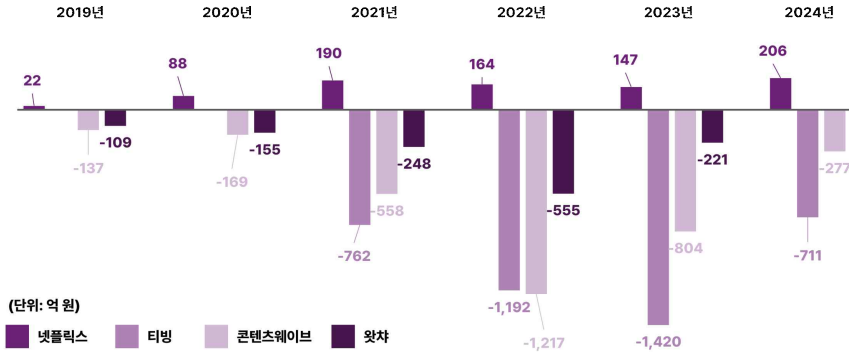
망이다(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25). 물론 OTT 광고비 추이에 대한 공식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비의 증대 및 방송 광고비의 위축이 OTT의 경쟁력 제고에서 기인한다고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용자 및 광고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로 이를 간접적으로 유추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령 최근 구독형 OTT 광고요금제 이용비율이 34.7%까지 치솟았으며, 현재 광고요금제 이용자중 87.3%는 향후에도 해당 요금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답한 것(한국콘텐츠진흥원, 2025)을 고려하면 향후 OTT 광고 요금제 이용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광고업계 종사자들의 인식도 이용자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광고주 82명 중 61명(74.4%)은 향후 OTT 광고 효과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광고 대행사 종사자도 '방송광고를 집행할 수 없을 경우 대체재로 OTT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60.9%로 높게 나왔으며, 향후 OTT 광고 집행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한 비율은 77.1%에 달했다. 이처럼 이용자, 광고주, 광고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OTT 플랫폼이 광고시장의 핵심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2. OTT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

매출과 이용 시간 측면에서 OTT가 레거시미디어의 영향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지만, OTT 또한 수익 구조 측면에서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콘텐츠 제작비의 지속적인 상승과 사업자 간 경쟁 심화로 인해 영업이익을 내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인가능한 최신년도(2024년)의 OTT 사업자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유일하게 넷플릭스만이 흑자를 내온 것으로 나타났다. 넷플릭스는 2019년 22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이 2024년에는 206억 원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에 국내 OTT 사업자는 최근 6년 동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가장 적자 폭이 큰 사업자는 티빙과 웨이브다. 티빙은 2023년 1,420억 원으로 역대 가장 많은 영업손실을 보이다가 2024년에는 절반 수준인 711억 원으로 회복하였다. 웨이브 또한 2022년 1,217억 원으로 최대의 영업손실을 냈고, 2024년에는 277억까지 회복했다. 그러나 합병을 앞둔 두 기업의 영업손실의 합이 여전히 1,000억 원을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전히 수익성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그림 2_7] 국내 주요 OTT 사업자 영업이익의 추이

(단위 : 억 원)



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한국콘텐츠진흥원(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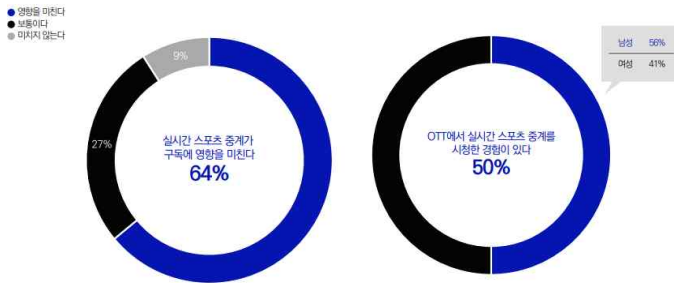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손실 수준의 감소가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큰 콘텐츠에 대한 투자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에 나타난 영향이라는 사실이다. 영업손실의 회복세가 콘텐츠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는 없다. OTT는 유료방송과 같이 약관을 통해 년 단위로 계약을 유지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자의 유입만큼이나 이탈이 쉽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OTT 사업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스포츠 콘텐츠로 눈을 돌리고 있다. 즉, 스포츠 중계권 확보를 통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기존 사용자의 이탈률을 줄이는 락인(Lock-in) 전략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전략은 실증적 효과가 대외적으로 입증된 방법이다. 쿠팡은 2024년 8월 당시 쿠팡와우 멤버십의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여 가입자 이탈이 전망되었으나, 같은 달 손흥민과 김민재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대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를 독점 중계하여 오히려 쿠팡플레이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가 12.1% 늘어났다(이코노믹 데일리, 2024.9.4). 이후 쿠팡플레이는 지속적으로 스포츠 중계권을 확보하여 2025년 2월

티빙을 제치고 국내 OTT MAU 2위를 달성하였다(비즈위치, 2025.3.16). 티빙 또한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야구 경기가 없는 날은 평균 84만 명이었으나, 경기가 있는 날은 110만 명을 기록해 스포츠경기 유무가 DAU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파이낸셜뉴스, 2025.6.15).

OTT 이용자 조사 결과 또한 스포츠 콘텐츠가 가입자 유입 및 이탈 방지에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OTT 이용자 중 실시간 스포츠 중계를 시청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50%로 나타났고, 해당 중계가 OTT 구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단 27%에 불과했다(메조미디어, 2025).

[그림 2_8] 실시간 스포츠 중계가 OTT 구독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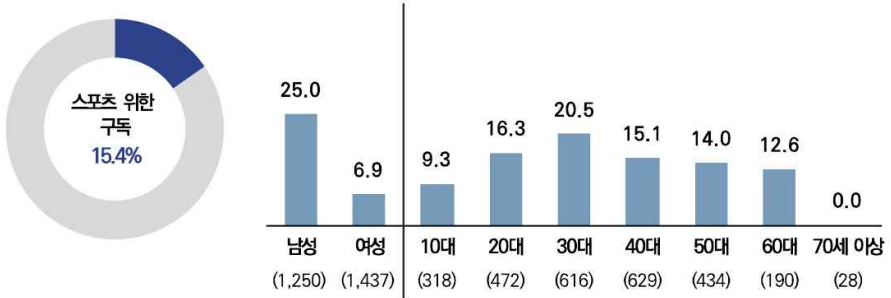


출처 : 메조미디어(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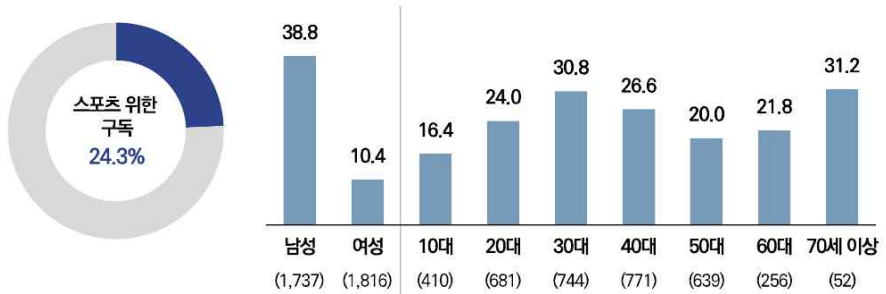
스포츠 중계가 단순히 OTT를 유료로 구독하는 수많은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비율도 2024년 15.4%에서 2025년 24.3%로 전년 대비 1.58배 상승하였다. 표본이 부족하여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70대 이상을 제외하더라도,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고연령층에서도 일관적으로 스포츠 중계를 중시하는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OTT의 향후 사업 전략 구상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성 비율 또한 전년대비 기준 1.57배 상승했는데, 이는 남성 비율이 1.55배 상승한 것보다 미묘하지만 더 높은 수치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림 2-9] OTT 서비스 유료구독 이유 중 ‘스포츠 중계 시청’ 목적 답변 비중(2024~2025)

<2024년>



<2025년>



()는 성별, 연령별 표본 수

출처: 한국콘텐츠진흥원(2024, 2025)

이렇듯 스포츠 콘텐츠의 가입자 유인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유료 구독형 OTT 사업자 뿐만 아니라, SOOP(구 아프리카), 네이버 치지직 등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 또한 지속적으로 스포츠경기 중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쿠광플레이는 2025년 이후 국내 온라인 플랫폼 가운데 스포츠 중계권 확보 측면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OTT다. 쿠광플레이는 특히 축구 경기 중계권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은 K리그 중계권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과 2022년 4월 2022시즌부터 2025시즌까지 K리그 전 경기에 대한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다(조선일보, 2022.4.12.). 쿠광플레이는 단순 리그 경기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 여

름마다 해외 명문 구단과 K리그 올스타의 이벤트 매치를 주최·주관·중계하는 모델도 병행해 왔다. 그리고 해당 경기의 중계권을 방송사업자에게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쿠광플레이만을 통해 시청할 수 밖에 없었다.

이후 쿠광플레이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차례로 스페인 라리가, 프랑스 리그1, 독일 분데스리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중계권을 확보하였다. 특히 2025/26 시즌부터 6년간 EPL 전 경기를 국내에서 독점 생중계 계약을 총 4,200억 원, 연평균 약 700억 원에 달하는 리그에 한정하지 않았다. 2025년 5월 쿠광플레이는 EFL 챔피언십(2부 리그), 리그 원(3부 리그), FA컵, 카라바오컵, 커뮤니티 실드까지 포함한 ‘잉글랜드 축구 패키지’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한국경제, 2025.3.24.). 이로써 쿠광플레이는 유럽 5대 리그 중 이탈리아 세리에A4)를 제외한 모든 대회 중계권을 독점적으로 확보하였고, 해외 축구 리그 중계는 기존 유료방송 및 스포츠 전문 채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OTT 단일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전환점을 맞았다(심미선 외, 2024). 또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미국 LAFC로 이적한 직후 LAFC 전 경기 독점 중계 및 다년 계약 체결을 발표하여(연합뉴스, 2025.9.14.), 손흥민 경기를 독점적으로 중계하고 있다.

쿠광플레이의 중계권 확보는 프로 축구 경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2023년 4월 쿠광플레이와 2025년부터 2028년까지의 한국 내 마스터 미디어 권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연합뉴스, 2023.4.17.). 이 계약은 단일 대회가 아니라 AFC가 주관하는 국가대표 경기와 클럽 대회를 포괄하는 구조다. 특히 쿠광이 구매한 ‘AFC 패키지’에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과 아시안컵이 포함돼 있다. 이는 후술할 국민적 관심 행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 관점에서 여타 프로스포츠 중계권보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축구 외 종목으로 시선을 넓히면, 2025/26 시즌부터 NBA 정규리그, 올스타전, 포스트 시즌(컨퍼런스 파이널 포함), NBA 파이널을 국내에서 독점 생중계 중이며, 매주 최소 7경기를 한국어 해설로 제공 중이다. 이 계약의 금액과 정확한 계약 연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쿠광플레이는 NBA 중계를 스포츠 패스 핵심 콘텐츠 중 하나로 홍보하고 있다. F1의 경우, 2023년 2월에 체결한 F1과의 독점 라이브 스트리밍 파트너십을 2025년 9월 재차 연

4) 이탈리아 세리에A 중계권은 SPOTV가 확보하고 있음

장하여, 2026시즌부터 모든 세션을 국내 최초로 4K 초고화질로 제공할 예정이다. 미식축구(NFL)도 쿠광플레이가 시즌 단위로 꾸준히 확보해 온 종목이다. 쿠광플레이는 2024년 9월 2024 NFL 시즌 경기 생중계를 공식화했고, 2025년 2월에는 슈퍼볼(LIX) 중계를 예고하며 와우 회원 혜택 형태로 제공한다고 밝혔다(조선비즈, 2025.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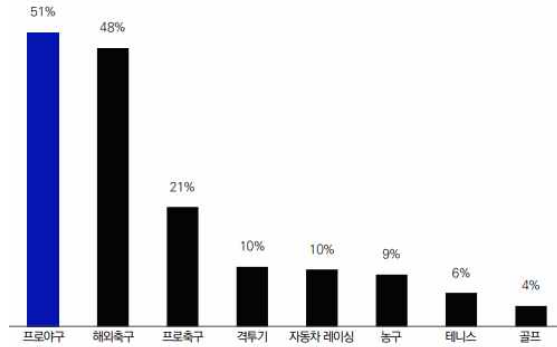
종합하면 쿠광플레이는 EPL, K리그, NBA 등 대형 프로스포츠와 함께 월드컵 예선, 아시안컵, A매치 평가전 등 국민관심행사 범주에 해당하는 국가대표 경기까지 포괄적으로 확보하며, 스포츠 중계 영역에서 사실상 종합 플랫폼의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쿠광플레이 다음으로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적극적인 사업자는 티빙이다. 티빙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종목은 야구다. 2024년 3월 한국야구위원회(KBO)와 2024~2026시즌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티빙은 해당 기간 KBO 리그 전 경기의 온라인 생중계를 독점하고 있다. 계약 기간은 3시즌이며, 금액은 언론 보도를 통해 총 1,350억 원(연평균 약 45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심미선 외, 2024).

프로야구에 이어 티빙은 국내 프로농구(KBL)리그의 중계권 또한 보유하고 있다. 중계권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티빙은 2024/2025 시즌부터 4년간 뉴미디어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여(조선일보, 2024.6.27.), 야구와 농구라는 두 개의 인기 스포츠 프로리그를 동시에 중계 중이다.

또한 티빙은 2026년 3월 개최되는 WBC의 뉴미디어 중계권을 확보하여(지디넷코리아, 2025.12.17.), 온라인으로는 단독으로 야구 국가대표의 경기를 중계하는 사업자가 되었다. 즉, 프로야구 리그(KBO)에 이어 국가대표 야구 콘텐츠까지 시청 경로를 집중시키는 구조를 완성한 것이다. 실제 시청 경험이 있는 실시간 스포츠 종목 중 프로야구가 5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티빙의 프로야구 중계권 확보가 이용자 노출 측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한다.

[그림 2-10] 시청 경험이 있는 OTT 실시간 스포츠
중계 종목(복수 응답)



출처 : 메조미디어(2025)

이 밖에도 2024년 6월 KBL과 계약을 체결해 2024/25시즌부터 2027/28시즌까지 4시즌 동안 중계권을 확보하였고, 2025년 5월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테니스 메이저 대회(롤랑가로스, 윌블던, US오픈)를 연속적으로 중계한 바 있다.

웨이브는 대형 리그의 독점 중계권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는,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권을 확보한 스포츠 이벤트에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4 파리 하계올림픽으로, 지상파 3사(KBS·MBC·SBS)가 보유한 중계권과 연계해, 실시간 중계뿐만 아니라 주요 경기 다시보기, 하이라이트를 제공했다. 그 결과 웨이브는 신규 유료 구독자도 평소 대비 2.3배 증가하고, 특히 여자 양궁 단체전 결승전이 열린 시점에 지상파 실시간 채널 동시접속자가 직전월 대비 5.2배 증가하는 등 일부 성과를 거뒀다(뉴시스, 2024.7.30.).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은 유료 구독형 OTT 사업자에만 한정된 현상은 아니다. 네이버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치지직 또한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단독으로 온라인 중계했다. 네이버는 대회 종료 직후 성과를 수치로 공개했는데, 하얼빈 중계 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 수가 중계 이전 대비 약 10배 증가했고, 전용 중계 채널 누적 페이지뷰(PV) 1,000만을 기록했다(한국경제, 2025.2.6.). 치지직은 기존에 e스

포츠 중심으로 중계를 했던 경험을 살려 하얼빈 아시안게임에서 방송사의 공식 해설 대신 스트리머가 시청자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중계를 진행하는 등 차별화된 방식을 택했고, 이것이 성과로 연결됐다는 평가를 받았다(전자신문, 2025.2.16.).

SOOP(아프리카TV) 또한 치지직과 유사한 전략을 사용했다. SOOP은 2024년 파리 올림픽의 한국 대표팀 출전 경기 32개 종목 및 패럴림픽 주요 경기를 중계했는데, 지상파의 실시간 채널을 그대로 송출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가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는 형식의 스트리밍을 제공하였다. SOOP은 올림픽 기간 중 특정 경기에서 최고 동시접속자 45만 명을 기록했으며, 심야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종목 경기에는 40만 명 이상을 유입시키는 것에 성공했다(지디넷코리아, 2024.8.7.).

반면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는 국내 OTT 경쟁 구도에서의 존재감과는 달리, 스포츠 중계권 확보에 크게 집중하는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 콘텐츠는 프로레슬링(WWE)을 제외하면 메이저리그 오프닝 경기, 미식축구 크리스마스 경기, 복싱 타이틀 매치 등 단발성 이벤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디즈니플러스는 2025년 12월 6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대회 '2025 LoL 케스파(KeSPA)컵'을 독점 중계했는데, 모바일인덱스 기준 MAU 300만 명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는 디즈니플러스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젊은 층의 선호도가 높은 e스포츠 중계권을 구매한 것으로 분석된다(IT조선, 2025.12.7.).

<표 2-4> OTT,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사업자의 스포츠 중계 최근 내역 및 현황

사업자	종목 / 행사	중계
쿠팡플레이	축구	K리그 (2022~2025. 3년 계약) 프랑스 리그1 (2021/2022~ 계약년도 비공개) 스페인 라리가 (2023/24~2027/28, 5년 계약) 독일 분데스리가 (2024/25~2027/28, 4년 계약) 잉글랜드 EPL (2025/26~2030/31, 6년 계약) 잉글랜드 컵대회(FA컵·카라바오컵 등) (EPL과 동일) MLS LAFC 경기(2025시즌부터, 계약년도 비공개) AFC 패키지(아시아 예선·아시아컵 등) (2025~2028)
	농구	NBA (2025/26~, 계약년도 비공개)
	미식축구	NFL (2021~, 계약년도 비공개)
	모터스포츠	F1 (2023~, 계약년도 비공개)
티빙	야구	KBO(2024~2026. 3년 계약) WBC(2026. 단권 계약)
	농구	KBL (2024/25~2027/28, 4년 계약)
	격투기	UFC (2022~2025. 3년 계약)
	테니스	호주 오픈 (2025~2027. 3년 계약) 롤랑 가로스 (2024~2026. 3년 계약) 윌블던 (2024~. 계약년도 비공개) US 오픈 (2024~. 계약년도 비공개)
웨이브	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
치지직	아시안게임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SOOP	올림픽	2024 파리 올림픽
	패럴림픽	2024 파리 패럴림픽

출처 : 조선일보, 2022.4.12; 연합뉴스, 2023.4.17; 조선일보, 2024.6.27; 지디넷코리아, 2024.8.7; 뉴시스, 2024.7.30; 한국경제, 2025.2.6; 한국경제, 2025.3.24; 조선비즈, 2025.6.2; 연합뉴스, 2025.9.14; IT조선, 2025.12.7; 지디넷코리아, 2025.12.17. 참조

제2절 국민관심행사 범위 및 디지털 중계권 관련 논의

1. 국민관심행사 현행 범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 개념은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서 나왔다. 따라서 국민관심행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시청권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보편적 시청권은 누구나 차별 없이 중요한 방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청의 보편성’ 원칙을 말한다. 봉미선·신삼수(2022)는 이를 지역·소득 등의 조건과 무관하게 미디어서비스를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로 설명하고 있다. 「방송법」 제2조 제25호는 보편적 시청권을 국민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 정의가 국민관심행사 지정 및 가시청가구의 기준 등 제도의 주요 근거가 된다.

해당 개념은 원래 통신정책에서 발전해 온 ‘보편적 서비스(universal service)’ 논리에서 출발한다. 통신 분야에서 보편적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부담가능한 수준(affordable)으로 이용하도록 보장하는 정책 틀을 의미한다(주성희 외, 2019).

다만 방송에 해당 틀을 그대로 옮기는 순간 한계점이 드러나는데,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가 주로 접근성(망·단말·요금 등 이용 조건)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반면, 방송은 매체 특성상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에게 제공하는가(편성·콘텐츠의 공공성)가 제도 설계에서 함께 고려되기 때문이다(신삼수·봉미선, 2024).

이 때문에 방송 분야에서 보편성은 통상 두 층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와 유사하게, 누구나 방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송출·수신 환경을 보장하는 측면이다. 이는 방송 전파가 전국에 도달하도록 하고, 난시청 지역을 최소화하며, 기술·지리적 이유로 시청에서 배제되는 집단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접근성의 문제로 정리된다.

둘째, 방송 고유의 의무로, 방송 내용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이다. 뉴스·시사와 같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정보, 재난·안전 관련 정보,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큰 스포츠 경기 등은 특정 계층이나 일부 이용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접근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곽규태, 2023).

최근에는 OTT·모바일 중심의 시청이 일상화되면서, ‘보편(Universal)’이 무료를 뜻하는지, 합리적 가격을 뜻하는지, 추가 비용이 없다는 의미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있다. 동시에 보편적 시청권을 실제로 작동시키려면 적용 대상 매체를 전통적 TV에 한정할지, 온라인·모바일·OTT까지 포괄할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도 이어지고 있다(심미선 외, 2024).

방송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하여금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의 목록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규정한 고시는 2008년 8월 처음으로 제정되었는데, 당시에는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의 커버리지를 기준으로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을 지정하였다. 이후 2009년 11월, 현행 방송 커버리지 기준의 100분의 9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기와 100분의 7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 경기로 구분하여 관련 고시가 제정되었다. 100분의 90 이상의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월드컵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등이,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아시안게임과 국가 대표팀이 출전하는 야구 WBC, 축구 A매치(월드컵 축구예선 포함)가 포함되었다(김정용, 2024).

다만 목록과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도 “어떤 경기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존재해, 권리자·중계사 간 해석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런 문제의식을 반영해 방미통위는 2016년 12월(고시 제2016-14호) 고시를 개정했는데, 국민관심행사 등의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적시해 분쟁 소지를 줄이려는 취지였다. 이때 함께 도입·정비된 장치가 재검토 기한이다. 국민적 관심도 변화나 미디어 환경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고시의 타당성을 주기적으로(3년 단위)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고, 이후 국민 인식조사 등을 활용해 목록의 유지·조정 필요성을 판단하는 구조가 구축되었다. 고시 재검토는 「방송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 위원이 관련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2019년

과 2022년 총 2회에 걸쳐 타당성 재검토가 실시되었으며, 2회 모두 기존 내용을 유지하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2009년 11월에 제정된 고시의 내용이 유지되고 있다.

<표 2-5>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행사」의 주요 내용

제3조(국민관심행사등의 종류) 국민관심행사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1.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 남자 및 성인 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로 한다.

2. 국민 전체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는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키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민관심행사 중 현재 OTT 사업자만이 중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기는 쿠광플레이의 월드컵 축구 예선, AFC 및 EAFF 주관 대회, 그리고 티빙의 WBC 이다. 현행법에 따라, 양 사업자는 국민 전체 가구 수의 100분의 75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중계권을 판매해야 한다.

2. 국민관심행사 범위 적정성 여부 논의

국민관심행사 범위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재검토 시점뿐 아니라, 인기 스포츠 중계권이 TV 채널·포털에서 유료 채널·유료 OTT로 이동할 때마다 재점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예컨대 2022년 8월 SPOTV가 손흥민(토트넘) 경기의 시청 경로를 사실상 유료 채널·유료 OTT 중심으로 전환하자, 이용자 반발과 함께 ‘국민이 넓게 관심을 두는 경기는 누구나 쉽게, 무료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빠르게 확산됐다(한겨레, 2022. 8.14.). 2024년 1월에는 티빙이 KBO와 KBO 리그 유·무선 중계권 계약을 체결한 이후(계약 규모는 3년 총액 1,350억 원으로 보도), 기존과 달리 OTT 구독이 사실상 전제되는 구조가 부각되면서 보편적 시청권 논의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매일일보, 2024.1.8.).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비판의 핵심은 ‘현행 목록이 국민의 관심도·소비 행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선행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들을 ‘중계권이 OTT로 옮겨갈 때마다 목록 적정성 논란이 반복된다’는 흐름 속에서, 이러한 논쟁이 결국 ‘국민관심행사를 인기·관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신삼수·봉미선, 2024).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근하면 국민관심행사 범위를 쉽게 확장·축소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실제로 2019년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국민관심행사 고시에 추가로 선정할 행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7%에 불과했다. 방송관계자 인터뷰에서도 뚜렷한 추가·삭제 요구가 확인되지 않아 국민적 관심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노창희 외, 2019). 이후 2022년에 시행된 국민관심행사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에서 추가적으로 선정할 행사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9.3%로 2019년보다 더 감소했다(노창희 외, 2022).

<표 2-6> 2019년, 2022년 국민관심행사 범위 조정 관련 국민 인식

	2019년	2022년
‘국민관심행사 목록에 종목 추가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	17.7%	9.3%
‘현행 국민관심행사 목록 중 종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변한 비율	30.1%	23.6%

범위 조정이 쉽지 않은 이유로 지목되는 것들 중 하나는, 사업자들 간 사적 자치 영역에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대형 국제대회나 주요 경기의 중계권은 통상 개최 수년 전에 계약이 이뤄지는데, 계약 후에 특정 종목·대회가 국민관심행사에서 제외되면 권리를 취득한 사업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손실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거래 자체가 위축되는 등 시장 왜곡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관심이 떨어진 종목을 빼자”는 주장도 제도 설계 차원에서는 곧바로 실행하기 어렵고, 결국 ‘목록을 얼마나 바꿀 것인가’는 시장 안정성과 시청권 보장 사이의 균형의 문제로 남는다(심미선 외, 2024).

그럼에도 최근 논쟁이 격화되고 있는 배경은, 2022년 인식 조사 이후에도 OTT의 스포츠 중계권 확보가 더 빨라지고, 구독료 인상 기조가 이어지면서 인기 스포츠 접근성이 체감상 약화됐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노창희, 2023). 일각에서는 미디어 다변화로 시청 가능한 플랫폼은 다양해졌지만, 스포츠 이벤트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비판한 바 있다(김원제, 2024).

3. 보편적 시청권 제도 내 디지털 중계권 개념 부재

온라인·모바일 중심으로 스포츠를 소비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국민관심행사에 요구되는 ‘보편적 방송 수단’의 범위를 TV 중심에서 디지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단순히 특정 경기의 시청 기회를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국민이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매체 환경에서도 동일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가 유지된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이용 행태의 변화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보면, ‘일상생활에서 필수 매체’로 스마트폰을 꼽은 비율은 75.3%인 반면, TV는 22.6%로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스마트폰을 통해 주 5일 이상 이용하는 콘텐츠로 OTT(39.4%), 실시간 스트리밍(26.2%) 등이 제시된 점도, 스포츠 중계의 주요 접점이 방송 채널 바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방미통위, 2025).

디지털 중계의 장점도 ‘보편성’ 논의와 맞물린다. 레거시 미디어는 동일 시간대에

편성 가능한 경기 수가 제한되지만, 스트리밍 기반의 서비스는 다 경기 동시 제공, 멀티뷰, 경기별 개별 피드, 다시보기(VOD)로 확장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특히 올림픽처럼 종목이 많고 관심이 분산되는 이벤트에서는, 디지털이 비인기 종목의 노출을 늘려 접근성의 폭을 넓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

문제는 제도 설계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현행 「방송법 시행령」 [별표 2의 2] 제1호는 '보편적 방송 수단 확보 여부'를 판단할 때, 중계방송권자 등의 방송 수단과 지상파·유료방송·IPTV 등 법령상 '방송사업자' 범주의 방송 수단을 포함해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반면 OTT는 통상 「전기통신사업법」 체계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현행 문언만으로는 '보편적 방송 수단' 범위에 OTT 스트리밍을 당연히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때문에, 국민관심행사 중계가 디지털로 이동하거나 디지털 권리가 별도로 거래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제공을 방송 수단 확보로 인정할지', '디지털에도 보편적 시청권 의무까지 부과해야 하는지'와 같은 쟁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개선 논의는 크게 두 갈래로 전개된다. 첫째는 의무 주체의 정비다. 「방송법」 제76조 제3항의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중계방송권자등)' 개념이 방송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국민관심행사 권리를 확보한 OTT·에이전시가 등장하는 경우에도 차별 없이 유통될 수 있도록 규율 구조를 보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둘째는 판단기준·집행수단 정비이다. 온라인 환경에서 '가시청(키버리지)' 산정 방식, 자료 제출·검증 방식, 금지 행위 판단기준 등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하더라도 집행 가능한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정책연구에서 제시된다.

다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OTT까지 기계적으로 의무를 확대하면, 스포츠 중계권이 본질적으로 사적 계약과 경쟁을 통해 형성되는 시장이라는 점에서 거래 위축, 가격·조건 경직화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실제 시장에서는 여론 부담과 수익 구조를 고려해, 디지털 권리를 확보한 사업자가 방송 채널과 재판 매·동시 중계를 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법 개정의 실익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심미선 외, 2024).

제3장 주요 국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변화

제1절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1.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괄

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도입과 변천

영국의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제도(이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Listed Events 제도라고 불린다.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listed events regime)는 국민적 중요성을 지닌 스포츠·문화 행사를 특정 사업자의 유료 독점으로부터 보호하고, 전 국민이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발전해 온 규제 체계이다. 이 제도는 1990년대 이전에도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유료방송의 독점중계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 규범으로 존재했다. 즉, 1981년 방송법(Broadcasting Act Section 40)에서는 방송 내용과 편성에 대해 공익 차원의 개입 권한을 가진 독립규제기관 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에⁵⁾ 특정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국민 다수에게 중대한 관심 사안인 경우, 유료 방식에서만 제공되는 경우 조건을 부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전면 유료화하는 것이 공익에 위해가 된다는 논리를 처음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이후에 제정된 케이블·방송법(Cable and Broadcasting Act 1984)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특정 스포츠 행사 또는 기타 공적 관심 행사가 유료 케이블

5) 1972년 설립된 IBA는 상업방송 규제기관인 Independent Television Authority(1954년 설립)의 후신으로, 공익의 대표자로서 상업방송에 대한 통합 규제 및 운영을 담당하는 법정(공공) 규제기관이었다. 1984년 케이블TV와 유료방송을 전담하는 법정 규제기관인 Cable Authority가 출범하면서 ITV와 채널4 규제를 담당하였으나 1990년 방송법에 따라 폐지되고, 상업방송 규제는 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이 담당하였다. 이후 2003년 ITC가 폐지되고 Ofcom이 탄생하였다.

프로그램 서비스(pay television service)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를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사가 무료 텔레비전 서비스에서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지 않은 경우 유료서비스에 포함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Section 14-Restrictions on inclusion of certain events). 이 조항은 1996년에 개정된 방송법에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Listed Events regime)로 계승되었다.

1996년 방송법에서 법제화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주요 스포츠 및 문화 이벤트를 국가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방송권이 판매될 때 라이브 중계권을 “국민에게 무료(free-to-air)”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해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관련 서비스’는 지상파 또는 무료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방송망으로, 전통적인 지상파 TV 방송을 의미했다.

이후 1998년 독립 자문위원회가 보편적 시청권의 대상이 되는 이벤트의 기준(criteria)을 설정하고 이벤트 리스트를 재구성하였는데, 이때 A그룹(라이브 전체의 중계권 제공 대상)과 B그룹(재방송/하이라이트 제공 대상) 이벤트로 분류가 정립되었다.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제정에 따라 오프콤(Ofcom)이 해당 제도의 집행과 규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2020년에는 디지털문화미디어체육부(DCMS)의 Listed Events Review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올림픽 전 경기를 A그룹 목록에 포함하였으며, 2022년에는 여성 스포츠 종목인 FIFA 여자 월드컵과 UEFA Women’s EURO를 A그룹에 포함하였다(DCMS, 2022b). 이는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문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1996년 지상파방송 중심으로 법제화된 이후 2024년 미디어법(Media Act 2024) 제정으로 디지털 서비스 및 온라인 스트리밍으로의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구조로 확장되었다. 시청자들의 콘텐츠 소비 습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제 방송사들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들과의 권리 확보 경쟁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DCMS, 2022a).

2024년에 기존의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6)을 개정하는 2024년 미디어법은 보편적 시청권 대상 행사 리스트를 변경하지는 않았지만, 방송 형태와 서비스 제공 범위, 그리고 독점중계권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특히, 이런 보편적 서비스 제도의 규제 대상

이 되는 ‘관련 서비스’에 방송뿐만 아니라 스트리밍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하였다. 즉, 기존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서 A그룹 이벤트의 생중계를 담당해 왔던 무료 및 95% 커버리지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 서비스(qualifying services)’를 공영방송(PSB) 및 그 온라인 서비스로 확장된 Category 1 서비스로 재분류하였다.

나 미디어법(2024) 제정 이전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영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listed events regime)는 <1996년 방송법(Broadcasting Act)>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되었다. 1996년 방송법은 국민적 관심 행사를 법률상 ‘listed events’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그 지정 및 규율 방식을 명문화하였다. 법은 개별 행사를 직접 열거하지 않고, 담당 부처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하위 법령(Listed Events Order)을 통해 목록을 지정하도록 하였다. listed events는 영국 사회 전체에 문화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 행사로 이해되었으며,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이 광범위한 국민적 관심이 예상되는 국제 스포츠 이벤트들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1996년 방송법은 ‘국민 관심 행사’(listed events)를 A그룹과 B그룹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구분은 보편적 접근성 보장과 방송시장 경쟁의 균형을 핵심 목표로 한다. 우선, A그룹에 속하는 행사는 실시간 중계가 무료로 수신가능한 방송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어야 하는 이벤트를 의미하였다. 이는 유료방송 또는 페이퍼뷰(pay-per-view)를 통한 독점적 실시간 중계를 금지함으로써, 해당 행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강조하였다. 반면 B그룹에 속하는 행사는 유료방송사가 실시간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무료 방송을 통한 충분한 대체 중계(하이라이트, 지연중계, 요약 방송 등)가 제공되어야 하는 행사이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국민적 관심 행사에 대한 전면적 유료 독점을 방지하면서도, 유료 방송의 투자 유인과 시장 참여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처럼 2024년 법 개정(Media Act) 전까지 적용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기본적으로 전통적 텔레비전 방송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것이었다. 즉, 1996년 방송법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기본 전제는 선형(linear) 방송 중심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 시기 “무료 시청”이란 추가 가입료나 시청료 없이 가정에서 수신가능한 지상파 TV 방송을 의미하며, 인터넷 기반 스트리밍이나 OTT 서비스는 법률상 직접적인 규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터넷 단독 중계권 계약이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이 보편적 시청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가 법문 해석상의 쟁점으로 남게 되었으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2024년 미디어법 제정의 배경이 되었다.

다. 미디어법 2024와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편

영국은 '방송정책의 미래에 대한 백서(Up next-the government's vision for the broadcasting sector)'에서 등록 이벤트 리스트에 대한 디지털 중계권 문제를 재검토한 바 있다. 이때 “초창기 방송중계권은 레거시 미디어를 통한 방법밖에 없었으나 콘텐츠 전송 기술의 발전으로 스포츠 경기의 중계 방식을 레거시 미디어로 한정할 필요가 없게 됨에 따라 시청자가 현재 시청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디지털 스트리밍 미디어로 확장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 후에 2024년 <미디어법(Media Act 2024)>을 제정하여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개편하였는데, 기존 방송 중심의 체계를 디지털·스트리밍 환경을 반영하여 재구조화하였다.⁶⁾

1) 2024년 미디어법에 따른 방송법 개정

영국에서는 2024년 미디어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스트리밍 미디어 환경 도래에 따라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디지털 미디어로 확장하여 플랫폼 중립적 보편적 시청권 제도로 재구조화하였으며, 보편적 시청권 보장 주체를 공영방송(PSB)으로 명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다음 <표 3-1>은 2024년 미디어법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들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6) 2024년에 제정된 미디어법 제20조부터 제23조는 1996년에 제정된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제97조~제101조 및 제104ZA조)들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3-1> 영국 미디어법 2024에 따른 방송법 1996의 개정 조항

미디어법	주요 내용	해당 1996 방송법 조항
제2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틀 - Listed Event 개념과 A/B 그룹 이벤트 구분 - 방송 중심 제도를 온라인 서비스로 확대 - 국무장관의 Listed Events Order 권한 	제97조 개정 Listed Events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levant service 분류 - Category 1, 2 relevant service 구분 제정의 	제98조 개정 Categories of relevant service
제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권 계약/거래의 기본 원칙 	제99조 개정 Contracts granting right for Group A events
제2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한 생중계 판단 기준 오프콤 규정에 위임 	제104ZA조 개정
제100조 (개정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계권 계약 유효/무효 판단 	제100조 Contract granting rights for listed events
제101조 (개정 사항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관심행사의 생중계 관련 제한 - 금지/허용 행위규범(operative rule) - A그룹 이벤트의 생중계 원칙적 제한 및 예외 요건(복수 서비스, 오프콤 승인 등) - B그룹 이벤트의 대체 커버리지 구조 	제101조 Restriction on televising of listed events
제104ZA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fcom Regulations으로 구체적 기준(Code) 마련 및 집행 • 적정성 판단 기준(interpretative standard) - adequate live coverage의 정의 삼입 ·생중계와 alternative coverage 판단 기준 - 오프콤의 공익·접근성 판단 기준(고려 의무) ·생중계 시간, 비율 ·제공되는 서비스의 수/유형 ·커버리지의 형태 ·공익, 국민적 관심, 미디어서비스 유형 간 권리 분산, 스포츠 종목 간 균형 - 디지털·스트리밍 환경 고려 	제104ZA조 (기존 조항 확장) Regulations about coverage of listed events

구체적으로, 2024년 미디어법은 1996년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다. 첫째, 방송(televising)이라는 용어를 제공(coverage)으로 변경하여 온라인 서비스도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포함시켰다(Ofcom, 2024a). 즉, 기존 방송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디지털·스트리밍 환경으로까지 확장한 것으로, ‘relevant services’ 개념을

재정비하여 공중 이용을 전제로 한 디지털 미디어 서비스 전반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선형·비선형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범위를 확장했다.

둘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주체를 명확히 하였다. 기존에는 무료로 시청 가능하고 영국 인구의 95% 이상이 수신할 수 있는 방송 채널을 '자격 서비스(qualifying services)'로 분류하고 A그룹 이벤트는 반드시 이 자격서비스를 통해 생중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2024년 미디어법에서는 이런 분류 대신 오프콤이 지정하는 Category 1 서비스(공영방송 및 그 인터넷 서비스)와 Category 2 서비스(그 외의 방송 및 스트리밍 서비스)로 구분하여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로 정의하였다(Ofcom, 2025. 6. 13). Category 1 서비스는 공영방송사의 방송채널(BBC 1/2, 채널 3, 채널 4 및 채널 5)과 iPlayer와 같은 공영방송사의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이다(개정 방송법 제98조(2B)). 미디어법에서 정한 Category 1 서비스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 공영방송사(PSB) 또는 그와 연결된 자가 제공
- 공적 책무(public service remit) 이행과 관련
- 무료 접근 가능
- 일정 수준의 도달 범위(reach) 충족

한편, 카테고리 2 서비스(other relevant services)는 위성채널 Sky부터, Netflix와 같은 주문형 플랫폼과 기타 스트리밍 플랫폼에 이르기까지 모든 프로그램 서비스가 포함되는데, PSB 외의 방송 및 인터넷 서비스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 주체를 PSB로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셋째, 2024년 미디어법 제21조에 의해 개정된 방송법 제99조(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 계약 관련 조항)에 따라, 주요 국민관심행사의 생중계(live coverage) 권리가 Category 2 서비스에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Category 1 서비스에서도 제공되도록 의무화하거나 우선 제안하여야 한다. 즉, listed events에 대한 생중계 권리를 보유한 사업자는 먼저 PSB에 해당 권리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제안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제안 없이 Category 2

서비스와 독점계약을 맺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오프콤의 규제 대상이 된다(Ofcom, 2025. 6. 13). 이를 적용하면, A그룹 이벤트의 경우, 특정 서비스의 독점적 생중계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B그룹 이벤트의 경우, 독점계약은 가능하되 대체 커버리지 제공을 전제로 허용된다. 이런 규제를 통해 PSB 이외의 서비스가 listed events에 대한 중계권을 획득할 경우 PSB의 중계를 우선 제안하거나 아니면 서브 라이선스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이는 혹시 모를 글로벌 OTT 등의 디지털 중계권 독점을 제한하는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표 3-2> 2024년 미디어법에 따른 제도 변화 요약

구분	기존 체계	Media Act 2024 이후
법적 근거	Broadcasting Act 1996	Media Act 2024
기본 목적	유료방송의 독점 생중계 방지, 국민의 무료 시청권 보장	기존 기본 목적 유지 및 디지털·스트리밍 환경에서의 실효성 확보
규제 대상	전통적 선형 방송 중심의 자격서비스(qualifying services)	선형방송과 온라인·스트리밍서비스를 포괄한 관련서비스(Relevant services) - Category 1(PSB 중심)과 Category 2 서비스로 구분
Group A 중계	단일종목 이벤트 중심 설계 - '동일수준'의 생중계 확보가 압목적 전제 - 멀티이벤트는 관행적으로 '적정 수준' 중계	단일종목 대 다종목 차이 명문화 - 단일종목은 Category 1·2간 동일수준의 생중계 확보가 목표 - 다종목(multisports)은 Category 1에서 적정수준 생중계만 요구
Group B 중계	대안적 중계(Alternative coverage) 확보	Category 1의 적절한(adequate) 대안적 중계 확보를 명문화
무료 생중계	A그룹 이벤트는 자격서비스에서만 생중계방송(live broadcasting) 가능	생중계(live coverage)는 Category 1 서비스에서 무료 접근 보장
규제 방식	중계권 계약 규제와 오프콤 동의	좌동 및 자동 승인 개념을 체계화
계약 규제	A그룹 이벤트 독점계약 금지, 카테고리 혼합 금지	계약 무효 규정, 카테고리 단일성 원칙 명확화
오프콤의 역할	규제집행 및 사전 동의 중심	사전 동의/자동 승인 판단, 디지털 서비스까지 적용 권한 강화
정책 초점	선형방송 중심 공익 보호	공익보호 및 플랫폼·유통환경 변화 대응

2024년 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보편적 시청권 관련 법률 조항들(방송법 제97조~제101

조 및 제104ZA조)은 다음 <표 3-3>에 제시하였다.

<표 3-3> 영국의 Listed Event 관련 법조문(2024 미디어법 개정 사항 반영)

방송법 조항(2024년 개정 사항 반영)	한글 번역
<p>Part IV Sporting and Other Events of National Interest</p> <p>Section 97 Listed events</p> <p>(1)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a listed event is a sporting or other event of national interest which is for the time being included in a list drawn up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p> <p>(2)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not at any time draw up, revise or cease to maintain such a list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1) unless he has first consulted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BBC, (b) the Welsh Authority, (c) the Commission, and (d) in relation to a relevant event, the person from whom the rights to televise that event may be acquired; <p>and for the purposes of this subsection a relevant event is a sporting or other event of national interest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proposes to include in, or omit from, the list.</p> <p>(3) As soon as he has drawn up or revised such a list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1),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publish the list in such manner as he considers appropriate for bringing it to the attention of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the persons mentioned in subsection (2), and (b) every person who is the holder of a 	<p>제4장 스포츠 및 기타 국민관심행사</p> <p>제97조 국민적 관심행사(개정 사항 없음)</p> <p>(1) 국민적 관심행사(listed event)란 국무장관이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당시 작성한 목록에 포함된,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행사 또는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p> <p>(2) 국무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와 사전에 협의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목록을 작성·개정하거나 목록 유지를 중단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BBC (b) 웨일스 방송위원회(Welsh Authority) (c) 위원회(the Commission) (d) 관련 행사에 관하여, 해당 행사의 방송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 <p>그리고, 이 항의 목적상 관련 행사(relevant event)란 국무장관이 목록에 포함하거나 목록에서 제외하려는 국민적 관심을 가지는 스포츠 행사 또는 그 밖의 행사를 말한다.</p> <p>(3) 국무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록을 작성하거나 개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제2항에 열거된 자 (b) 1990년 법 제1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자 또는 이 법 제1편에 따라 디지털 프로그램 면허를 부여

<p>licence granted by the Commission under Part I of the 1990 Act or a digital programme licence granted by them under Part I of this Act.</p> <p>(4) In this section “national interest” includes interest within England, Scotland, Wales or Northern Ireland.</p> <p>(5) The addition of any relevant event to such a list as is mentioned in subsection (1) shall not affect --</p> <p>(a) the validity of any contract entered into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Secretary of State consulted the persons mentioned in subsection (2) in relation to the proposed addition, or</p> <p>(b) the exercise of any rights acquired under such a contract.</p> <p>(6) The list drawn up by the Secretary of Stat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82 of the 1990 Act, as that list is in force immediately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section, shall be taken to have been drawn up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p>	<p>받은 모든 자</p> <p>(4) 이 조항에서 말하는 국민적 관심(national interest)에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또는 북아일랜드 내의 관심이 포함된다.</p> <p>(5) 제1항에 언급된 목록에 관련 행사를 추가하더라도 다음 각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a) 국무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개시기 전에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p> <p>(b) 그러한 계약에 따라 취득된 권리의 행사</p> <p>(6) 1990년 법 제182조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장관이 작성한 목록으로, 이 조항의 시행 전에 유효하게 지정되어 있었던 행사 목록은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목록으로 본다.</p>
<p>Section 98 Categories of relevant service (as amended by Media Act 2024, sections 20 and 21)</p> <p>(1)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relevant services a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as follows --</p> <p>(a) those relevant services which for the time being fall within subsection (1A) or (2A), and</p> <p>(b) all other relevant services.</p> <p>(1A) A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falls</p>	<p>제98조 관련 서비스의 범주(2024 미디어법 제20조와 21조에 의한 개정사항 반영)</p> <p>(1) 이 Part의 목적상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s)’는 다음 두 범주로 구분된다.</p> <p>(a) 현재 제(1A)항 또는 제(2A)항에 해당하는 관련 서비스</p> <p>(b) 그 밖의 모든 관련 서비스</p> <p>(1A)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p>

<p>within this subsection if it is --</p> <p>(a) a service provided by the BBC or a BBC company otherwise than with a view to generating a profit,</p> <p>(b) a Channel 3 service, Channel 4 or Channel 5,</p> <p>(c) S4C Digital, or</p> <p>(d) a service which is provided by a person who provides a Channel 3 service or Channel 5 and which satisfies the conditions in subsection (2).</p> <p>(2) The conditions in this subsection are --</p> <p>(a) that the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may be received free of charge, and</p> <p>(b) that, where the service is a service falling within subsection (1A)(d), the provider's latest statement of programme policy under section 264 states that the service will be used to fulfil the public service remit.</p> <p>(2A) A relevant service falls within this subsection if --</p> <p>(a) it is, or forms part of, a designated internet programme service,</p> <p>(b) where it forms part of a designated internet programme service, it satisfies the conditions in subsection (2B), and</p> <p>(c) it and the programmes included in it may be accessed free of charge.</p> <p>(2B) The conditions in this subsection are that --</p> <p>(a) the service is provided by a public service broadcaster or a person connected with such a broadcaster, and</p> <p>(b) the service is connected with the fulfilment of the broadcaster's public service remit.</p>	<p>음과 같습니다.</p> <p>(a) 영리 목적이 아닌 BBC 또는 BBC 계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p> <p>(b) Channel 3, Channel 4 또는 Channel 5</p> <p>(c) S4C Digital, 또는</p> <p>(d) Channel 3 또는 Channel 5 서비스를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서비스</p> <p>(2) 본 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p> <p>(a) 해당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가 무료로 수신 가능할 것</p> <p>(b) 제(1A)(d)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경우, 제공자의 최신 프로그램 정책 성명서에 공영서비스 책무 이행에 사용될 것임을 명시될 것.</p> <p>(2A) 관련 서비스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항에 해당한다.</p> <p>(a) 지정 인터넷 프로그램 서비스이거나 그 일부일 것</p> <p>(b) 일부인 경우 제(2B)항의 요건을 충족할 것</p> <p>(c) 서비스 및 포함된 프로그램이 무료로 접근 가능할 것</p> <p>(2B) 본 항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p> <p>(a) 해당 서비스가 공영서비스 방송자 또는 그와 관련된 자에 의해 제공될 것</p> <p>(b) 해당 서비스가 공영서비스 책무 이행과 관련된 것</p>
--	---

<p>(2C) If a relevant service would fall within subsection (2A) but for the fact that some programmes included in the service may not be accessed free of charge, the part of the service which consists of programmes that may be accessed free of charge is to be treated as a separate relevant service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p> <p>(7) In this Part “relevant service” mean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a television programme service, (b) an on-demand programme service, (c) a non-UK on-demand programme service, or (d) an internet programme service or a dissociable section of such a service. 	<p>(2C) 일부 프로그램이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2A)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료로 접근가능한 부분은 이 Part의 목적상 별도의 관련 서비스로 본다.</p> <p>*구 방송법 (3)~(6)항의 ‘qualifying services’ 관련 항 삭제(repeal)</p> <p>(7) 이 Part에서 ‘관련 서비스’란 다음을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텔레비전 프로그램 서비스 (b)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 (c) 비영국 온디맨드 프로그램 서비스 (d) 인터넷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분리 가능한 부분
<p>Section 99 Contracts granting rights for Group A events</p> <p>(1) Any contract entered into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section 21 of the Media Act 2024 which grants rights for a relevant service to include live coverag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a Group A event for reception or access by means of the internet in the United Kingdom (or any area of the United Kingdom) is void so far as it purports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in relation to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event, or (b) in relation to reception or access by means of the internet in the United Kingdom (or any area of the United Kingdom), <p>to grant those rights exclusively.</p> <p>(2) Subsection (1)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of a contract so far as it purports to grant</p>	<p>제99조 Group A 행사 증계권 계약(A그룹 행사에 대한 독점증계권 계약 무효화)</p> <p>(1) Media Act 2024 제21조의 시행 이후 체결된 계약으로서, 영국 전역 또는 그 일부에서의 수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목적으로, 관련 서비스에 Group A 행사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생중계를 포함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는 그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해당 행사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부분 (b) 영국 전역 또는 일부에서의 수신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접근에 관해 독점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부분 <p>다만, 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범위에 한한다.</p> <p>(2) 제1항은 영국 외 지역에서의 수신 또</p>

<p>rights to include live coverag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a Group A event for reception or access by means of the internet outside the United Kingdom.</p> <p>(3) Rights granted for a relevant service are to be treated as granted exclusively if the person granting them --</p> <p>(a) has not granted rights sufficient to authorise the inclusion of live coverag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the event in one or more other relevant servic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101(2), (3) or (4), and</p> <p>(b) is preclud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from granting such rights.</p> <p>(4) In this section “contract” includes any agreement, arrangement or understanding (whether or not legally enforceable).</p>	<p>는 인터넷을 통한 접근을 목적으로 A그룹 국민관심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실시간 중계권을 부여하는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3) 관련 서비스에 부여된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배타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본다.</p> <p>(a) 권리를 부여한 자가 제101조(2), (3) 또는 (4)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다른 관련 서비스에서 해당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 실시간 중계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충분한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p> <p>(b) 계약 조건에 그러한 권리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p> <p>(4) 이 조에서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합의, 약정 또는 이해를 포함한다.</p>
<p>Section 100 Contracts granting rights for listed events</p> <p>(1) Any contract entered into on or after the commencement of this section which grants rights for a relevant service to include live coverag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a listed event for reception in the United Kingdom (or any area of the United Kingdom) is void so far as it purports to grant those rights unless the contract complies with subsection (2).</p> <p>(2) A contract complies with this subsection if --</p> <p>(a) it is entered into by the provider of the relevant service and the person granting the rights, and</p> <p>(b) it contains such terms and conditions as may be specified by the regulatory authority</p>	<p>제100조 국민관심행사 중계권 계약 (주요 개정 사항 없음)</p> <p>(1) Media Act 2024 시행 이후에 체결된 계약으로서, 영국 전역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의 수신을 목적으로 국민적 관심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실시간 중계를 관련 서비스에 포함할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은,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없다.</p> <p>(2) 계약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제1항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p> <p>(a) 해당 계약이 관련 서비스 제공자와 권리를 부여하는 자 사이에 체결될 것</p> <p>(b) 이 조의 목적을 위하여 규제기관이 정하는 조건과 기준을 계약의 내용으로</p>

<p>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p> <p>(3) Failure to comply with subsection (1) does 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contract so far as it purports to grant rights to include live coverag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a listed event for reception outside the United Kingdom.</p> <p>(4) In this section “contract” includes any agreement, arrangement or understanding (whether or not legally enforceable).</p>	<p>포함할 것</p> <p>(3)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영국 외 지역에서의 수신 목적으로 국민적 관심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실시간 중계권을 부여하는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4) 이 조에서 “계약”이란 법적 구속력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합의, 약정 또는 이해를 포함한다.</p>
<p>Section 101- Restriction on televising of listed events (as enacted in 1996)</p> <p>(1) A person providing a service falling within either of the categories set out in subsection (1) of section 98 (“the first service”) for reception in the United Kingdom or in any area of the United Kingdom shall not, without the previous consent of the Commission, include in that service live coverage of the whole or any part of a listed event unless --</p> <p>(a) another person, who is providing a service falling within the other category set out in that subsection (“the second service”), has acquired the right to include in the second service live coverage of the whole of the event or of that part of the event, and</p> <p>(b) the area for which the second service is provided consists of or includes the whole, or substantially the whole, of the area for which the first service is provided.</p> <p>(2) The Commission may revoke any consent given by them under subsection (1).</p> <p>(3) Failure to comply with subsection(1) shall</p>	<p>제101조 국민적 관심행사의 방송 제한 (개정사항 없음)</p> <p>(1)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두 범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제1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가 영국 전역 또는 그 일부 지역에서 수신될 목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the Commission)의 사전 동의 없이는 국민적 관심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실시간 방송(live coverage)을 그 서비스에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a)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범주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하 “제2 서비스 제공자”라 한다)가 해당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실시간 방송권을 취득한 경우</p> <p>(b) 제2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이 제1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전부를 포함하는 경우</p> <p>(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여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p> <p>(3)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와 관</p>

<p>not affect the validity of any contract.</p> <p>(4) Subsection(1) shall not have effect where the television programme provider providing the first service is exercising rights acquired before the commencement of this section.</p>	<p>련된 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p> <p>(4) 제1항은 이 조의 시행 이전에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공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p>
<p>Section 104ZA Regulations about coverage of listed events (as amended by Media Act 2024, s.23)</p> <p>(1) OFCOM may by regulations make provision --</p> <p>(a) about the coverage of listed events (including live coverage);</p> <p>(aa) about what (whether generally or in relation to particular circumstances) is to be taken to represent the provision of adequate live coverage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01(4)(c);</p> <p>(b) about the provision of alternative coverage of listed events for the purposes of section 101(6)(c); and</p> <p>(c) about such other matters connected with the coverage of listed events as OFCOM consider appropriate.</p> <p>(2) In this section “live coverage” includes coverage which is live coverage of part only of a listed event.</p> <p>(2A) Regulations made by virtue of subsection (1)(aa) may, in particular --</p> <p>(a) describe what represents the provision of adequate live coverage by reference to --</p> <p>(i) the duration of the live coverage (whether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duration of the proceedings or otherwise),</p> <p>(ii) the numbers of relevant services of particular descriptions in which the live</p>	<p>제104ZA조(국민관심행사의 중계에 관한 규정) (미디어법 2024 제23조에 의거 개정)</p> <p>(1) 오프콤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a)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생중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p> <p>(aa) 제101조제4항(c)의 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한 상황과 관련하여, 무엇이 ‘적정한 생중계’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사항</p> <p>(b) 제101조제6항(c)의 목적을 위하여, 국민관심행사의 ‘대체 중계’ 제공에 관한 사항</p> <p>(c) 그 밖에 국민관심행사의 중계와 관련하여 오프콤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항</p> <p>(2) 이 조에서 “생중계(live coverage)”에는 특정 행사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중계도 포함된다.</p> <p>(2A) 제1항 (aa)에 따라 제정되는 규정은 특히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한 생중계의 제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정할 수 있다.</p> <p>(a) 다음 각 목의 하나 또는 그 결합에 따른 생중계 제공 기간</p> <p>(i) 실시간 중계의 제공 시간 또는 비율 (경기 진행 시간 대비 비율로 표시하든 그 밖의 방식으로 표시하든 불문)</p>

<p>coverage is included (subject to section 101(4)(d)), or</p> <p>(iii) a combination of those matters;</p> <p>(b) provide for live coverage not to be taken into account if the provider of the service is unable to select what parts of the proceedings are covered.</p> <p>(2B) When making regulations by virtue of subsection (1)(aa), OFCOM must have regard to --</p> <p>(a) the forms of live coverage that OFCOM consider are likely to satisfy the interests of members of the public in the United Kingdom or an area of the United Kingdom in listed events of the sort to which section 101(4)(c) relates;</p> <p>(b) the desirability of facilitating the making of arrangements under which rights to include live coverage of sporting events that involve different sports are acquired by providers of relevant services in both of the categories of relevant service set out in section 98(1).</p> <p>(3) Section 403 of the Communications Act 2003 (power of OFCOM to require information) applies in relation to regulations made by OFCOM under this section as it applies in relation to regulations made by them under that Act.</p>	<p>(ii) 생중계가 제공되는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s)의 수 및 그 유형(제 101조 제4항 제(d)호를 전제로 한다)</p> <p>(iii) 위 각 사항의 결합에 의한 판단</p> <p>(b) 서비스 제공자가 행사 진행 중 어느 부분을 중계할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생중계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p> <p>(2B) 오프콤은 제1항(aa)에 따라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p>(a) 제101조 제4항(c)에 해당하는 유형의 국민관심행사에 관하여, 영국 전역 또는 특정 지역의 일반 공중의 관심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프콤이 판단하는 생중계의 형태</p> <p>(b) 제98조 제1항에 규정된 두 범주의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s)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이 서로 다른 종목의 스포츠 행사에 대한 실시간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구조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p> <p>(3) 커뮤니케이션법 2003(Communications Act) 제403조(오프콤의 정보 제출 요구 권한)는 이 조에 따라 오프콤이 제정하는 규정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p>
---	--

2) 오프콤의 보편적 시청권 규정 개정

오프콤은 2025년 중반에 2024년 미디어법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listed events) 관련 세부규정 초안(draft)과 Code 개정안을 의견 청취(consultation) 형태로 발표한 바 있으나, 2025년 말 현재까지 최종 statement 및 revised Code가 확정 발표된 상태는 아니다. 2025년 6월 13일에 공개된 의견청취 공고(Consultation: Listed events- implementing the Media Act 2024)에서는 생중계(live coverage), 적절한 생중계(adequate live coverage), 적절한 대안 중계(adequate alternative coverage) 등의 정의 초안 및 고시(Code) 개정안 초안을 제시하였다(Ofcom, 2025. 6. 13). 의견 청취 절차 종료 후 2025년 8월 11일에 발표한 개요 문서에서는 생중계의 정의(예: 실제 진행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 일부 플랫폼 기능 포함(watch from the start) 여부 등을 고려하였다('Live coverage' means coverage of the relevant event that is made available as it happens and enables viewers to watch the event from the start.). 다만, 2025년 말로 예정했던 개정 작업이 지연되어 새 고시(Code) 공포는 2026년으로 미뤄진 상태이다.

2. 영국 국민 관심 행사

가. 국민 관심 행사 목록

국민적 관심행사는 한국과 유사하게 두 그룹(A그룹/B그룹 이벤트)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두 그룹을 구분하는 이유는 국민적 관심행사의 사회적 중요도와 보편적 시청 필요성의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로, 보편적 접근성 보호와 방송시장 경쟁 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조는 무료 실시간 중계가 필수적인 행사와, 유료 실시간 중계와 무료 대체 중계의 병행으로도 공익 목적이 달성되는 행사를 구분함으로써 규제의 비례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UK Parliament, 2022).

영국의 국민적 관심 행사(Listed event)는 특별한 국민적 공감(special national resonance)이 있는 행사이며 국민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국민적인 행사이지만, 현재 리스트에 있는 이벤트는 모두 스포츠 경기들이다(표 3-4 참조).

〈표 3-4〉 영국의 국민관심행사(listed events)

Category A 이벤트	Category B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림픽 게임 • 패럴림픽 게임 • FIFA 월드컵 본선(Finals Tournament) • FIFA 여자월드컵 본선(Finals Tournament) • UEFA 유럽 축구선수권대회 본선 • UEFA 유럽 여자축구선수권대회 본선 • FA컵 결승전 • 스코틀랜드 FA 컵 결승전 • 그랜드 내셔널 (경마) • 워블던 테니스 (남녀 단식) 결승전 • 럭비 유니언 월드컵 결승전 • 럭비 리그 챌린지컵 결승전 • The Derby (경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글랜드 크리켓 테스트 매치 • 워블던 테니스 결승전 외 모든 경기 • 럭비 월드컵 결승전 외 모든 경기 • 영국 대표(4개 지역)가 참여하는 6개국 럭비 토너먼트 • 영연방 경기대회(코먼웰스 게임) •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 크리켓 월드컵 결승전, 준결승전 및 영국(4개 지역) 대표팀 참여 경기 • 라이더컵(골프) • 디 오픈(브리티시 오픈) 골프 챔피언십

* 출처: Ofcom (2025. 6. 13). 48쪽

나. 국민적 관심 행사의 선정 요건

1) 최초의 선정 기준

1998년 관심행사 리스트 최초 검토 당시 제시한 국민적 관심 행사의 요건은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 특정 계층에게만 유의미한 행사가 아니라 특별한 국민적 공감각이 있는 행사일 것, 둘째,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 행사로 여겨질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많은 시청자들이 관심 있어 하는 탁월한 국가적 혹은 국제적 경기이며 국가대표팀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팀이 참가하는 행사(command a large TV audience, such as preeminent national or international sport events and those involving the national team or national representatives)여야 한다.

2) 2024년 미디어법 제정 이후 선정 기준

2024년 미디어법 제정 이후 A그룹으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DCMS, 2022a; 2023). 첫째, 해당 이벤트가 영국 사회 전체에 중대한 문화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national importance)의 여부이다. 이는 단순한 인기나 일시적 관심이 아니라, 국민 공통 경험을 형성하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행사인지에 관한 판단을 의미한다.

둘째, 합리적인 시청자가 해당 이벤트를 유료 장벽 없이 또는 합리적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이다. 여기서 더 이상 '무료 지상파 방송'은 필수 요건이 아니며, 방송과 스트리밍을 포괄하는 relevant services를 통한 접근 가능성이 기준이 된다.

셋째, 단순한 시청률 수치가 아니라, 해당 이벤트가 전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는지(universal availability)의 여부이다. 즉, 생중계가 특정 유료 플랫폼이나 제한된 이용자 집단에 국한될 경우 공익 목적이 훼손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 된다.

3) 적정 생중계 요건

이러한 기준은 미디어법 제104ZA조의 '적정 생중계(adequate live coverage)' 개념을 통해 구체화되며, 이제 오프콤은 중계 형식, 제공 범위, 접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그룹 이벤트 무료 시청권 보호의 실질적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① A그룹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

우선, A그룹에 속한 경기는 일정한 커버리지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에 의해 중계되어야 하는 경기로, 유료 장벽 없이 또는 합리적인 조건 하에서 대다수 국민이 실질적으로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생중계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디어법 제정 이후에도 A그룹 이벤트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보호를 받는 범주이지만, 그 보호 방식은 변화했다. 즉, 2024년 이후에는 '무료', '도달 가능성', '충분한 실시간 중계'라는 결과적 요건이 강조된다.

A그룹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은 더 이상 지상파방송('qualifying service')에 한정되지 않으며, 스트리밍을 포괄하여 PSB가 운영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에 따라 PSB의 방송, 인터넷 스트리밍, 하이브리드 서비스가 결합된 방식이 허용된다.

다만, 중계의 형식과 범위는 오프콕이 정하는 ‘적정한 생중계(adequate live coverage)’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무엇이 적정한 생중계에 해당하는지는 오프콕의 규정(regulations)을 따른다. 이는 미디어 기술과 시장 변화에 따라 규제기관이 조정 가능(capable of adapting to changing viewing habits) 하도록 한 것으로, 전송수단과 무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스트리밍 환경에서의 공익성과 경쟁 조정을 통해 실질적 시청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DCMS, 2022).

② B그룹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접근

한편, B그룹은 유료 방식의 실시간 중계가 허용되는 범주이지만, 2024년 이후에는 대체 중계(alternative coverage)의 ‘충분성’과 ‘접근성’이 규제 대상이 되었다. B그룹 이벤트의 경우, 오직 Category 2 서비스에서만 생중계가 제공되는 상황에서도, Category 1 서비스에서 최소한 적정한 수준의 대체적 중계(alternative coverage)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B그룹에 속한 행사는 생중계 권리가 유료 방송이나 기타 서비스에 의해 독점적으로 취득될 수 있으나, 해당 행사에 대한 적정한 대체 커버리지(하이라이트, 지연 중계, 재방송 등)가 보편적 접근이 가능한 서비스(현행 법체계상 Category 1에 해당하는 서비스)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이유로 특정 서비스에 과도한 생중계 편성 의무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유료방송 및 신규 플랫폼의 권리도 일정 부분 인정하려는 제도적 균형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Ofcom, 2024b).

4) 다종목 이벤트의 생중계

오프콕이 2025년 6월에 공개한 미디어법 시행을 위한 규정 제정안 문서에는 A그룹 이벤트라도 단일 종목인지 ‘다종목 이벤트’(multisports events)인지에 따라 규제 목표가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특히 올림픽 같은 다종목 이벤트에 대해서는 “동일 수준의 생중계”가 아니라 적정한 커버리지(adequate coverage)만 요구하는데, 이는 기술적 한계, 편성 현실,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Ofcom, 2025. 6. 13).

하나의 종목만으로 구성된 A그룹 이벤트의 경우, 이 제도는 Category 1 서비스와

Category 2 서비스 모두에서 동일한 수준의 생중계가 제공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 A그룹 이벤트가 올림픽과 같이 두 개 이상의 종목으로 구성된 다종목 이벤트의 경우에는, Category 1 서비스에서 최소한 '적정한 수준의 생중계(adequate level of live coverage)'가 제공되도록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fcom, 2025. 6. 13).

<표 3-5> 이벤트 특성에 따른 보편적 시청권 목표 차이(A그룹 이벤트)

구분	단일 종목 이벤트	다종목 이벤트(Multisport)
대표 사례	월드컵 본선(Finals Tournament)	올림픽, 장애인 올림픽
이벤트 구조	하나의 종목, 경기 단위 명확	여러 경기 동시·병렬 진행
규제 목표 (Ofcom이 판단)	Category 1과 Category 2 서비스에서 '동일한 수준'의 생중계(live coverage) 확보	Category 1 서비스에서 '적정한 수준(adequate level)'의 생중계 확보
Category 1 서비스(PSB·무상)	Category 2와 동등한 라이브 접근이 정책 목표	전체 종목을 동일 수준으로 제공할 필요 없음. 핵심 경기 중심의 적정 수준 확보 필요
Category 2 서비스(유료·기타)	Category 1과 대등한 생중계 가능성 전제	광범위·전면적 생중계 가능
제도적 합리성	단일 경기 흐름/기술·편성 상 동일 중계 가능	동시 경기 다발/물리적·편성 상 동일 중계 불가능
공익적 목표	누구나 같은 경기 시청 가능	누구나 의미있는 핵심 시청 가능

다. 국민적 관심 행사 이벤트 선정 절차

영국의 Listed Events 제도는 Broadcasting Act 1996에 근거한다. 다만 법률은 그룹 A와 B라는 규범적 틀/framework만을 제공하고, 실제로 어떤 스포츠 이벤트가 국민적 관심행사로 지정되는지는 국무장관이 하위 법령인 'Listed Events Order'를 통해 결정한다. 즉, 미디어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이 보편적 시청권 대상 이벤트를 지정하지만 행정예고와 의견 수렴(consultation) 절차를 거쳐야 한다(1996년 방송법, c.55, Part IV).

리스트 변경은 단순 행정행위가 아니라 공익성, 시청권, 시장 영향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2022). 따라서 오프콤, BBC,

(중계) 권리자들과의 협의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없이는 이벤트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없다(1996년 방송법, c.55, s.101-104). 최종 결정권은 장관에게 있으나, 협의 결과와 크게 배치될 경우 정치적 책임 및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벤트 목록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성격의 하위 법령(Statutory Instrument)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가지며 오프콤의 고시(Code)에 반영된다. 오프콤은 이벤트 목록에 포함된 경기의 독점 생중계 제한, 동의 여부 결정, 위반시 제재 등을 담당한다.

영국 법령에서는 이벤트 목록의 정기적 재검토 주기를 명시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국무장관(현재는 DCMS 장관)이 필요·정책적 고려가 있을 때마다 listed events 목록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에 DCMS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listed events regime) 자체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는 'Digital Rights Review'를 수행한 바 있다. 당시 DCMS는 방송백서(2022 Broadcasting White Paper)에서 시청행태 변화와 디지털 권리(digital rights)의 중요성을 반영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검토 대상으로 삼았다. 즉, 인터넷, 스트리밍, catch-up 서비스 시청이 대폭 증가하면서 전통적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더 이상 국민적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디지털·온라인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선형 방송을 통한 중계방송은 공영 채널이 담당하지만 스트리밍·온라인 권리는 유료의 장벽(Paywall)에 묶여 시청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 공영방송사(PSBs)의 디지털 플랫폼에서도 국민관심행사를 제공할 기회를 보장해야 할지 등의 문제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Kelham & Hart, 2022).

이 정책 재검토는 기존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전통적인 선형 방송(linear TV)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고, 현대의 시청자들이 스트리밍·디지털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디지털 권리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포함돼야 하는지의 여부, 온라인을 통한 콘텐츠 배포가 시청자 접근성 및 공공적 가치에 주는 영향, 향후 기술 발전 및 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재검토는 이벤트 목록 자체의 변경보다는 제도의 적용 범위(scope), 즉 디지털 권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포함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DCMS, 2022a).

라.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실효성 담보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실효성은 중계권 계약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담보된다. 방송법에서는 listed events의 생중계를 제공하기 위한 중계권 판매 계약 자체도 규율 대상으로 삼는데, 동법 제99조와 제100조에서 A그룹 이벤트에 대한 배타적 실시간 중계 계약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여 특정 사업자가 독점적으로 해당 행사를 중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listed events에 대한 계약의 유효성을 규제기관이 정한 일정 요건에 충족시키는 규정을 두고, 규제기관의 사전동의제도를 통해 개별 사안에 대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4년 미디어법에 의해 개정된 방송법 제99조 제1항은 A그룹 이벤트에 관한 계약이 특정 '관련 서비스'에 생중계권을 독점적으로 부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독점계약이란 예컨대, 특정 Category 2 서비스에만 생중계권을 부여하고, Category 1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어떤 서비스에도 생중계권이 부여되는 것을 금지하는 계약을 말한다. 방송법은 제99조와 제10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은 그 한도에서 무효라고 규정한다(자동 무효). 오프콤은 A그룹 이벤트의 생중계(live coverage)에 대해 동의(consent)를 부여해야 하는데,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상업적 거래와 상관없이 오프콤은 무효인 계약(또는 그 일부)에 따라 취득된 권리에 근거한 생중계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즉, 권리보유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것이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법 규정이 중계권 계약을 직접적으로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규정은 권리 보유자에게 해당 행사(listed events)의 중계권을 반드시 판매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중계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중계권을 반드시 취득하거나 실제로 중계하도록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신, 영국 내 시청자를 대상으로 listed events의 생중계 제공 행위를 '사전 승인 없이' 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법 하에서 A그룹 이벤트에 관한 중계권 계약은 형식상 사적 계약이지만, 특정 서비스에 대해 배타적 생중계권을 부여하는 경우 법률에 의해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며, 오프콤은 그러한 무효 계약에 근거한 생중계에 대해 동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오프콤이 동의 여부를 판단할 때, 방송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를 가졌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4년 미디어법에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동으로 부여되는 자동 승인 (automatic authorisation)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이외의 경우에만 오프콤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Ofcom, 2025. 6. 13). 특히, B그룹 이벤트에 대한 생중계와 관련해 오프콤은 2024년 미디어법 제정에 따른 시행규칙과 고시를 마련 중인데, A그룹 이벤트에 대한 배타적 권리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CMS Law, 2025. 8. 11.).

그간 이러한 강행규정 외에도 스포츠 중계권자의 자율 규범을 통하여 시장의 큰 반발 없이 무료 중계가 이루어져 왔다. 즉, 국민적 스포츠는 국민 모두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강제에 앞서 중계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실현하려는 영국의 정책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자율 규범은 '주요 스포츠 경기의 방송: 스포츠 중계권자의 자율적 행동규범(Broadcasting of Major Sporting events: A Voluntary Code of Conduct for Rights Owners)'인데, listed events의 중계권을 보유한 다수의 권리자가 이 규범의 서명자(signatories)로 참여하고 있다. 이 규범의 서명자들은 두 가지 핵심 원칙을 준수할 것을 약속했는데. 첫째, 주요 스포츠 이벤트를 무료 방송 중계를 통해 시청자들이 접근가능하게 할 것이며, 둘째, 해당 스포츠 종목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수익을 재투자할 것이다(Ofcom, 2025. 6. 13. 부록 3, 4쪽).

그런데, 스트리밍 미디어의 등장 이후 영국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생중계 시청이 여전히 스포츠 중계를 즐기는 주된 방식이긴 하지만, 시청자들-특히 젊은 층-은 점점 더 온라인을 통해 이를 소비하고 있다. 게다가, 다큐멘터리, 짧은 형식의 하이라이트, 클립, 기타 소셜미디어 콘텐츠와 같은 비(非) 생중계 디지털 스포츠 콘텐츠에 대한 관심도 젊은 연령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수요를 활용하기 위해, 중계권 보유자들은 이벤트의 디지털 주문형(on-demand) 콘텐츠를 점점 더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권리를 직접 보유하거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경우 중계권의 잠재적 가치가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공영방송(PSBs)과 같은 방송사들이 스포츠 중계권 시장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Group B 이벤트 가운데 생중계로 무료 제공되는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서비스 제공자들 간의 경쟁이 심화하면 중계권 가격이 상승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공영방송(PSBs)이 현재의 형태로 중계권을 확보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향후 현재의 listed events 제도의 실효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Ofcom, 2025. 6. 13, 45 쪽).

제2절 호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1. 호주의 보편적 시청권

호주는 국가적 중요성과 문화적 의미를 지닌 주요 이벤트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방송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반영되어, 호주 전역의 시청자가 주요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안티사이포닝(anti-siphoning) 제도로 법제화되었다. 호주 안티사이포닝 제도의 핵심은, 국가적 중요성과 문화적 의미를 지닌 이벤트가 유료 플랫폼에 의해 선점되어 공중의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방송서비스법은 주무부처 장관이 입법적 수단(legislative instrument)의 형태로 anti-siphoning list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목록에 포함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및 관련 미디어 서비스 제공자가 무료 지상파 방송사보다 앞서 중계권을 취득하는 것이 제한된다. 이러한 제한은 무료 지상파 방송사가 해당 이벤트를 중계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확보한 이후에만 해제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가. 안티사이포닝 룰과 안티호딩 룰

안티사이포닝 룰(Anti-siphoning rule)은 과거 유료방송 사업자가 주요 스포츠 이벤트의 중계권을 선점·독점함으로써 무료 방송을 통해 경기를 시청해 온 다수 국민의 편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규칙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특정 이벤트의 ‘중계권을 반드시 무료로 방송하라’고 직접 명령하기보다는, 중계권 거래에서의 우선 순위를 규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즉, 목록에 포함된 이벤트에 대해서는 무료 지상파(FTA) 방송사가 중계권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 다수가 중요한 이벤트를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어 있다(Parliament of Australia, 2024. 3. 20).

다만, 지상파 방송사가 무조건 해당 중계권을 구매한다는 보장은 없기때문에, 무료 지상파 방송사가 일정 시점까지 해당 목록에 포함된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유료방송·기타 사업자도 권리 취득이 가능하도록 목록에서 자동 제외(automatic delisting)하는 규정이 존재한다(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s.115(1AA)). 2024년 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자동 제외 기간을 12개월(52주)로 늘리는 방안이 제안되었으나, 최종 입법 단계에서는 기존의 6개월(4,368시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다만, 무료 방송사가 해당 이벤트의 중계권을 확보할 합리적인 기회(reasonable chance)를 갖지 못했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자동 제외를 유예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Prominence and Anti-siphoning) Bill 2023/2024).

안티호딩 룰(Anti-hoarding rule)은 중계권을 우선 확보한 방송사의 중계방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정책이다. 안티호딩 룰은 지상파 방송사가 중계권을 확보하지 않거나 중계권을 확보하고도 프로그램화하지 않는 방임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칙이다. 즉, 방송사가 국민적 관심 행사의 방송권을 구매한 뒤 이를 독점적으로 유지하거나, 실제로 방송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송권을 취득했지만 실제로 방송할 의도가 없는 경우, 해당 권리를 다른 방송사에 양도하거나 지상파방송을 통해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이다(심미선 외, 2024). 즉, ‘권리를 가진 자가 공적 접근성을 해치지 않도록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나. 안티사이포닝 제도 개편

호주는 2024년 7월 4일 온라인 플랫폼도 보편적 시청권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송 서비스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러한 제도 개편은 미디어 환경 변화, 특히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정부 영향분석과 의회 보고서는, 기존 안티사이포닝 제도가 전통적 방송서비스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요 이벤트가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의 ‘유료 장벽(paywall)’ 뒤로 이동할 위험과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이 존재했다고 지적한다.

2024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 <커뮤니케이션법 개정법(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Prominence and Anti-siphoning) Act 2024)>은 안티사이포닝 제도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스트리밍 플랫폼까지 포함해 적용하도록 구조적으로 확대·재편한 것이다. 이 법은 방송 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들을 독립된 Part 10B로 재구성하여, 주요 스포츠·문화 행사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규율 범위를 온라인 스트리밍 등 신유형 플랫폼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하였다.

기존에는 지상파가 주요 행사의 중계권을 확보하기 전 중계권 계약 접근이 금지되었던 사업자가 유료방송(subscription television broadcasting licensee)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Part 10B에서는 이를 ‘media content services’로 변경하며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넓혔다. 또한, 연결형(connected) TV 환경에서 무료 지상파 및 연계 BVOD 서비스의 발견 가능성(현저성)과 접근 용이성을 제고하는 Part 9E를 추가하였다는 것도 특징이다. Part 10B의 주요 내용을 담은 제146S조의 내용은 <표3-6>와 같다.

<표 3-6> 호주 방송서비스법의 보편적 서비스 관련 조항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Part 10B 146S : Simplified outline>
<p>This Part sets up a scheme to promote the free availability to audiences throughout Australia of television coverage of events of national importance and cultural significanc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Minister may, by legislative instrument (the anti-siphoning list), specify the events that are covered by this Part. If an event is specified in the list, there is a period in which media content service providers (other than national broadcasters and certain Australian commercial television broadcasting licensees) are prohibited from acquiring the rights to televise or otherwise provide coverage of a whole or a part of the event. This ensures that national broadcasters and certain Australian commercial television broadcasting licensees have the opportunity to acquire the rights and televise the event for free to the general public. • If the rights to an event are not acquired within the relevant period, the event is automatically removed from the anti-siphoning list, unless the Minister makes another legislative instrument declaring that the event is to remain in the list.

- The Minister also has a general power to remove events from the list if the Minister considers it appropriate to do so (for example, if the Minister thinks that doing so is likely to have the effect that the event will be televised to a greater extent than if it remained in the list).
- The ACMA has information gathering and enforcement functions and powers in relation to this Part.
- There is to be a review of the operation of this Part.

이 Part(본 편)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중요성과 문화적 상징성이 큰 행사에 대한 텔레비전 중계가 호주 전역의 시청자에게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추진하기 위한 제도를 설정한다.

- 장관은 입법도구(anti-siphoning list)에 의해, 이 Part의 적용을 받는 행사를 지정할 수 있다. 행사가 목록에 지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미디어콘텐츠서비스 제공자**(전국 공영방송 및 특정 호주 상업 텔레비전 방송 면허사업자를 제외)는 그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방송(televised)하거나 그 밖의 방식으로 중계를 제공하기 위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는 전국 공영방송 및 특정 호주 상업 텔레비전 방송 면허사업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하여, 일반 대중에게 그 행사를 무료로 텔레비전 중계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 관련 기간 내에 어떤 행사에 대한 권리가 취득되지 않으면, 장관이 해당 행사가 목록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는 또 다른 입법도구를 만들지 않는 한, 그 행사는 안티-사이포닝 목록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 장관은 또한 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목록에서 행사를 제외할 수 있는 일반 권한을 가진다(예컨대, 장관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해당 행사가 목록에 남아 있는 경우보다 더 크게 텔레비전으로 중계될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 ACMA는 이 Part와 관련하여 정보 수집 및 집행 기능과 권한을 가진다.

- 이 Part의 운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안티-사이포닝 관련 법 개정과 관련된 문제의식은, 전통적으로 유료방송(구독형 사업자)에 주로 작동하던 규율만으로는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한 디지털 권리의 독점적 확보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호주는 안티-사이포닝 체계를 '방송 우선의 안전망(broadcasting safety net)'으로 재정의하면서, 주요 행사가 온라인 유료 플랫폼에서만 중계되는 잠재적·실질적 위험을 제도권에서 직접 다루기 시작했다. BSA Part 10B에서는 media content services의 정의를 146U 조항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3-7> 호주 방송서비스법 Part 10B 146U 원문 및 번역문

<146U Media content service>

(1) For the purposes of this Part, media content service means any of the following:

- (a) a broadcasting service;
- (b) an online information service (for example, a dial up information service);
- (c) an online entertainment service (for example, a video on demand service or an interactive computer game service);
- (d) any other online service that allows end users to access content using a listed carriage service;
- (e) a specified service that the Minister determines, under subsection (2), is a media content service;

but does not include a specified service that the Minister determines, under subsection (3), is not a media content service.

(2) For the purposes of paragraph (1)(e), the Minister may, by legislative instrument, determine that a specified service is a media content service.

(3)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 the Minister may, by legislative instrument, determine that a specified service is not a media content service.

(1) 미디어콘텐츠서비스(media content service)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a) 방송서비스(broadcasting service)
- (b) 온라인 정보서비스(예: 전화접속(dial-up) 정보서비스)
- (c) 온라인 오락서비스(예: 주문형 비디오(video on demand) 서비스 또는 인터랙티브 컴퓨터 게임서비스)
- (d) 이용자(end-users)가 등재된 통신서비스(listed carriage service)를 이용하여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모든 온라인 서비스
- (e) 장관이 제(2)항에 따라 미디어콘텐츠서비스로 지정한 서비스(specified service)
다만, 제(3)항에 따라 장관이 미디어콘텐츠서비스가 아닌 것으로 결정하는 지정된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제(1)항(e)호의 목적상, 장관은 입법도구(legislative instrument)로 특정 서비스를 미디어콘텐츠서비스라고 결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목적상, 장관은 입법 도구로 특정 서비스를 미디어콘텐츠서비스가 아니라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호주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기술중립적 관점에서 무료 온라인 서비스와 무료 지상파를 동등한 접근 경로로 다루는 모델이 이상적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현 시점에서는 무료 지상파방송을 문화적으로 중요한 콘텐츠에 대한 ‘가장 안정적이고 공평한’ 무료 접근 방식으로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인터넷 미접속 또는 영상 스트리밍에 필요한 광대역 환경의 제약과, 대형 이벤트의 동시 접속 수요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즉, 장기적으로는 무료 온라인 서비스와 무료 지상파를 동등한 접근 경로로 다루는 기술중립적 모델이 이상적일 수 있더라도, 현 시점의 접근 격차와 시스템 안정성 리스크를 고려하면 전 국민 무료 접근을 가장 일관되게 담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여전히 지상파 방송이라는 정책적 판단인 것이다.

Part 10B 개정 전 검토 보고서를 살펴보면, 무료 접근을 둘러싼 비용을 단순히 ‘구독료(명시적 비용)’로만 보지 않고, 인터넷 접속·대역폭·장비·전력 등 접근 자체에 내재된 비용(암묵적 비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Parliament of Australia, 2024. 3. 20.). 그 결과, 인터넷 미접속 또는 스트리밍에 필요한 광대역 환경을 갖추지 못한 인구가 존재하고, 대형 이벤트에서 동시접속 수요가 급증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방송 우선 안전망(broadcasting safety net)’ 선택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제시된다.

다만, 이러한 개편이 지상파에 유리하게 작동하고, 그만큼 다른 미디어콘텐츠 제공자 및 특히 스포츠 단체의 협상력·수익 극대화 여지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실제 이용자 관점에서 다른 무료 온라인 서비스와 실질적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면허사업자와 연계된 BVOD만을 우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 바 있다.

2025년 초에는 AFL 신규 중계권 계약에 따라, 홈앤어웨이 시즌 토요일 AFL 경기가 빅토리아·태즈메이니아·노던테리토리에서 Fox Footy 독점 중계로 편성되며, 다른 지역에서도 최소 초반 8~10라운드 동안 토요일 무료 지상파 생중계 편성이 사실상 부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슈화되었다. 토요일 밤 ‘국민적 관행’으로 자리 잡아 온 무료 지상파 시청의 약화를 의미함과 동시에, 구독형 서비스의 월 이용료 부담이 가계 비용 압력으로 다가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 사례는 안티-사이포닝 제도가 대중적으로 종종 기대되는 것과 달리, '무료·생중계 보장 규칙'이 아니라 '권리 취득의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규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호주 통신부 장관은 안티-사이포닝 목록의 기능을 "무료 지상파가 권리를 받드시 취득한다거나, 모든 경기가 무료 또는 생중계로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긋고, 권리 계약과 편성은 결국 스포츠 리그와 미디어 사업자의 상업적 합의의 영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ABC, 2025. 3. 4.).

2. 호주 국민 관심 행사

가. 국민 관심 행사 목록(anti-siphoning list)

호주에서는 <1992년 방송서비스법> 115조 제정에 따라 1994년에 최초로 국민적 관심 행사 목록(anti-siphoning list)이 만들어지며 제도가 본격적으로 작동되었다. 이 목록에 포함된 경기는 호주 국민들에게 국가적이거나 문화적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업방송이나 전국 방송에 의해 방송될 수 있는 경기를 의미한다. 호주 인프라 및 커뮤니케이션부(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 장관이 법령 위임 형식으로 지정하며, 통신미디어 규제기관인 ACMA(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가 규제를 담당한다(심미선 외, 2024).

호주에서는 2024년 11월 29일 안티사이포닝 리스트를 수정하여, 여자 FIFA 월드컵 중계를 남자 월드컵과 동일한 기준으로 호주 성인 대표팀이 참가하는 모든 경기, 대회의 결승전, 그리고 호주에서 열리는 성인 대표팀의 예선경기를 포함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2024. 11. 29). 이에 앞서 호주 정부가 시행한 2022~2023년에 안티사이포닝 제도 검토(Anti-siphoning scheme review) 과정에서 기존 안티-사이포닝 리스트는 전통적으로 남성 스포츠에 편중되어 있고, 여성 스포츠 및 장애인 스포츠 이벤트를 충분히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정에서 여자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는 2023년 여자 FIFA 월드컵에서 호주 여자 대표팀의 성공으로 전통적 남자 이벤트 수준의 대중적 관심과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즉, 스포츠 소비자의 행동 및 시청 통계가 여성 스포츠에 대한 강한 수요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를 반영해야 한

다는 논리를 수용한 것이다.

<표 3-8> 호주 국민적 관심행사 목록(anti-siphoning list)

종목·대회	지정 범위	비고
올림픽	하계올림픽의 모든 경기/동계올림픽의 모든 경기	개막식·폐막식 포함
하계 패럴림픽	하계 패럴림픽의 모든 경기	개막식·폐막식 포함
커먼웰스 게임	커먼웰스 게임의 모든 경기 (영연방 소속 국가들 간의 종합 스포츠 대회)	개막식·폐막식 포함
경마	빅토리아 레이싱클럽(VRC)이 주관하는 멜버른컵의 각 회차(each running)	'멜버른컵 데이 전체'가 아니라 멜버른컵 레이스 자체의 회차
호주식축구	AFL 프리미어십의 모든 경기	여자 파이널시리즈 한정
럭비리그 (남녀)	NRL 프리미어십의 모든 경기와 NRL State of Origin 시리즈의 모든 경기	여자 리그(NRLW)는 파이널 시리즈 한정
럭비 국가 대항전	(1) 호주 시니어 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남·여 국제 테스트 매치중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기 전부 (2) 럭비리그 월드컵경기 중 호주 시니어국가대표팀이 참가하고 호주·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에서 개최되는 경기 전부	
럭비 유니언	(1) Rugby Australia가 선발한 호주 시니어국가대표팀이 참가하는 남·여 국제 테스트 매치 중 호주 또는 뉴질랜드 개최 경기 전부 (2) 럭비월드컵경기(Rugby Australia 선발) 중 호주 시니어 대표팀이 참가하는 경기 전부 (3) 럭비 월드컵 남·여 결승	테스트 매치는 호주·뉴질랜드 개최로 제한. 월드컵은 개최지 제한 없음. 결승은 남·여 모두 포함
크리켓	(1) Cricket Australia가 선발한 호주 시니어 대표팀 참가 남·여 테스트 매치중 호주 개최경기 전부 (2) 애시스(Ashes) 시리즈중 호주 시니어 대표팀과 잉글랜드 시니어 대표팀이 참가하고 호주 또는 영국 개최인 남·여 경기 전부 (3) 호주 시니어 대표팀 참가 남·여 ODI중 호주 개최 경기 전부 (4) 호주 시니어 대표팀 참가 남·여 T20I중 호주 개최 경기 전부 (5) ICC 남자·여자 크리켓 월드컵중 호주 시니어	결승은 “호주·뉴질랜드 개최 시에만”

	대표팀이 참가하고 호주 또는 뉴질랜드 개최인 경기 전부 (6) ICC 남자·여자 크리켓 월드컵 결승(단, 결승이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우) (7) ICC 남자·여자 T20 월드컵중 호주 시니어 대표팀 참가 + 호주 또는 뉴질랜드 개최 경기 전부 (8) ICC 남자·여자 T20 월드컵 결승(단, 결승이 호주 또는 뉴질랜드에서 개최되는 경우)	
축구 (남녀)	(1) FIFA 월드컵 경기 중 Football Australia가 선발한 호주 시니어 대표팀이 참가하는 경기 전부 (2) FIFA 월드컵 결승 (3) FIFA 월드컵 예선 경기 중 호주 시니어 대표팀이 참가하고 호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전부	
테니스	(1) 호주오픈 모든 경기 (2) ITF 데이비스컵 월드그룹의 각 타이(tie)중 호주 대표팀이 참가하고 호주에서 개최되는 경기 전부 (3) ITF 데이비스컵 월드그룹 결승(단, 결승에 호주 대표팀이 참가하는 경우)	데이비스컵은 “호주 개최 및 호주팀 참가”, 결승은 “호주팀 참가시”
네트볼	네트볼 월드컵의 준결승 또는 결승 중 Netball Australia가 선발한 호주 시니어 대표팀이 참가하는 경기	준결승·결승 한정 및 호주 대표팀 참가 조건
모터스포츠	(1) 호주에서 개최되는 FIA F1 월드챔피언십(그랑프리)의 각 레이스 (2) 호주에서 개최되는 FIM MotoGP 월드챔피언십의 각 레이스 (3) Supercars 챔피언십의 Bathurst 1000 레이스	“호주 개최” 조건(F1 및 MotoGP), Bathurst 1000은 레이스 자체 지정

※ ‘파이널 시리즈(Finals Series)는 플레이오프(포스트시즌)을 의미

* 출처: Australia Minister for Communications (2024. 11. 29).

나. 국민적 관심 행사의 선정 요건

안티사이포닝의 정책적 목적은 ‘국가적 중요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지닌 행사의 중계가 호주 전역의 시청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방송서비스법(Part 10B)에 명시되어 있다. 다만, 호주에서는 영국과 같이 국민적 관심 행사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22년 인프라 및 커뮤니케이션부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의 안티사이포닝 법안 검토 공식 문헌에서는 ‘어떤 이벤트를 목록에 포함할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자동으로 도출하는 간단하거나 단일한 규칙은 없다’고 명시하면서, 목록 갱신 시 종목별, 대회별 특성을 고려한 균형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2022. 10).

단, 2007년 1월 정부가 제정한 국민적 관심 행사의 유지 및 제외 가이드라인 (use-it-or-lose-it’ guidelines)은 존재한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지상파가 취득한 권리의 유형, 전체 50% 초과 호주 인구가 시청 가능했었는지의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ACMA. 2006. 03).

<표 3-9> 호주 국민적 관심행사 유지/제외 가이드라인

원문	번역
what broadcast rights had been acquired by the FTA broadcaster	무료 지상파방송사가 어떤 중계권을 취득하였는지
whether the event or events which make up an item were shown by broadcasters able to reach at least 50 per cent of the population	하나의 항목을 구성하는 해당 이벤트가 인구의 최소 50%에 도달할 수 있는 방송사에 의해 방송되었는지
an event would be considered to have been broadcast if at least half of the total event was broadcast	전체 이벤트 중 최소 절반 이상이 방송되었는지
whether the event or events that make up the item were shown live, or near live (commencing within one hour of the start of the event)	해당 항목을 구성하는 이벤트가 생중계 또는 이벤트 시작 후 1시간 이내에 중계되었는지
whether a delay in showing the event or events that make up the item was intended to allow the event to be broadcast at a time of, or in a form, that would provide greater audience interest;	이벤트를 방송하는데 지연이 있었다면, 그것이 이벤트를 시청자 관심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는 시간대에, 또는 시청자 관심을 더 크게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방송하기 위한 의도였는지
relevant contractual obligations with the rights holder;	권리자와의 관련 계약상 의무
in cases where free to air rights were	무료지상파 권리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p>not fully utilised, whether those rights were made available to another FTA broadcaster and whether any subscription TV rights held by the broadcasters were made available to a subscription TV operator on a reasonable basis</p>	<p>경우, 그 권리가 다른 FTA 방송사에게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방송사가 보유한 유료 방송 권리가 있다면 그것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제공되었는지</p>
--	---

실제로 2017년 국민 관심행사 목록 조정 검토 당시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1) 무료 지상파방송(FTA) 사업자의 중계권 취득 이력, (2) 취득 이력이 있는 경우 중계의 성격·범위(생중계/지연, 전 경기/부분 중계), (3) 지상파에서 방송되었을 때의 시청자 규모, (4) ‘국가적 중요성’ 여부 등을 핵심 판단기준으로 활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Impact Analysis, 2017. 11).

다. 국민적 관심 행사 선정 절차

호주의 국민적 관심 행사 선정은 인프라 및 커뮤니케이션부 장관의 법령 위임 형식으로, <입법절차법(Legislation Act 2003)>이 정한 위임입법의 일반 절차를 따르게 된다. 먼저 동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규칙 제정권자가 제정에 앞서,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한 범위에서 협의가 이뤄졌는지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3항은 협의의 방식과 관련된 것으로, 의견서 제출 요청이나 공청회 진행 등을 협의 절차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문서의 유효성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19조), 협의는 ‘법적 하자’보다는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설득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 요건으로 기능하는 성격이 강하다. 또한 위임입법의 목적과 및 적용 방식,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했다면 그 내용을, 협의가 없었다면 그 사유가 포괄된 설명서를 제시하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로 2022년 10월 호주 정부는 안티사이포닝 제도와 행사 목록을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서면 제출 방식으로 받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2023년 8월에는 1차적으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화된 개편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추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Australian Government, 2023. 08.). 이후 3개월 뒤 이전 절

차를 통해 제출받은 의견을 공개했는데, 해당 내용에 따르면 당시 지상파 무료 방송사는 현행 체계를 온라인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강하게 지지했으나, 공영방송 ABC는 그 방식이 오히려 방송중계가 아니라 스트리밍 중계로만 귀결될 위험을 지적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스포츠 단체는 미디어 권리의 상업적 가치 극대화 필요성과 함께 국민적 관심 행사목록 축소를 주장하였다(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Impact Analysis, 2023. 11).

제3절 유럽연합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1. 유럽연합

사회적으로 중요한 스포츠·문화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호는 유럽 미디어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전해 왔다. 텔레비전 중계가 대중적 여가와 공적 담론의 중심 매체로 자리 잡은 이후,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주요 이벤트는 단순한 오락 콘텐츠를 넘어 사회적 통합과 문화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유료 방송과 프리미엄 중계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러한 이벤트가 고가의 독점 중계 계약을 통해 유료 플랫폼에만 제공될 경우 상당한 비율의 시민이 접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유럽연합 차원에서 제도화되었다. 유럽연합은 <국경 없는 텔레비전 지침(Television Without Frontiers Directive)>을 거쳐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VMSD)>을 통해, 사회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이벤트(events of major importance for society)는 회원국 시민 다수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European Parliament &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0). 특히, EU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들은 유럽 시민들이 중요한 사회적, 문화적 행사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원칙은 방송권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 중계로 인해 공중 접근이 박탈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둔다. 즉, 미디어 시장의 상업적 역동성과 공공적 접근 보장을 조화시키는 것이 제도의 핵심 목적이다.

AVMSD는 주요 이벤트가 유료 텔레비전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 규범 틀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범 틀은, 특정 사회에 있어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이벤트가 독점적으로 방송될 경우 다수의 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박탈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원국이 자국 관할 하의 방송사업자가 그러한 이벤트를 독점적으로 방송하지 못하도록 보장할 수 있게 한다(EC, 2025).

AVMSD 제14조에서 유료 독점 중계로 인해 다수 국민이 배제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무료 실시간 방송을 통해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지정된 이벤트 목록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 목록에 포함된 이벤트는 국민이 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이벤트는 올림픽, 월드컵, 유럽 축구선수권과 같은 전통적 대규모 스포츠뿐만 아니라 주요 국민 행사, 왕실 행사처럼 사회·문화적 상징성이 큰 이벤트나 국가적 문화 결속이나 공동체 정체성에 기여하는 행사가 될 수 있다. 이런 기준에서 회원국의 국내 이벤트나 국제적 이벤트일 수도 있으며, 국왕·여왕 또는 국가원수의 즉위식, 결혼식, 장례식이나 중요한 문화 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 이벤트 목록은 회원 국가가 결정하는데, 보통 주요 스포츠 이벤트, 중요한 국가적 행사 등이 포함된다.

회원국들은 이 목록에 포함된 이벤트가 대중적으로 접근가능한 방송플랫폼(on free television)을 통해 전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즉, 해당 이벤트를 유료 서비스가 독점하지 않고, 무료 방송 채널을 통해 중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이 다른 EU 국가에서 방송되는 중요 이벤트의 시청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여 유럽 내의 자유로운 정보흐름과 문화교류를 촉진하고자 하였다. 다만, EU의 여타 법안과 같이 보편적 시청권의 구체적 보장 방식과 적용 범위는 회원국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EU, 2018).

〈표 3-10〉 유럽연합 AVMSD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조항

조문	한글번역
AVMSD Article 14 - Events of major importance for society	제14조(사회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이벤트)
1. Each Member State may take	제1항. 각 회원국은, 해당 회원국의 관할

<p>measures in accordance with Union law to ensure that broadcasters under its jurisdiction do not broadcast on an exclusive basis events which are regarded by that Member State as being of major importance for society in such a way as to deprive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public in that Member State of the possibility of following such events by live coverage or deferred coverage on free television.</p> <p>If it does so, the Member State concerned shall draw up a list of designated events, national or non-national, which it considers to be of major importance for society. It shall do so in a clear and transparent manner in due time. In so doing the Member State concerned shall also determine whether these events should be available by whole or partial live coverage or, where necessary or appropriate for objective reasons in the public interest, whole or partial deferred coverage.</p> <p>2. Member States shall immediately notify to the Commission any measures taken or to be taken pursuant to paragraph 1. Within a period of 3 months from the notification, the Commission shall verify that such measures are compatible with Union law and communicate them to the other Member States. It shall seek the opinion of the contact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29. It shall forthwith publish the measures taken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and at least once a year the consolidated list of the measures taken by Member States.</p>	<p>에 속하는 방송사업자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그 회원국이 간주하는 이벤트를 독점적으로 방송함으로써, 그 회원국 내의 상당한 비율의 국민이 무료 텔레비전을 통해 해당 이벤트를 생중계(live coverage) 또는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유럽연합 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회원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해당 회원국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는 이벤트(국내 이벤트 또는 비국내 이벤트)를 지정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명확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적시에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회원국은 이러한 이벤트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생중계로 제공되어야 하는지, 또는 공익상 객관적인 사유로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녹화중계로 제공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결정하여야 한다.</p> <p>제2항.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이미 취하였거나 취할 예정인 모든 조치를 지체없이 집행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가 유럽연합 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른 회원국들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집행위원회는 제29조에 따라 설치된 연락위원회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회원국이 취한 조치를 유럽연합 관보에 즉시 게재하여야 하며, 또한 회원국들이 취한 조치의 통합 목록을 매년 최소 1회 공표하여야 한다.</p>
---	---

<p>3. Member States shall ensure, by appropriate means within the framework of their legislation, [▶C1] that broadcasters under their jurisdiction do not exercise the exclusive rights purchased by those broadcasters after 30 July 1997 in such a way ◀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the public in another Member State is deprived of the possibility of following events which are designated by that other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s 1 and 2 by whole or partial live coverage or, where necessary or appropriate for objective reasons in the public interest, whole or partial deferred coverage on free television as determined by that other Member Stat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p>	<p>제3항. 회원국은 자국 법제의 틀 내에서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C1]자국 관할에 속하는 방송사업자가 1997년 7월 30일 이후에 취득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 다른 회원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이벤트로 지정한 이벤트를, 해당 다른 회원국이 제1항에 따라 정한 바에 따라 무료 텔레비전을 통한 전부 또는 일부 생중계, 또는 공익상 객관적인 사유로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 녹화중계를 통해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 회원국 상당한 비율의 국민이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	---

2. 독일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연방 단일 법률이 아니라, 16개 연방주(Länder)가 공동으로 체결한 주간 미디어협약(Medienstaatsvertrag, MStV)에 의해 규율된다. 이 협약은 독일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미디어 규제 의 기본 헌장에 해당하며, 그 안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Großereignisse)에 대한 방송 접근 보장 규범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논의는 1988년 독일축구협회와 UFA 필름-텔레비전 회사가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 경기에 대한 독점적 중계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촉발되었다. 1991년 <주간 방송협약(RStV)>의 개정안(1991. 8. 31) 제4조를 신설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였는데, 이 협약에 따르면 올림픽 및 월드컵 등의 대형 스포츠 행사의 중계방송 프로그램

은 독일 전체 가구의 3분의 2 이상이 수신 가능한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통해, 적절한 조건으로 제공해야 한다. 즉, 무료 지상파방송을 제공하는 공영방송(PSB)에게 중계권을 부여하는 영국과 달리, 독일에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하다면,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다. 이 방송협약은 2020년 11월 <주간 미디어협약(Medienstaatsvertrag, MStV)>으로 변경되었으며, 중요한 방송이벤트 중계에 대한 규정은 새 조약 §13에 계승되었다.

독일의 주간 미디어협약(MStV) 제13조(국민관심행사의 방송중계 조항)에 규정된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Großereignisse)'를 암호화하거나 특별 요금으로 방송하는 것을 금지한다. 즉, 중요 이벤트는 독일 내에서 적어도 하나의 '무료 및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또는 소폭 지연된)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해당 조항은 방송사 또는 제 3자가 적절한 조건에서 이러한 행사의 중계방송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조건의 공정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행사 전에 적시에 민사소송법 제1025조 이하에 따른 중재 절차에 합의 해야 한다.

<표 3-11>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주간미디어협약(MStV) 제13조

MStV 제13조(영문 번역)	한글 번역
<p>MStV § 13 - Broadcasting of Major Events</p> <p>(1) The broadcasting in television of events of considerable significance to society (major events) in Germany in encrypted form and against special payment is only permissible if the television broadcaster itself or a third party enables, under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that the event can be broadcast at least in a freely receivable and generally accessible television program in Germany simultaneously or, if not possible due to parallel individual events, with a slight time delay.</p> <p>If there is no agreement on the fairness of</p>	<p>주간미디어협약 제13조- 주요 행사의 중계 방송</p> <p>(1) 독일에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 행사(대형 행사)를 암호화된 형태로 특별 요금을 받고 텔레비전으로 방송하는 것은, 해당 텔레비전 방송사 자체 또는 제 3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그 행사가 최소한 독일의 무료 수신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또는 병행하는 개별 행사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방송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p> <p>조건의 공정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들은 행사 전에 적시</p>

<p>the conditions, the parties should agree on arbitration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 1025 et seq.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in good time before the event; if the agreement on arbitration proceedings does not come about for reasons for which the television broadcaster or the third party is responsible, the transmission pursuant to sentence 1 shall be deemed not to have been enabled under fair conditions.</p> <p>Only a program that is actually receivable in more than two-thirds of households shall be considered a generally accessible television program.</p> <p>(2) Major events within the meaning of this provision are: Summer and Winter Olympic Games, In football European and World Championships, all matches with German participation and, regardless of German participation, the opening match, the semi-final matches and the final match, The semi-final matches and the final match for the association cup of the German Football Association, Home and away matches of the German national football team, Final matches of the European club championships in football (Champions League, Europa League) with German participation. For major events consisting of several individual events, each individual event shall be considered a major event. The inclusion or removal of events in this provision is only permissible through a state treaty of all Länder.</p> <p>(3) If a Member State of the European</p>	<p>에 민사소송법 제1025조 이하에 따른 중재 절차에 합의해야 한다. 텔레비전 방송사 또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중재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문에 따른 중재는 공정한 조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p> <p>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란 가구의 3분의 2 이상에서 실제로 수신가능한 프로그램만을 의미한다.</p> <p>(2) 이 규정의 의미에서 대형 행사는 다음과 같다: -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경기 - 축구 유럽선수권 대회 및 월드컵에서 독일이 참가하는 모든 경기, 그리고 독일 참가 여부와 관계없이 개막전, 준결승전 및 결승전 - 독일축구협회컵 대회의 준결승전 및 결승전 - 독일 국가대표 축구팀의 홈 및 원정 경기 - 독일이 참가하는 유럽 클럽축구 선수권 대회(챔피언스 리그, 유로파 리그)의 결승전, - 여러 개별 행사로 구성된 대형행사의 경우, 각 개별 행사가 대형행사로 간주된다. 이 규정에 행사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은 모든 주(Länder)의 주간 협약을 통해서만 가능하다.</p> <p>(3) 유럽연합 회원국이 지침 2010/13/EU</p>
---	--

<p>Union communicates its provisions on the broadcasting of major events pursuant to Article 14(2) of Directive 2010/13/EU to the European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does not raise objections within three months of the notifica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ar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the broadcasting of major events in encrypted form and against payment for that Member State is only permissible if the television broadcaster enables a transmission in a freely accessible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 concerned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p> <p>(4) If provisions of a state that has ratified the 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 in the version of the amending protocol of 9 September 1998 are publishe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 under Article 9a(3) of the Convention, this regulation shall apply to broadcasters in Germany in accordance with sentence 4, unless the heads of government of the Länder refuse recognition of the regulation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by unanimous decision. Recognition may only be refused if the provisions of the state concerned violate the Basic Law or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p> <p>The provisions applicable to broadcasters in Germany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procedure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s of the Länder. From the day of the last publication in the gazettes of the Länder, the broadcasting of major events in encrypted form and against</p>	<p>제14조 제2항에 따라 대형 행사의 방송에 관한 자국의 규정을 유럽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제기하지 않으며, 해당 회원국의 규정이 유럽연합 관보에 게재되는 경우, 해당 회원국에 대하여 대형 행사를 암호화된 형태로 요금을 받고 방송하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사가 관보에 게재된 해당 회원국의 규정에 따라 무료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에서의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p> <p>(4) 1998년 9월 9일자 개정 의정서 버전의 유럽 월경 텔레비전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규정이 협약 제9a조 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공포되는 경우, 이 규정은 제4문에 따라 독일 방송사에 적용된다. 다만 주의 정부 수반들이 만장일치 결정으로 6개월 기간 내에 그 규정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승인은 해당 국가의 규정이 기본법 또는 유럽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만 거부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절차에 따라 독일 방송사에 적용되는 규정은 각 주의 공식 공보에 공고되어야 한다. 주의 공보에 마지막 공고가 게재된 날부터, 해당 국가에 대하여 대형 행사를 암호화된 형태로 요금을 받고 방송하는 것은 텔레비전 방송사가 해당 국가의 공표된 규정에 따라 그곳에서 무료 접근가능한 프로그램에서의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p>
--	---

<p>payment for that state concerned is only permissible if the television broadcaster enables a transmission there in a freely accessible program in accordance with the published provisions of the state concerned.</p> <p>(5) If a broadcaster violates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3 and 4, the license may be revoked. Instead of revocation, the license may be subject to additional conditions, insofar as this is sufficient to remedy the violation.</p>	<p>(5) 방송사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허가취소 대신, 위반을 시정하기에 충분한 범위 내에서 추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p>
---	--

나. 국민관심행사

1) 사회적으로 중요성을 지닌 행사

주간 미디어협약 제13조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행사(Großereignisse)’를 열거 방식으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에서는 올림픽 경기, 축구 월드컵과 유럽축구선수권대회와 특정 경기, 독일 국가대표팀의 경기, DFB 포칼 준결승 및 결승전, 그리고 UEFA 유럽 클럽대항전 결승전 등 일정한 스포츠 이벤트가 법률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로 명시되어 있다. 다만, 이 목록이 연방법이 아니라 주간 협약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방송과 문화가 주 권한에 속하는 연방주의 헌법 구조를 반영한 제도적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목록의 추가·삭제는 모든 주의 주간 협약(Staatsvertrag)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주간 미디어협약 제13조에 열거된, 무료 텔레비전을 통한 접근 보장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행사는 다음과 같다:

○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경기.

○ 아래의 축구경기

- FIFA 월드컵 및 UEFA 유럽선수권의 (i) 독일 참여 경기와 (ii) 독일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개막전·준결승·결승

- 독일 축구 국가대표팀의 홈-어웨이 경기
- DFB 포칼(독일 축구협회 컵대회) 준결승 및 결승전
- UEFA 챔피언스리그 및 유로파리그 결승전 등 유럽 클럽대항전의 결승 경기(독일이 참여하는 경우).

2) 행사 보호 규범의 작동 방식과 집행 구조

주간 미디어협약 제13조에서는 이 목록에 포함된 이벤트를 암호화·특별 대가(유료) 방식으로 방송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즉, 특정 이벤트에 대해 ‘반드시 무료 생중계를 하라’는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에 대해 유료 방송이나 암호화 방식의 독점적 중계를 통해 공중의 상당한 비율이 실질적으로 접근에서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규범의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이 협약 제13조(1)항에서 예외적으로 유료·암호화 방식이 허용되는 경우를 두는데, 그 요건으로 해당 이벤트가 독일에서 최소 하나의 무료(Free-to-air)·일반 접근이 가능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동시(또는 부득이하면 경미한 지연) 중계될 수 있도록 ‘적정 조건’으로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즉, 유료·암호화 중계를 선택하려면 동시(또는 경미 지연) 중계에 대한 무료 접근의 확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처럼, 특정 사업자에게 “반드시 무료로 중계하라”는 형태의 직접적 편성 의무를 설정하기보다, 유료·암호화 독점이 무료 접근을 실질적으로 막는 상황을 방지하는 방식이다.

이 규범의 집행은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각 주의 민영미디어 감독기관(Landesmedienanstalten)이,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각 방송사의 자체 감독기구가 주된 역할을 한다. 이들은 주간 미디어협약 제13조에 열거된 이벤트의 중계권 계약 구조에서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사전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적으로는 중계권 계약 체결 이전에 주 미디어 감독기관과의 공식 또는 비공식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중대성에 따른 법적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료 지상파 방송사와의 공동 중계(simulcast) 또는 부분적 권리 공유 방식이 선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사전 협의 관행은 독일 미디어 규제 실무에서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조정 메커니즘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요 이벤트가 단일 주의 차원을 넘어 전국적 파급력을 갖는 경우에는, 주 정부 간 방

송정책 조정기구인 방송위원회(Rundfunkkommission der Länder)를 중심으로 주 간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이벤트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시장에 사전적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신호가 제공되며, 이를 통해 중계권자에게 일정 수준의 예측 가능성이 부여된다.

독일 제도는 이처럼 법문에 열거된 이벤트 목록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구체적 집행 단계에서는 사전 협의와 행정적 판단을 중시하는 구조를 취한다.

3)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독일 공영방송의 역할

주간 미디어협약(MStV §13)에서는 독일 공영방송(ARD, ZDF 등)이 중요 이벤트 중계를 반드시 편성하라고 직접 명령하지 않는다. 대신, 공영방송에 부여된 프로그램 책무(Programmauftrag) 및 공적 역할 규범과 결합해 행사중계가 이루어진다. 독일 주간 미디어협약(Medienstaatsvertrag) 제26조는 공영방송을 단순한 프로그램 제공자가 아니라, 민주적 공론 형성,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핵심 공적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 전체가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정보·교육·문화적 콘텐츠를 제공할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MStV § 26). 이러한 공적 책무는 각 주 차원의 공영방송 관련 법(예를 들어, 바이에른 방송법이나 함부르크 미디어법 등) 및 '제 2 독일텔레비전(ZDF) 설립·운영에 관한 국가협약(ZDF-Staatsvertrag)'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되며, 공영방송이 기술적·경제적 장벽 없이 국민 전체에 도달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한다.

2025년 12월 1일 <제7차 미디어권 관련 주간협약 개정안>(Siebter Staatsvertrag zur Änderung medienrechtlicher Staatsverträge)이 발효되었는데, 이 개정안은 미디어주간협약(MStV) 뿐만 아니라 ARD-, ZDF-, Deutschlandradio-Staatsvertrag (공영방송 ARD, ZDF 및 독일라디오 협약), 그리고 Rundfunkfinanzierungsstaatsvertrag (방송재원조달협약) 같은 여러 주간 협약의 수정·보완이 포함된 개정 협약(Reformstaatsvertrag) 성격을 띤 것이다. 이 개정 협약(Reformstaatsvertrag)은 공영방송(ARD, ZDF, Deutschlandradio) 책무 재정의, 디지털·주문형 서비스의 공적 정당성 및 평가 체계 마련, 그리고 조직 통합, 성과 지표, 감독 구조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BR 24, 2025.11.30).

독일의 공영방송은 전통적으로 선형(linear) 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적 책무를 수행해 왔

으나, 미디어 이용 행태의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라 온라인 기반 서비스, 즉 텔레미디어 (telemedia)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개정협약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공영방송의 디지털 서비스 운영을 기존의 부수적·보완적 영역이 아니라 공영방송 핵심 책무의 일부로 명확히 재정립하는 데 초점을 둔다.

우선, 개정협약은 공영방송의 디지털 서비스가 방송프로그램의 단순한 재전송이나 보조 서비스에 머무르지 않고, 정보·교육·문화·사회 통합이라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수행하는 독자적 수단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은 온라인 플랫폼, 주문형 서비스(on-demand), 앱 기반 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연령 층과 이용자 집단에 접근할 책임을 지며, 특히 젊은 세대와 디지털 네이티브 이용자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이 강조된다.

둘째, 제7차 개정협약은 공영방송 텔레미디어 서비스의 운영 기준과 범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기존 체계에서는 각 방송사가 개별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확장하면서, 서비스 간 중복, 목적 불명확성, 민간 미디어와의 경쟁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협약은 공영방송이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가 공적 가치(Public Value)에 기여해야 하며, 상업적 미디어 시장을 불필요하게 잠식하지 않도록 기능적 한계를 명시하도록 요구한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 디지털 서비스의 정당성은 '시장 경쟁력'이 아니라 '공적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도록 제도적 기준이 강화되었다.

셋째, 공영방송의 디지털 서비스는 이제 사후적 승인이나 형식적 신고 대상이 아니라, 사전에 명확한 전략과 목표를 제시하고, 사후 이에 대한 평가를 받는 구조로 전환된다. 제 7차 개정협약은 공영방송이 텔레미디어 서비스를 기획·운영할 때, 이용자 도달 범위, 공익적 효과, 서비스 중복 여부 등을 포함한 체계적 평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주(州) 미디어 감독기구와 공영방송 내부 감독기구(Rundfunkrat 등)를 통해 이루어지며, 디지털서비스 역시 공영방송 전체 책무 이행의 일부로서 지속적인 감독과 조정의 대상이 된다.

넷째, 이 개정협약은 공영방송 디지털 서비스의 조직적·제도적 통합을 강조한다. ARD, ZDF, Deutschlandradio 등 각 공영 방송사에게 개별 디지털 전략을 유지하되, 공통된 원칙과 협력 구조하에서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술 인프라, 콘텐츠 제작, 플랫폼

품 운영의 중복을 줄이고, 공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공영방송이 운영하는 미디어 라이브러리, 스트리밍 플랫폼, 뉴스 포털 등은 분절된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통합된 공영 디지털 생태계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요컨대, 제7차 개정협약의 텔레미디어 운영 체계 정비는 단순한 온라인 서비스 확대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책무를 디지털 환경에 맞게 재구성하는 제도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공영방송이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민주적 여론 형성,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통합이라는 공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국가적 스포츠 행사 중계방송은 독일 공영방송이 보편적 도달성(universelle Erreichbarkeit)과 공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대표적 콘텐츠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공영방송은 실질적으로 주요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을 적극적으로 확보한다. ARD와 ZDF는 전체 예산의 약 5%를 스포츠 중계권에 투자한다(Weidner, 2024.10.29). ARD와 ZDF는 공동 스포츠 중계권 에이전시 SportAGmbH를 운영하며, 독일 국가대표팀 경기나 주요 국제대회의 중계권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왔다. 예를 들면, 2026년 FIFA 월드컵의 경우 ARD와 ZDF는 총 104경기 중 60경기의 중계권을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독일 국가대표팀의 모든 경기, 개막전, 준결승전, 결승전이 포함된다. 2028년 유럽 축구 선수권대회의 경우에도 51경기 중 34경기의 중계권을 확보했다(ZDF Presseportal, 2025. 10. 07).

3. 프랑스

프랑스는 방송을 문화적·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전통이 강한 국가로서, 주요 이벤트에 대한 접근권 보호를 미디어 규제의 중요한 요소로 다루어 왔다. 프랑스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를 문화적·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전통과, AVMSD에 의해 제도화된 유럽연합 차원의 규범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프랑스는 법률과 대통령령을 통해 중요 이벤트의 무료 접근 원칙을 명문화하고, 아르콤(ARCOM)을 통해 이를 집행함으로써, 상업적 중계권 시장과 시민의 보편적 시청권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가.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법적 형성

프랑스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 보호는 단일한 시점의 법 개정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라, 누적적인 법·행정 체계를 통해 발전해 왔다. 그 기본 법적 토대는 1986년 9월 30일 제정된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Loi n°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이다. 레오타르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프랑스 방송·시청각 규제的基本법으로서, 방송의 자유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율을 병행하고 있다. 이 법 제20-2조(Article 20-2)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의 중계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해당 조항은 특정 이벤트가 유료방송의 독점적 중계로 인해 국민 다수가 시청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이후 이 조항은 2004년 12월 22일 대통령령(Decree No. 2004-1392)을 통해 구체화되었는데, 이 대통령령에서 프랑스의 ‘국민 관심 행사’ 제도의 실질적 운영 방식이 확립되었다(표 3-14 참조). 즉, “중요 이벤트는 무료 방송에서 접근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아르콤(ARCOM)이 이를 집행하는 구조이다.

<표 3-12> 프랑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레오타르법 조항

제20-2조의 영문 번역	한글 번역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Loi Léoatard)	1986년 9월 30일 제정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86-1067호(레오타르법)
Article 20-2 (Amended by Law No. 2021-1382 of 25 October 2021 - Article 33)	제20조의2 (2021년 10월 25일 법률 제2021-1382호 제33조에 의거 수정: 규제기관 명칭이 변경됨)
Events of major importance may not be broadcast exclusively in such a manner as to deprive a significant part of the public of the possibility of following them, either live or recorded, on a free-to-air television service.	사회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이벤트는, 상당수의 대중이 무료 텔레비전 서비스에서 이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방송해서는 안된다.
The list of events of major importance	

<p>shall be established by decree of the Council of State. This decree shall determine the condi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p> <p>Television services may not exercise the exclusive rights that they have acquired after 23 August 1997 in such a way as to deprive a significant part of the public of another Member State of the European Community or of a State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of the possibility of following, on a free-to-air television service, the events declared to be of major importance by that State.</p> <p>The Regulatory Authority for Audiovisual and Digital Communication shall ensure that television services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p>	<p>주요 행사의 목록은 국무회의(Conseil d'État)의 심의를 거쳐 법령(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대통령령은 본 조항의 적용 조건을 규정한다.</p> <p>텔레비전 서비스는, 1997년 8월 23일 이후에 취득한 독점적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유럽공동체의 다른 회원국 또는 유럽경제 지역에 관한 협정 당사국의 상당수 국민이 해당 국가가 사회적으로 중대한 행사로 선언한 이벤트를 무료 텔레비전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서는 안된다.</p> <p>시청각 및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규제 당국은 텔레비전 서비스가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한다.</p>
--	--

나. 현행 법체제와 ARCOM의 역할

프랑스의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1986년 법률과 2004년 대통령령(Decree No. 2004-1392) 및 2024년 개정 대통령령(Decree No. 2024-699)으로 구성된 다층적 구조를 갖는다. 2004년 대통령령은 제1장 프랑스 영토 내 국민관심행사 방송에 적용되는 규정(제2조~제5조), 제2장 기타 유럽 국가의 영토 내 국민관심행사 방송에 적용되는 규정(제6조~제8조), 제3장 기타 총칙(제9조~제10조)으로 구성된다(표 3-14 참조). 이 시행령에서 무료 방송서비스("service de télévision à accès libre")를 '프랑스 본토 가구의 최소 85% 이상에 도달하는 텔레비전 서비스'로 정의하고(제2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자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를 독점적으로 중계하는 것을 제한한다(제4조).

이 제도의 집행과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은 프랑스 시청각·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규제청(ARCOM)이다. 아르콤(ARCOM)은 과거 최고시청각위원회(CSA)와 HADOPI를 통합하여

2021년 설립된 독립 규제기관으로서, 방송 면허 관리, 콘텐츠 규제, 중계권 독점 여부 감독 등을 수행한다. 중요 이벤트 중계가 보장되는 무료 방송서비스의 요건이나 중요 이벤트의 범위는 대통령령(Decree)에 의해 정해지며, ARCOM은 이러한 법령을 해석하고 사업자를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르콤(ARCOM)은 시장 감독과 법령상의 기준이 준수되는지를 모니터링하는데, 실무는 아르콤(ARCOM)의 정책분석 및 연구 전담 부서인 Studies, Economics and Prospective Directorate (통칭 DEP)이 스포츠 중계권 시장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중계권 분쟁은 주로 법원을 통해 해결된다.

<표 3-13> 프랑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행령 (원문 영어번역)

Décret n°2004-1392
<p>Decree No. 2004-1392 of 22 December 2004 issued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20-2 of Law No. 86-1067 of 30 September 1986 on Freedom of Communication (Version in force as of 3 January 2026)</p> <p>Article 1. This decree lays down the conditions under which television service providers shall ensure the exclusive broadcasting of events of major importance so that a significant part of the public is not deprived of the possibility of following such events on a free-to-air television service.</p> <p>TITLE I: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BROADCASTING OF EVENTS OF MAJOR IMPORTANCE IN FRENCH TERRITORY</p> <p>Article 2. For the purposes of this Title, the following definitions shall apply:</p> <p>a) “Free-to-air television service provider” means any provider of a television service whose funding does not rely on remuneration from users and whose broadcasts can be effectively received by at least 85% of households in metropolitan France;</p> <p>b) “Restricted-access television service provider” means any provider of a television service which does not meet both of the conditions set out in the preceding paragraph.</p> <p>Article 3 (Amended by Decree No. 2024-699 of 5 July 2024 - Article 1) The list of events referred to in Article 20-2 of the aforementioned Law of 30 September 1986 shall be established as follows:</p> <p>1° The Summer and Winter Olympic Games;</p> <p>2° Matches of the French national football team included in the calendar of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FIFA);</p>

- 3° The semi-finals and the final of the FIFA World Cup;
- 4° The semi-finals and the final of the UEFA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 5° The final of the UEFA Europa League when a sports club registered in one of the French championships participates;
- 6° The final of the UEFA Champions League;
- 7° The final of the Coupe de France football competition;
- 8° The Six Nations Rugby Tournament;
- 9° The semi-finals and the final of the Rugby Union World Cup;
- 10° The final of the French Rugby Union Championship;
- 11° The final of the European Rugby Cup when a sports club registered in one of the French championships participates;
- 12° The men's and women's singles finals of the Roland-Garros tennis tournament;
- 13° The finals of international team tennis competitions organized by the International Tennis Federation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14° The French Formula 1 Grand Prix;
- 15° The men's Tour de France cycling race;
- 16° The "Paris-Roubaix" cycling race;
- 17° The men's and women's European Basketball Championship 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18° The men's and women's Basketball World Championship 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19° The men's and women's European Handball Championship 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20° The men's and women's Handball World Championship 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21° The Athletics World Championships.

Article 3-1 (Inserted by Decree No. 2024-699 of 5 July 2024 - Article 2)

The list established in the preceding Article is supplemented as follows:

- 1° The Summer and Winter Paralympic Games;
- 2° Matches of the French women's national football team included in the FIFA calendar;
- 3° The semi-finals and the final of the FIFA Women's World Cup;
- 4° The semi-finals and the final of the UEFA Women's European Football Championship;
- 5° The final of the UEFA Women's Champions League;
- 6° The final of the UEFA Europa Conference League when a sports club registered in one of the French championships participates;
- 7° The final of the Coupe de France féminine football competition;
- 8° Matches of the French national rugby union teams, both women's and men's, included in the World Rugby calendar;
- 9° Matches of the French women's national team in the Women's Six Nations Rugby Tournament;

- 10° The semi-finals and the final of the Women's Rugby Union World Cup;
- 11° The final of the French Women's Rugby Union Championship;
- 12° The men's and women's singles semi-finals of the Roland-Garros tournament when a French athlete participates;
- 13° The men's and women's singles finals of Grand Slam tennis tournaments other than Roland-Garros when a French athlete participates;
- 14° The women's Tour de France cycling race;
- 15° The "Paris-Roubaix" women's cycling race;
- 16° The men's and women's European Basketball Championship semi-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17° The men's and women's Basketball World Championship semi-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18° The men's and women's European Handball Championship semi-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19° The men's and women's Handball World Championship semi-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20° The men's and women's European Volleyball Championship finals and semi-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21° The men's and women's Volleyball World Championship finals and semi-finals when the French national team participates;
- 22° The Alpine Skiing World Championships when the competition takes place in France.

Article 4(Amended by Decree No. 2024-699 of 5 July 2024 - Article 3)

The exercise, within French territory, by a television service provider of exclusive broadcasting rights acquired after 23 August 1997 in respect of one of the events of major importance mentioned in Article 3, or from the entry into force of Decree No. 2024-699 of 5 July 2024 in respect of one of those mentioned in Article 3-1, may not prevent the broadcasting of such event by a free-to-air television service, which must then be complete and live,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1° The broadcasting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15° of Article 3 and 14° of Article 3-1 may be limited to significant moment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broadcasting practice for such events;

2° The broadcasting of the events referred to in 1° and 21° of Article 3 and 1° of Article 3-1 may be limited to representative moments illustrating the diversity of the sports disciplines and the participating countries, and may be delayed where events take place simultaneously;

3° The broadcasting of events of major importance may also be delayed when the event takes place between 0:00 and 6:00 a.m. (French time), provided that its broadcast in France begins before 10:00 a.m.;

The fact that a restricted-access television service provider financed by user remuneration and whose broadcasts can be received under the conditions specified in

paragraph (a) of Article 2 of this Decree broadcasts the event in full and live—subject to the foregoing provisions—without subjecting it to special access conditions, shall not be deemed to prevent the broadcasting of an event of major importance by a free-to-air television service.

Article 5 In order to enable the broadcasting of an event of major importance by a free-to-air television service provider under the conditions laid down in Article 4, any television service provider holding exclusive broadcasting rights for all or part of such an event and unable to comply with those conditions must, within a reasonable time before the event, make a proposal to transfer the rights required to ensure its broadcast under the conditions of Article 4, using publicity methods that inform free-to-air television service providers. This offer must be made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market terms and conditions.

If, in response to such an offer, no proposal is made by a television service provider, or if such proposal is not made on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market terms and conditions, the holder of exclusive rights may exercise them without fulfilling the conditions set out in Article 4.

TITLE II: PROVISIONS APPLICABLE TO THE BROADCASTING OF EVENTS OF MAJOR IMPORTANCE IN THE TERRITORY OF OTHER EUROPEAN STATES

Article 6 (Amended by Decree No. 2024-699 of 5 July 2024 - Article 4)

The provisions of this Title apply to television service provid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France that broadcast, within the territory of another State that is a member of the European Union, a party to the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or a party to the European Convention on Transfrontier Television, an event designated by that State as being of major importance for its society within the meaning of Directive 2010/13/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rch 2010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and who have acquired the broadcasting rights to such event after 23 August 1997.

Article 7 (Amended by Decree No. 2024-699 of 5 July 2024 - Article 5)

Television service providers under the jurisdiction of France shall exercise, within a State referred to in Article 6, the broadcasting rights acquired for an event of major importance as defined by that State, in such a manner as not to deprive a significant part of the public of the opportunity to follow these events, live or recorded, on a free-to-air television service as defined in Article 14 of the aforementioned Directive of 10 March 2010.

Article 8. Where a television service provider under the jurisdiction of France broadcasts an event of major importance within one of the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6, it shall comply with the conditions imposed by that State for the broadcasting of the event by the television service provider.

TITLE III: FINAL PROVISIONS

Article 9 (Amended by Decree No. 2022-779 of 2 May 2022 - Article 28)

Upon referral by a television service provider or on its own initiative, the Regulatory Authority for Audiovisual and Digital Communication may issue an opinion on the condi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Article 10. A subsequent decree of the Council of State shall establish the list of events of major importance and the conditions for their broadcasting for the overseas departments, Saint-Pierre-et-Miquelon, Mayotte, New Caledonia, French Polynesia, and the Wallis and Futuna Islands, taking into account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of these territories and the technical particularities of overseas broadcasting.

Article 11. The Minister of Culture and Communication and the Minister for Overseas Territories shall each be responsible, as far as they are concern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ree, which shall be published in the Official Journal of the French Republic.

<표 3-14> 프랑스의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행령(원문 한글번역)

대통령령 제2004-1392호
2004년 12월 22일자 법 제86-1067호 「통신의 자유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제2004-1392호(2024년 7월 5일 대통령령 제2024-699호로 개정)
제1조 이 시행령은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자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독점 방송을 보장하는 조건을 규정하며, 국민의 상당 부분이 해당 행사를 무료 텔레비전 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장 프랑스 영토 내 국민관심행사의 방송에 적용되는 규정 (제2조~제5조)
제2조 본 편의 적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정의를 둔다.
a) “무료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Free-to-air television service) 제공자”라 함은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지 않고 운영되며, 방송이 프랑스 본토 가구의 최소 85% 이상에서 실질적으로 수신가능한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b) “제한접속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항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자를 말한다.

제3조 (2024년 7월 5일자 시행령 제2024-699호 제1조로 개정)

통신의 자유에 관한 1986년 9월 30일자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 1° 하계 및 동계 올림픽대회
- 2° 국제축구연맹(FIFA) 일정에 포함된 프랑스 국가대표 축구경기
- 3° FIFA 월드컵 준결승 및 결승전
- 4° UEFA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 및 결승전
- 5° 프랑스 리그 소속 구단이 참가하는 UEFA 유로파리그 결승전
- 6°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 7° 프랑스축구협회컵(Coupe de France) 결승전
- 8° 럭비 식스네이션스 대회
- 9° 럭비 월드컵(15인제) 준결승 및 결승전
- 10° 프랑스 럭비(15인제) 챔피언십 결승전
- 11° 프랑스 리그 소속 구단이 참가하는 유럽 럭비컵 결승전
- 12° 롤랑가로스 테니스대회 남녀 단식 결승전
- 13° 국제테니스연맹이 주최하는 국가대항 국제대회 결승전(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한 경우)
- 14° 프랑스 F1 그랑프리
- 15° 남자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 16° “파리-루베(Paris-Roubaix)” 사이클대회
- 17°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유럽농구선수권 결승전
- 18°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농구세계선수권 결승전
- 19°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유럽핸드볼선수권 결승전
- 20°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핸드볼세계선수권 결승전
- 21°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제3조의1 (2024년 7월 5일자 시행령 제2024-699호 제2조로 신설)

전조의 목록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가한다.

- 1° 하계 및 동계 패럴림픽대회
- 2° FIFA 일정에 포함된 프랑스 여자 국가대표 축구경기
- 3° FIFA 여자 월드컵 준결승 및 결승전
- 4° UEFA 여자 유럽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 및 결승전
- 5° UEFA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 6° 프랑스 리그 소속 구단이 참가하는 UEFA 유로파 콘퍼런스리그 결승전
- 7° 프랑스 여자축구협회컵 결승전
- 8° 월드컵럭비 일정에 포함된 프랑스 여자 및 남자 럭비(15인제) 국가대표 경기
- 9° 여자 식스네이션스 럭비 대회 프랑스 대표팀 경기
- 10° 여자 럭비 월드컵 준결승 및 결승전
- 11° 프랑스 여자 럭비(15인제) 챔피언십 결승전

- 12° 프랑스 선수가 참가한 경우 톨랑가로스 테니스대회 남녀 단식 준결승전
- 13° 프랑스 선수가 참가한 경우 톨랑가로스를 제외한 남녀 그랜드슬램 테니스대회 단식 결승전
- 14° 여자 투르 드 프랑스 사이클 대회
- 15° “파리-루베(Paris-Roubaix)” 여자 사이클 대회
- 16°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유럽농구선수권 준결승전
- 17°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농구 세계선수권 준결승전
- 18°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유럽핸드볼선수권 준결승전
- 19°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핸드볼 세계선수권 준결승전
- 20°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유럽배구선수권 결승 및 준결승전
- 21° 프랑스 대표팀이 참가하는 남녀 배구 세계선수권 결승 및 준결승전
- 22°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알파인 스키 세계선수권대회

제4조 (2024년 7월 5일자 시행령 제2024-699호 제3조로 개정)

텔레비전 방송사업자는 1997년 8월 23일 이후 제3조에 따른 행사에 관한 독점 중계권 또는 2024년 7월 5일자 시행령 제2024-699호 시행 이후 제3조의2에 따른 행사에 관한 독점 중계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무료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에서 해당 행사가 중계방송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중계방송은 원칙적으로 전면적(전체 행사)이고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3조 제15호 및 제3조의2 제14호의 행사는 통상적 방송 관행에 따라 주요 장면에 한정할 수 있다.

2° 제3조 제1호 및 제21호, 제3조의2 제1호의 행사는 종목 및 참가국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장면에 한정할 수 있으며, 경기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지연 중계방송할 수 있다.

3° 국민관심행사가 프랑스 현지 시각 0시부터 6시 사이에 개최되는 경우, 그 방송은 10시 이전에 개시되는 조건으로 지연 방송할 수 있다.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2조 a항의 조건에 따라 수신가능한 제한접속 방송사업자가, 특별한 접근제한 없이 해당 행사를 전면적이고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경우에는, 무료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 중계의 방해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 무료 지상파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자가 제4조에 따른 조건에서 국민관심행사를 방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독점 중계권을 보유하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방송사업자는 행사 개최 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무료 지상파방송 사업자(free-to-air television service)가 인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중계 가능한 권리의 양도를 제의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제의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시장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어떠한 방송 사업자도 이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공정하지 아니한 조건으로만 제안한 경우에는 중계권 독점권자는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2장 기타 유럽 국가 영토 내 주요 중요 행사 방송에 적용되는 규정(제6조~8조)

제6조(2024년 7월 5일자 시행령 제2024-699호 제4조로 개정)

본 장의 규정은 프랑스 관할권 하에 있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자 중, 1997년 8월 23일 이후 취득한 방송권을 근거로,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경제지역협정(EEA) 참가국 또는 유럽 텔레비전 협약 가입국의 영토 내에서, 해당 국가가 유럽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의 규정에 따라 자국 사회에 주요 중요 행사로 지정한 이벤트를 방송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제7조(2024년 7월 5일자 시행령 제2024-699호 제5조로 개정)

프랑스 관할권에 속하는 방송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국가에서 해당 국가가 정의한 주요 중요 행사에 관한 방송권을 행사함에 있어, 공중의 상당 부분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지침 제14조에 따라 정의된 무료 텔레비전 서비스를 통하여 해당 행사를 실시간 또는 지연 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프랑스의 관할권에 속하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자가 제6조에 언급된 국가 중 하나에서 국민관심행사를 방송하는 경우, 해당 국가가 자국내 방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규정(부칙) (제9조~제11조)

제9조 (2022년 5월 2일자 시행령 제2022-779호 제28조로 개정)

시청각 및 디지털 통신규제위원회는, 텔레비전 서비스 제공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본 시행령의 적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

후속 국무회의령(Decree)에서 해외 주(Guadeloupe, Martinique 등) 및 생피에르-미클롱, 마요트,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윌리스-푸투나 제도의 중요 행사 목록과 텔레비전 중계 조건을 정하며, 각 지역의 특성과 해외 방송의 기술적 특수성을 고려한다.

제11조

문화통신부 장관과 해외영토부 장관은 각자가 소관하는 범위 내에서 본 시행령의 집행을 담당하며, 본 시행령은 「프랑스공화국 관보」에 게재한다.

다. 국민관심행사

1) 중요 이벤트 선정 기준

프랑스의 중요 이벤트 목록은 단순한 종목 나열이 아니라, 공익성을 중심으로 한 명확

한 선정 기준에 기초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프랑스의 목록을 AVMSD 제14조에 따라 승인하면서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특정 스포츠 팬층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적 공명(*general resonance*)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해당 이벤트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는 문화적 중요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국가대표팀의 참가 여부나 국가적 상징성이 고려되며, 넷째, 해당 이벤트가 역사적으로 무료 텔레비전을 통해 중계되어 왔고 많은 시청자가 이를 시청해 왔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로 작용한다(*European Commission, 2024*). 마지막으로, 성평등과 포용성인데, 이 요소는 2024년 대통령령 개정에 포함된 것이다. 이러한 기준은 프랑스뿐만 아니라 AVMSD 체계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판단 틀로, 상업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의미와 접근권 보호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중요 이벤트 목록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 결정된다. 첫째, 정책검토 단계에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중요성을 지닌 이벤트 요소를 검토하는데 문화부(*Ministère de la Culture*)가 중심이 되어 아르콤(*ARCOM*), 스포츠부, 방송사, 권리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마련된 *Décret* 초안에는 추가·삭제할 이벤트, 적용 조건(프랑스 참가 여부 등), 무료 방송 요건(85% 도달 기준)이 포함되며, 행정입법 제정 절차에 따라 합법성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렇게 마련된 중요 이벤트 목록은 AVMSD Article 14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통보되어야 한다. 집행위원회가 해당 목록이 과도하지 않은지, 차별적인지, 서비스의 자유와 경쟁을 침해하지 않는지를 심사하는데, 만약 EU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해당 목록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2) 중요 이벤트 목록

프랑스의 국민 관심 행사(*événements d'importance majeure*) 목록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포괄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24년 7월 5일 대통령령(*Decree No. 2024-699*)을 통해 목록이 대폭 개정되면서, 남성 스포츠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 여성 경기와 패럴림픽 종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었다. 이는 스포츠 중계의 성평등과 포용성

을 강화하려는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2024년령의 구체적 추가 조항(제3-1조)은 하계 및 동계 장애인 올림픽(Paralympiques), FIFA 일정에 포함된 프랑스 여자 축구 대표팀 경기, FIFA 여자 월드컵 준결승·결승, 유럽 여자 축구 선수권대회 준결승·결승, 여자 챔피언스리그 결승 등이다(표 3-14 참조).

현행 목록에는 동·하계 올림픽을 비롯하여, 축구(월드컵 프랑스 경기, 월드컵 개막전·준결승·결승, 유럽선수권 준결승·결승, UEFA 클럽대회 결승), 럭비, 테니스(롤랑가로스), 자동차 경주, 사이클(투르 드 프랑스), 농구, 핸드볼, 육상 경기 등 주요 국제적, 국가적 이벤트 등 40여 개 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목록은 대통령령에 의해 명시되어 있는데, 무료 지상파방송(free-to-air TV)에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독점적 중계권 계약을 통해 무료 접근이 차단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제4절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비교 및 시사점

1. 해외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운영 비교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지정 행사(listed event)’ 또는 ‘주요 행사’라는 명칭 아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요 행사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보편적 방송 수신 가능한 방송채널의 성격이나 커버리지 요구사항은 나라마다 구체적 기준이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영방송이나 “무료” 지상파방송이 국민적 관심 행사의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영국, 호주, 프랑스는 국민적 관심행사를 공영방송(영국)이나 지상파방송(프랑스, 호주) 등 무료로 수신할 수 있는 방송채널을 통해 중계방송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의 가구가 시청 가능하다면, 케이블,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을 통해서도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다. 다만, ‘무료 및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채널을 통해 실시간(또는 소폭 지연된) 방송이 가능해야 한다.

〈표 3-15〉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구분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법형식	방송법 및 Ofcom Code	방송서비스법(BSA) 및 행정입법	주간 협약(MSTV)	레오타르법 및 대통령령(데크레)
규제 주체	국무장관 및 Ofcom	연방 장관	주별 규제기구, 방송위원회, 주(Länder)간 합의	문화부 및 ARCOM
스트리밍 포함 여부	포함 (Media Act 2024)	포함 (2024 개정 커뮤니케이션법)		

각 국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특징을 요약하면, 첫째, 영국의 국민관심행사 목록(listed event) 제도는 유럽에서 가장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발전해 온 모델로 평가된다. 영국 보편적 시청권 제도의 법적 기초는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6)에서 마련되었으며, 이 법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listed events)가 유료방송이나 제한적 플랫폼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민 다수가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틀을 확립하였다.

국민관심행사(listed events)는 A그룹과 B그룹으로 구분하여, A그룹에 속한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유료서비스에 의해 단독 생중계될 수 없으며, 국민이 무료로 접근가능한 서비스("Category 1")에서의 실시간 시청이 보장되어야 한다. 반면 B그룹 이벤트는 유료 독점 생중계가 허용될 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무료 서비스에서 하이라이트나 지연 중계 등 '적정한 2차 보도(adequate secondary coverage)'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분은 상업적 유연성과 공익적 접근권 사이의 균형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최근 영국 제도의 가장 큰 변화는 미디어법(Media Act 2024) 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 법은 기존 방송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규제를 스트리밍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가 유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국민 접근이 제한되는 상황이 빈번해졌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다. 미디어법 시행 이후 오픈마켓 후속 협의(consultation)를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보편적 시청권의 규제 대상이 되는 '관련 서비스(relevant service)'와 무료 생중계를 제공할 수 있는 '카테고리 1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온라인 환경에서도 동일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정비하고 있다.

국민관심행사 목록의 지정 권한은 문화·미디어 정책을 관할하는 국무장관(DCMS 장관)에게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제도의 작동은 방송 규제기관인 오프콤의 역할과 결합되어 이루어진다. 오프콤은 국민관심행사와 관련한 고시(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Events)를 제정·개정하여, 어떤 서비스가 Category 1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유료 독점 생중계에 대한 동의(consent)를 부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오프콤은 무료 제공 여부, 전국적 도달 범위(전통적으로 인구의 약 95% 이상), 그리고 합리적·공정한 권리 거래 기회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이처럼 영국 제도의 특징은 보편적 시청권을 단순한 선언적 권리로 두지 않고, 규제기관에 의한 권리 계약의 유효성 판단과 중계방송에 대한 동의 절차를 직접 관장하도록 했다는 점에 있다.

둘째, 호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일반적으로 안티사이포닝(anti-siphoning) 제도로 불리는데, 방송서비스법(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유료 플랫폼이 주요 스포츠 중계권을 선점하여 무료 지상파방송을 배제하는 현상을 방지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즉, 호주의 안티사이포닝 제도는 보편적 시청권을 권리 취득 단계의 ‘기회 보장’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안티사이포닝 대상 행사 목록(anti-siphoning list)은 문화·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연방 장관이 입법형 행정도구로 정한다. 안티사이포닝 목록에 있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무료 지상파방송사가 먼저 중계권을 취득할 기회를 가져야 하고, 그 이전에는 유료 방송사업자나 일부 서비스 제공자가 중계권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구조이다. 즉, 무료 지상파방송사(FTA)는 해당 이벤트의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이 제도가 “무료 중계를 반드시 보장한다”거나 “지상파가 반드시 권리를 취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권리 취득과 편성은 여전히 시장의 상업적 협상 영역에 속하며, 안티사이포닝은 그 협상의 출발 조건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그렇다고 지상파방송이 무제한적인 협상 우선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일정 기간 안에 중계권 획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통상, 보호 대상 이벤트는 개최 약 26주 전 안티사이포닝 목록에서 자동으로 제외(automatic delisting)되는데, 이 시점 이후에는 유료 서비스도 자유롭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 구조는 시장의 역동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접근권을 최소한으로 담보하려는 절충적 설계로 평가된다.

최근 호주의 안티사이포닝 제도는 2024년 개정법을 통해 중대한 변화를 겪었다. 개정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4)은 안티사이포닝 규정을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대상 이벤트 목록도 개정하였다.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안티사이포닝 제도의 규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론상 무료 지상파방송보다 먼저 디지털 전용 권리를 사 갈 수 있는 규제 공백이 존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안티사이포닝의 권리 취득 제한 대상에 온라인 스트리밍·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하여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제공자(media content service provider)'로 확장시켰다. 즉, 안티사이포닝 목록 이벤트에 대해, 무료 지상파방송사가 '방송서비스로 중계할 권리'를 가질 때까지, 스트리밍·구독TV 등 미디어콘텐츠 서비스는 '텔레비전 중계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커버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또한, 2024년 말부터 시행된 새로운 안티사이포닝 목록에는 여성 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보호가 미약했던 이벤트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유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의 급격한 이동이 보편적 시청권의 실질을 잠식하고 있다는 정책적 인식에 대한 대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독일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연방 단일 법률이 아니라, 각 주(Länder)가 체결한 주간 미디어협약(Medienstaatsvertrag, MStV)에 의해 규율된다. 이 협약은 독일 미디어 규제의 기본 헌장에 해당하며, 그 안에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Großereignisse)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독일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제도의 안정성과 경직성에 있다.

이 협약은 올림픽 경기, FIFA 월드컵과 UEFA 유럽선수권대회의 독일 대표팀 경기, 주요 결승전 등 특정 이벤트를 열거하여 규정한다. 이러한 이벤트는 유료 암호화 방송이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만 제공될 수 없으며, 가구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시청자가 실제로 접근가능한 무료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MStV에 명시된 Großereignisse 목록은 모든 주의 합의에 따른 주간 협약 개정을 통해서만 변경될 수 있다. 이는 행정부나 규제기관이 단독으로 목록을 조정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정치적·연방적 합의가 없는 한 목록의 변화가 극히 어렵다. 그 결과 독일 제도는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은 매우 높은 반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능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프랑스는 방송을 문화적·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는 전통이 강한 국가로서,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비교적 일찍부터 발전시켜 왔다. 프랑스의 '중요 이벤트' 제도는 2004년 제정된 데크레(Décret n°2004-1392)를 통해 구체화되었다. 행정입법(데크레)을 통해 지정한 중대한 이벤트(Événements d'importance majeure)가 유료 독점서비스로 제공되어 국민의 상당수가 접근에서 배제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목록에는 올림픽, FIFA 월드컵, 프랑스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주요 경기 등을 포함하여 40여 개가 넘는 이벤트가 포함되어 있다. 규제기관인 ARCOM이 이 제도의 집행과 해석을 담당한다.

최근 프랑스 제도의 중요한 변화는 2024년 7월 5일자 대통령령(n°2024-699)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은 기존 21개였던 중요 이벤트 목록을 40여 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여성 스포츠와 장애인 스포츠, 그리고 새로운 종목들을 다수 포함시켰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을 단순한 시청률 중심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대표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권리로 재정의하려는 정책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2. 시사점

가. 온라인·스트리밍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제도 개선 필요

이들 주요 국가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살펴보면, 여전히 무료 지상파방송이나 공영방송(PSB)이 보편적 시청을 제공하는 중심매체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스트리밍 이용 증가가 가져온 방송 환경의 변화에 따라, 스트리밍 미디어를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포섭할지를 놓고 각국이 고민 중이다. 주요 스포츠 이벤트 중계가 유료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이전함으로써 사실상 국민 다수가 배제되는 현상이 현실화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과 호주는 이 문제에 대해 비교적 직접적인 해법을 택해,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와 디지털 중계권을 규제 범주에 포함시킨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송 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우선, 영국의 변화는 매우 혁신적인데, 미디어법(Media Act 2024) 제정을 통해 기존 방송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스트리밍과 인터넷 기반 서비스까지 명시적으로 확장하고, 공영방송(PSB)의 방송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도 보편적 시청권 보장 수단에 포함하였다. 영국의 사례는 공공 서비스 미디어가 미래에 추구해야 할 중요

한 핵심 가치로 TV와 온라인을 통한 보편적 제공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온라인·스트리밍 미디어 시대의 도래에 따라 TV만으로는 보편적 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게 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호주는 온라인·스트리밍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디지털 중계권 획득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즉, 안티사이포닝 제도의 권리 취득 제한 대상에 온라인 스트리밍·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를 추가하여, 안티사이포닝 목록의 이벤트는 FTA가 방송권을 가질 때까지 스트리밍 등 미디어콘텐츠 서비스가 텔레비전 중계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커버할 권리(디지털중계권 등)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여전히 방송 중심의 규제이다. 독일의 주간 미디어협약(MStV)의 Großereignisse 관련 조항(§13)에서는 중요 이벤트가 유료·암호화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대중 접근이 배제되는 상황을 방지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 조약은 2020년 개정을 통해 '미디어콘텐츠의 중개자'를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여전히 "방송"을 전통적 방송 개념인 "선형 정보 및 통신 서비스"로 정의하며, 일정에 따라 동시 수신을 위해 제공되는 영상 또는 음성 형태의 보도·편집된 프로그램으로 규정한다(§2 Abs. 1 MStV). 따라서 온라인 스트리밍이 'television service'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협약은 '방송(Broadcasting)', '방송형 텔레미디어(Broadcast-like telemedia)'(온디맨드 서비스), '미디어 플랫폼(Media platforms)',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s)', '미디어 중개자(Media intermediaries)', '비디오 공유 서비스(Video sharing services)'를 각각 별도로 정의하고(§2 Abs. 2), 각기 다른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전통적 텔레비전 방송서비스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도 불구하고, 독일 공영방송사들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2024 파리올림픽 기간에 공영방송 ARD와 ZDF 모두 무료 스트리밍을 제공했으며, ZDF의 경우 로그인조차 필요하지 않았다(Back & Sung, 2024. 8. 13). ARD와 ZDF는 약 240시간의 선형 채널 생중계와 함께 약 1,500시간의 스트리밍 콘텐츠를 제공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매일 최대 10개의 동시 라이브 스트림이 제공되었다(Lonsdale, 2024. 8. 08.). 이는 법적 의무의 산물이라기보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서비스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보편적 시청권 제도가 텔레비전 방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사

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는 유료·폐쇄적 서비스에 의해 독점적으로 제공될 수 없으며, 그러한 독점적 제공은 무료로 접근가능한 서비스가 보장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령에서는 "service de télévision à accès libre (무료 접근 텔레비전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가 해당 이벤트를 자사 방송 채널과 동시에 공식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다. 일례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오랜 기간 동안 올림픽 중계의 주요 공영방송사로서 자리매김해 온 France Télévisions이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france.tv 플랫폼을 통해 올림픽 생중계와 리플레이를 무료로 제공했다(Gralon, 2024. 7. 23). 그러나 이러한 스트리밍 중계는 법적 의무 이행은 아니며,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 당시 스포츠 팬, 특히 특정 종목 경기를 좋아하는 팬들은 파리 2024 올림픽 기간 동안 다양한 경기를 중계하는 민영 스포츠 채널과 구독형 플랫폼에서도 원하는 콘텐츠를 찾을 수 있었다. 파리올림픽 경기가 유료방송(pay TV) 패키지인 Molotov, Orange TV 등과, 유료 스포츠채널 Eurosport의 유료스포츠 플레이어, 구독형 OTT인 맥스(Max)에서도 병행 중계되었기 때문이다(Serin, 2025. 9. 02). 유로스포트는 스포츠 전문 채널로, 현재 종목별로 특화된 9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Max 내 스포츠 섹션을 제공하고 있다.

디지털·스트리밍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각국의 사례처럼, 한국에서도 온라인·스트리밍 서비스와 디지털 중계권을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어떻게 포함시킬지를 검토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 한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 역시 지상파 우위의 미디어시장 구조에서 마련된 제도이므로, 국내·외의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주요 스포츠 중계가 OTT·유료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지상파 무료 중계 여부”만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향후 제도 개선에서는 무료 접근 가능성, 추가 요금이나 가입 장벽의 존재 여부, 보편적 도달 범위 등을 기준으로 플랫폼 중립적 보편적 시청권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나.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

한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명시적·체계적 규율이 상대

적으로 미흡한 상태에 놓여 있다. 주요 국제 스포츠이벤트 중계권은 거의 민간사업자 간의 상업적 거래 영역에 맡겨져 있으며, 보편적 접근권 보장은 편성 관행이나 사회적 비판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영국·호주·독일·프랑스는 각기 다른 법제 전통 속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을 권리 계약, 플랫폼 구조, 디지털 유통 환경 등과 결합하여 구체적으로 제도화해 왔다. 특히 영국은 보편적 시청권을 단순한 공익 선언이 아니라, 중계권 계약의 유효성과 규제기관의 동의(consent)를 직접 연결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Group A 이벤트의 경우, 특정 유료 서비스에 생중계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은 오프콤(Ofcom)의 동의 없이는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기 어렵다. 이는 보편적 시청권이 사후적 권리가 아니라, 사전적 계약 규율 장치로 기능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중계권 계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계약에 대해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국민관심행사 선정 기준의 명확화

미디어와 플랫폼의 다양화로 시청자의 관심이 분산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보편적 시청권 대상 행사 선정 기준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보편적 시청권 대상 행사를 명시적 목록(list)과 공식 절차로 관리하며, 대상 행사의 선정기준도 비교적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첫째, 영국에서 A그룹으로 지정되기 위한 법적 판단기준은 해당 이벤트가 영국 사회 전체에 중대한 문화적·사회적 의미를 가지는지, 합리적인 시청자가 해당 이벤트를 유료장벽 없이 또는 합리적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시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지, 해당 이벤트가 전 국민에게 접근가능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프랑스의 경우 국민관심행사를 “다수가 보는 이벤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드시 공유되어야 할 경험으로 정의하고 그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우선, 특정 스포츠 팬층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적 공명(general resonance)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 이벤트가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는 문화적 중

요성을 지녀야 한다. 또한, 국가대표팀의 참가 여부나 국가적 상징성이 고려되며, 해당 이벤트의 무료 지상파방송을 통한 중계 관행 및 시청자의 기대, 그리고 상업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의미와 접근권 보호를 이벤트 선정 기준으로 하고 있다.

셋째, 호주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이 국민적 관심 행사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판단 기준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 행사의 유지 및 제외 가이드라인 (use-it-or-lose-it guidelines)’이 제시되어 있다. 실제로 2017년 국민적 관심행사 목록 조정 검토 당시 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국가적 중요성’ 여부 등을 핵심 판단 기준으로 활용한 바 있다.

〈표 3-16〉 주요 국가의 국민적 관심행사 선정 기준

국가	선정 기준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사회 전체에 대한 문화적·사회적 의미 여부 - 합리적 조건으로 접근 가능한 서비스에서의 시청 가능성에 대한 시청자의 기대 - 전 국민에게 접근 가능해야 하는 성격의 이벤트인지 여부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목록 유지/제외 가이드라인 존재 · 지상파 방송사의 중계권 취득 이력 및 중계 내역 · 지상파방송 중계시 시청자 규모 · 국가적 중요성 등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전반에 걸친 일반적 공명 존재 여부 - 국가의 문화적 정체성이나 사회적 결속에 기여하는 문화적 중요성 - 국가대표팀의 참가 여부나 국가적 상징성 - 무료 지상파방송을 통한 중계 관행 및 시청자의 기대 - 상업적 가치보다는 사회적 의미(성평등, 포용성 등)

이에 비해 한국은 어떤 이벤트가 ‘국민적 관심 행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정의와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 방송법 제76조 제2항에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보편적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 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국민관심행사 등)를 고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고만 정하고 있어 무엇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행사인지 모호하다. 향후 사회적·문화적 중요성,

국가 대표성, 국민적 접근 필요성과 같은 선정 기준을 시행령 수준에서 명문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국민관심행사 기준 개선을 위한 설문 조사

제1절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대국민 인식 및 선호도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제2016-14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민관심행사 종류와 종목 등에 대해 대국민 인식 및 선호도 조사(이하,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를 통해 현재 고시 내용과 실제 국민관심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민의 관심 수준 반영 여부, 국민관심행사의 종류와 종목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정이 필요한 종목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디지털미디어 환경이 보편화되면서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스포츠 경기 시청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중계 및 편성 만족도 등 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디지털미디어 환경에 걸맞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설문조사 설계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도 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도 조사는 고시 규정에 따라 3년 단위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설문지는 조사의 연속성 차원에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전에 조사했던 설문지를 바탕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설문 문항의 적절성, 질문 난이도 등을 설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했다.

본 조사는 2025년 11월 13일(목)부터 21일(금)까지 약 9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성/연령/지역별 할당표본추출을 바탕으로 인구 구성비에 맞추어 전국 20~69세 일반 국민 1,510명을 대상으로 표본 비례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표 4_1>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설계

구분	내용
모집단	전국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조사 지역	전국 17개 시도
자료 수집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표본추출 방법	성/연령/지역별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을 바탕으로 인구 구성비에 맞추어 표본 비례할당
표집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5년 11월) 기준 - 조사 기관 보유 165만 패널을 표집틀로 활용
표본크기	1,510명
설문기간	2025년 11월 13일 ~ 11월 21일

2) 설문 항목 구성

설문 항목은 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와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경기를 얼마나 시청하고 있는지 스포츠 경기별로 물어보았다. 또 OTT 및 온라인을 통한 미디어 이용이 확산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를 OTT 및 온라인으로 시청하는데 대한 의견 및 국민관심행사 중계 편성에 대한 만족 정도를 세부 질문으로 구성했다.

<표 4_2> 대국민 인식도 조사 개요

주요 조사 항목	세부 내용(안)
국민관심행사 콘텐츠 이용행태	○ 국민관심행사 행사별/종목별 콘텐츠 이용 정도 ○ 국민관심행사 행사별/종목별 콘텐츠 이용 방식 ○ 국민관심행사 행사별/종목별 콘텐츠 이용 매체
국민관심행사 인식	○ 국민관심행사별/종목별 관심도 ○ 국민관심행사에 패럴림픽을 추가 지정에 대한 의견
보편적 시청권 인식	○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한 인지도 여부 ○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한 의견
국민관심행사 편성 만족도	○ 국민관심행사 중계 및 편성 만족도 (인기종목 중복편성, 비인기종목 미편성 등)
응답자 특성	○ 인구통계학적 응답자 특성 (성별, 연령, 학력, 수입, 지역 등)

2. 설문조사 결과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도 조사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아래 <표 4_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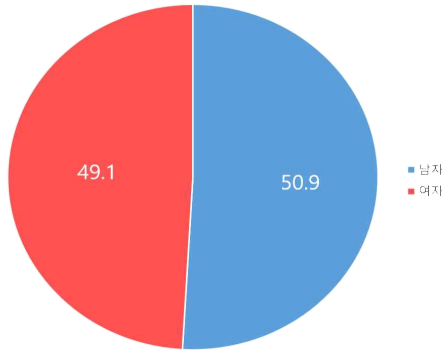
<표 4_3>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연령	빈도(명)	비율(%)	합계 (빈도/비율)
성별	남자	769	50.9	1,510명/100%
	여자	741	49.1	
연령	20~29세	239	15.8	1,510명/100%
	30~39세	276	18.3	
	40~49세	313	20.7	
	50~59세	357	23.6	
	60~69세	325	21.5	
학력	고졸이하	374	24.7	1,510명/100%
	대학교 재학/졸업	975	64.6	
	대학원 재학/졸업	161	10.7	
소득수준	200만원미만	121	8	1,510명/100%
	월 200-399만원	492	32.5	
	월 400-599만원	431	28.6	
	월 600-799만원	261	17.3	
	월 800만원이상	205	13.6	
지역	서울	282	18.7	1,510명/100%
	부산	95	6.3	
	대구	68	4.5	
	인천	91	6	
	광주	42	2.8	
	대전	42	2.8	
	울산	33	2.2	
	경기	412	27.3	
	강원	43	2.8	
	충북	46	3	
	충남(세종 포함)	74	4.9	
	전북	50	3.3	
	전남	49	3.2	
	경북	72	4.8	
	경남	93	6.2	
제주	18	1.2		

가. 성별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도 조사 응답자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은 전체 1,510명 중에 50.9%(769명), 여성은 49.1%(741명)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에 등록된 주민등록 통계의 성별 인구수 기준과 거의 유사한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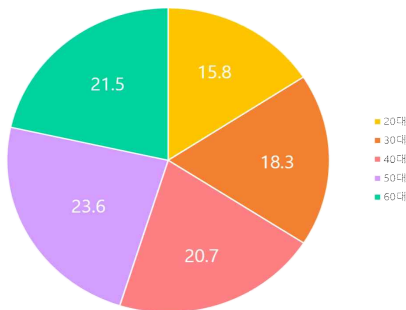
[그림 4_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성별



나. 연령

응답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50대가 23.6%(357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21.5%(325명), 40대 20.7%(313명), 30대 18.3%(276명), 20대 15.8%(239명) 순으로 20대가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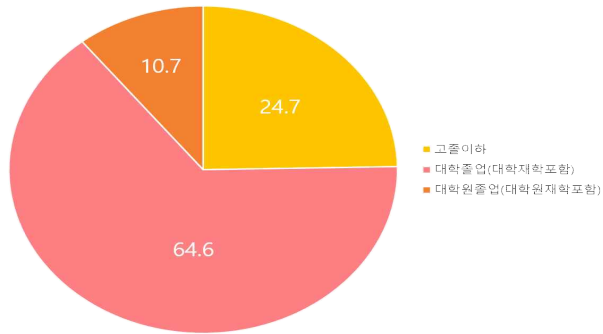
[그림 4_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연령



다. 최종 학력

응답자들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대학 졸업(대학재학 포함)' 응답자가 64.6%(975명), '대학원 졸업(대학원 재학 포함)'이 10.7%로 75.3%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이하' 응답자는 24.7%(374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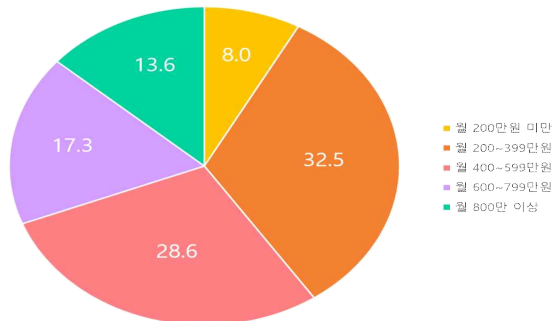
[그림 4_3]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최종학력



라. 소득수준

응답자의 소득수준별 분포를 보면, '월 200~399만원'이 32.5%(492명)로 가장 많았으나 전체적으로 '월 4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는 응답자는 59.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가구소득이 '월 200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0% (121명)에 불과했다.

[그림 4_4]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소득수준



2)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인식

본 설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일반 국민들이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를 퀴즈 형식을 빌어 질의하였다. 아래와 같이 보편적 시청권 제도를 설명하는 내용을 명시한 뒤, 그에 대한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체육경기대회(‘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라는 진술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64.0%(967명)로, 10명 중 약 6명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에 대해 알고 있었다. 2022년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질문에 단 19.9%만이 그렇다고 대답한 것에 비해 약 3배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금번 조사에서는 질문 자체에 보편적 시청권 제도 관련 설명을 삽입하는 등 차이가 있었음을 감안해야 하나, 3년 사이 쿠팡플레이의 축구 A 매치, 티빙의 프로야구 온라인 독점 중계 등 이슈로 인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수준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다. 즉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일정 수준 이상(경기에 따라 전체 가구수의 75% 이상 또는 90% 이상)의 가시청 가구⁷⁾ 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질문인데,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는 44.6%로 떨어져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니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 않았다.

다만 2022년 당시 “국민관심행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시청 가구수를 확보한 방송사만 중계할 수 있다.”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35.7%였음을 감안하면, 이 또한 과거에 비해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이 역시 질문의 형태가 달랐던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7) ‘국민 전체가구 중 방송을 통해 해당 경기 및 행사를 시청할 수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문지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였음

<표 4_4> 보편적 시청권 제도 관련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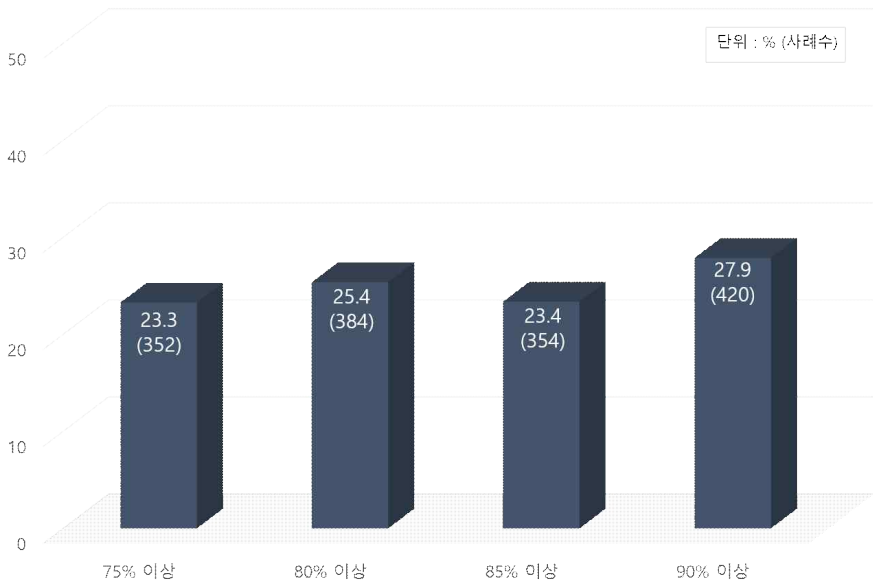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조사 년도	세부질문	그렇다	아니다
보편적 시청권 제도 개념	2022	보편적시청권 제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19.9 (431)	80.1 (1,735)
	2025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체육경기대회(‘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64.0 (967)	36.0 (543)
가시청 가구 수 확보	2022	국민관심행사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가시청 가구수를 확보한 방송사만 중계할 수 있다.	35.7 (774)	64.3 (1,392)
	2025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일정 수준 이상(경기에 따라 전체 가구수의 75% 이상 또는 90% 이상)의 가시청 가구수를 확보해야 한다.	44.6 (674)	55.4 (836)

이어서, 현 제도의 가시청 가구 수 관련 기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가령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법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등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가능한 방송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하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75%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방송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 현행 기준을 제시한 후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와 같은 국민관심행사 그리고 이보다는 국민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시안게임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 그리고 WBC와 같은 스포츠 경기 중계의 경우 몇 % 이상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범위가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사결과,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등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7.9%(420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⁸⁾. ‘85%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3.4%(354명), ‘80%이상’은 25.4%(384명), 마지막으로 ‘75%이상’이면 된다는 응답은 23.3%(352명)로 나왔다.

[그림 4_5]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가시청 가구 기준 의견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을수록 국민관심행사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가령 현 90% 기준에 동의한 응답

8) 관련 설문에서는 “법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축구 등의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방송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려면 몇 % 이상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로 문항으로 질문하고, 75%이상, 80%이상, 85%이상, 90%이상, 95%이상 등 5개 선택지로 답을 받았다. 조사결과, ‘90%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21.3%, 95%이상은 6.6%로 90%이상+95%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많았다. 참고로 75%이상 23.3%, 80%이상 25.4%, 85%이상 23.4%로 나왔다.

자의 경우 60대는 20.9%에 불과한 데 반해, 20대는 33.1%, 30대는 31.9%, 40대는 28.1%, 50대는 27.1%로 국민관심 스포츠경기 중계 기준 90%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전체적으로 60대를 제외하면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 비율이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_5> 연령에 따른 올림픽과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가시청 가구 기준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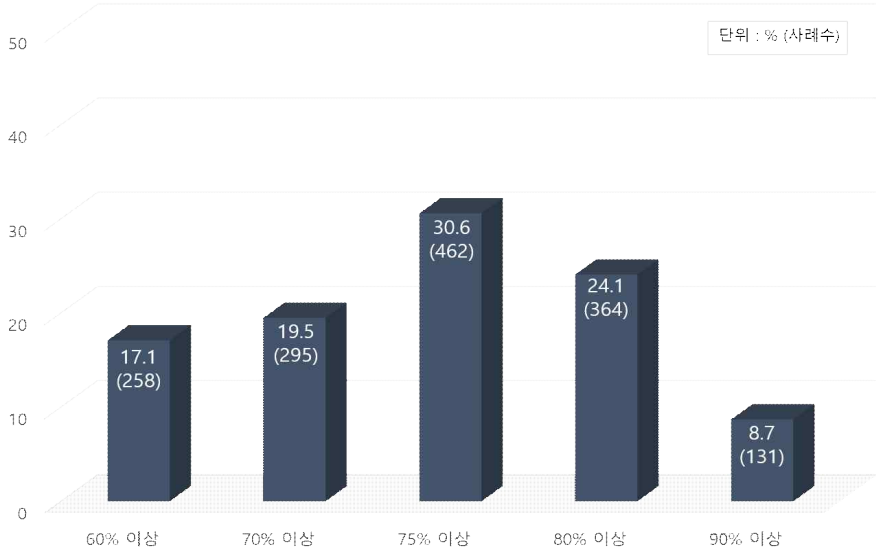
	연령대별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5% 이상	19.2 (46)	21.4 (59)	24.6 (77)	26.1 (93)	23.7 (77)
80% 이상	23.0 (55)	23.6 (65)	21.7 (68)	26.1 (93)	31.7 (103)
85% 이상	24.7 (59)	23.2 (64)	25.6 (80)	20.7 (74)	23.7 (77)
90% 이상	33.1 (79)	31.9 (88)	28.1 (88)	27.1 (97)	20.9 (66)
전체	100.0 (239)	100.0 (276)	100.0 (313)	100.0 (357)	100.0 (325)

* 카이값=30.612**

한편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의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75%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방송 채널에서 중계해야 한다. 이 규정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은 아시안게임이나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 매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와 같은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몇 % 이상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현 규정인 '75% 이상'이라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75% 이상', '80% 이상', '90% 이상'을 모두 합하면 63.4%로 더 높아진다. '70% 이상' 기준점에 동의한 응답은 19.5%, '60% 이상' 기준점에 동의한 응답은

17.1%로 높지 않았다.

[그림 4_6] 아시안게임, 축구A매치 등 국민관심행사 가시청 가구 기준 의견



3) 국민관심행사 콘텐츠 이용행태

국민관심행사 스포츠경기 11개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시청하는지를 5점 척도로 질문했다. <표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 국민관심행사 가운데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스포츠 경기는 하계 올림픽(M=3.5), 동계 올림픽(M=3.35), FIFA성인 남자 월드컵(M=3.34), 하계 아시안게임(M=3.04), 동계 아시안게임(M=3.0) 뿐이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3점 미만으로 시청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5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④)’와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⑤)’를 합해 스포츠 경기를 시청한 비율을 계산한 결과, 하계 올림픽은 국민의 56.2%가 적극적으로 시청한 것으로 나왔고, FIFA 성인 남자 월드컵(50.5%)과 동계 올림픽(48.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적극적 시청 경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스포츠 경기는 국가대표 평가전(35.6%), 하계 아시안게임(35.4%), 동계 아시안게임(35.1%)으로 나타났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를 적극적으로 시청한 비율은 30.6%,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은 28.4%로 10명중 약 3명 정도의 국민만이 이들 스포츠 경기를 적극적으로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FIFA 성인 여자 월드컵(12.2%)과 패럴림픽(8.6%)은 10명 중 한 명 정도만이 적극적 시청을 했다고 응답했다. FIFA 성인 여자 월드컵은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되었지만 국민의 관심이 낮아 실제 시청비율은 미미한 수준이고, 패럴림픽은 아직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일부에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경기 시청 정도를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⁹⁾ 동계 올림픽은 5점 만점으로 보면 2019년에 평균 3.29점에서 2025년 3.35점으로 시청이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와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에 응답한 비율의 합은 2019년 50.1%에서 2025년 48.6%로 소폭 떨어졌다. 하지만 '전혀 시청하지 않거나', '거의 시청하지 않는' 비율은 2019년 22.9%에서 2025년 20.8%로 하락해 전체적으로는 동계 올림픽에 대한 시청이 줄어들지는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하계 올림픽은 5점 척도로 보나 시청비율로 보나 시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는 응답이 2019년 52.0%에서 2025년 56.2%로 4.2%포인트 늘었고,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2019년 21.0%에서 2025년 18.4%로 감소했다.

월드컵의 경우, 성인 남자 월드컵 경기는 2019년에 비해 2025년 시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성인 여자 월드컵 경기는 2019년에 비해 2025년 시청이 소폭 늘어났다. 성인 남자 월드컵 경기의 경우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시청하는 비율이 2019년 62.2%에서 2025년 50.5%로 큰 폭으로 감소한데 반해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시청하는 비율은 19.2%에서 26.4%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반면 성인 여자 월드컵 경기의 시청정도는 2019년 5점 만점에 2.08점에서 2025년 2.21점으로 소폭 증가했다. 시청비율로 봐도 2019년에 비해 2025년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는 응답(9.8%→12.2%)은 소폭 늘고,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66.4%→61.8%)은 소폭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관심행사 중에서 여자 월드컵은 '전혀, 혹은 거의 시청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9) 국민관심행사 스포츠경기 시청정도에 대한 질문은 2022년에는 '실시간 시청'에 한정해 조사하여 2019년 및 2025년 조사결과와 대조 불가

아시안게임의 경우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9년 대비 2025년 시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왔으나 하계 아시안게임은 2019년(3.0점)과 2025년(3.04) 시청정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 5점 만점으로 측정한 시청정도로 보면 동계 아시안게임은 2019년 2.86점으로 3점 미만으로 나왔는데, 2025년에는 3.0점으로 상승했다. 또한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와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의 응답은 2019년 30.3%에서 2025년 35.1%로 약 5%포인트 증가했다.

WBC도 2019년(2.72점)대비 2025년(2.76점) 시청정도에서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 성인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에 대한 시청은 비율적으로도, 평균점으로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도 2019년에는 41.2%가 적극적으로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나 2025년에는 28.4%로 감소했고,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경기도 2019년 25.1%에서, 2025년에는 19.3%로 떨어졌다. 국가대표 평가전(친선경기 포함)도 2019년 조사에서는 38.8%에서, 2025년에는 35.6%로 하락했다. 다만 성인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들 중에서는 국가대표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경기가 시청 감소가 가장 적은 경기였다. 성인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중 2019년 대비 2025년 시청정도가 비교적 크게 하락한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과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경기의 경우 향후 시청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민관심행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국민관심행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패럴림픽의 시청정도는 5점 만점 기준 2019년(1.88) 대비 2025년(1.91) 소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적극적 시청비율도 2019(6.0%)대비 2025년(8.6%)로 소폭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표 4_6> 국민관심행사 스포츠경기 시청정도 (2019, 2025)

(단위: %, 명)

경기 종목			시청정도			평균 (5점 만점)
			전혀, 혹은 거의 시청 하지 않는다.	보통	많이, 매우많이 시청하는 편이다	
			①+②	③	④+⑤	
올림픽	동계 올림픽	2019	22.9 (458)	27.0 (540)	50.1 (1002)	3.29
		2025	20.8 (314)	30.6 (462)	48.6 (734)	3.35
	하계 올림픽	2019	21.0 (420)	27.0 (539)	52.0 (1041)	3.39
		2025	18.4 (279)	25.4 (383)	56.2 (848)	3.50
월드컵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2019	19.2 (383)	18.7 (374)	62.2 (1243)	3.63
		2025	26.4 (398)	23.1 (349)	50.5 (763)	3.34
	FIFA 성인 여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2019	66.4 (1327)	23.9 (478)	9.8 (195)	2.08
		2025	61.8 (932)	26.1 (394)	12.2 (184)	2.21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게임	2019	35.7 (714)	34.1 (682)	30.3 (604)	2.86
		2025	32.8 (496)	32.1 (484)	35.1 (530)	3.00
	하계 아시안게임	2019	31.1 (621)	33.3 (666)	35.7 (713)	3.00
		2025	30.4 (458)	34.2 (517)	35.4 (535)	3.04
국제 야구 대회	WBC (월드베이스볼클 래식)	2019	44.1 (881)	24.0 (480)	32.0 (639)	2.72
		2025	43.5 (658)	25.8 (390)	30.6 (462)	2.76
성인	AFC	2019	32.7	26.2	41.2	3.05

남자 축구 국가 대표 A매치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653)	(524)	(823)	
		2025	45.4 (686)	26.2 (395)	28.4 (429)	2.69
	EAFF (동아시아 축구연맹) 동아시아컵	2019	45.4 (907)	29.6 (592)	25.1 (501)	2.63
		2025	53.3 (804)	27.5 (415)	19.3 (291)	2.41
	국가대표 평가전 (친선경기 포함)	2019	32.7 (653)	28.6 (572)	38.8 (775)	3.03
		2025	38.5 (581)	25.9 (391)	35.6 (538)	2.88
패럴 림픽	동·하계 패럴림픽 (장애인올림픽)	2019	74.2 (1,484)	19.9 (397)	6.0 (119)	1.88
		2025	72.9 (1,101)	18.5 (279)	8.6 (130)	1.91

이용행태와 관련한 두 번째 질문은 국민관심행사의 시청 행태와 관련된 것이다.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했는지, ‘경기 종료 후 다시보기’를 통해 시청했는지 아니면 ‘하이라이트’로 시청했는지를 물어보았는데, 그 결과 하계 올림픽(52.7%), FIFA 성인 남자 월드컵(50.8%), 동계 올림픽(49.7%), 그리고 국가대표 평가전(44.2%)은 ‘실시간 시청’이 ‘하이라이트’보다 더 많았으나 그 외 종목들은 ‘하이라이트’ 시청이 더 많았다. ‘하이라이트’로 시청을 가장 많이 한 종목은 패럴림픽으로 63.7%가 하이라이트로 시청했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FIFA 성인 여자 월드컵(61.3%),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52.8%), AFC(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45.1%)의 순으로 나왔다.

〈표 4_7〉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 시청방식

(단위: %, 명)

경기 종목(중복응답)		실시간 생방송	경기 종료 후 전체 다시보기	하이 라이트
올림픽	동계 올림픽	49.7 (874)	13.0 (229)	37.3 (656)
	하계 올림픽	52.7 (929)	14.2 (251)	33.1 (583)
월드컵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50.8 (810)	14.8 (237)	34.4 (549)
	FIFA 성인 여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19.1 (207)	19.6 (212)	61.3 (665)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게임	36.6 (572)	18.2 (284)	45.2 (707)
	하계 아시안게임	40.3 (639)	17.6 (279)	42.1 (668)
국제야구 대회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38.2 (519)	18.1 (246)	43.7 (593)
성인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35.3 (453)	19.6 (252)	45.1 (579)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안컵	26.2 (299)	20.9 (239)	52.8 (603)
	국가대표 평가전 (친선경기 포함)	44.2 (610)	18.2 (251)	37.6 (519)

다음으로, 생방송으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때 주로 어떤 매체를 이용했는지 질의했다. 분석결과, 생방송으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경우 대부분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특히 국민관심행사 중에서도 시청비율이 높은 인기 스포츠는 10명 중 8~9명이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비전을 통한 스포츠 경기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은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과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안컵으로 각각 76.6%와 74.2%이었으며, 패럴림픽은 텔레비전으로 시청한다는 비율이 67.1%로 가장 낮게 나왔다.

<표 4_8> 국민 관심 스포츠 경기 생방송 시청 매체

(단위: %, 명)

경기 종목 (n=1,510)		TV	PC,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
올림픽	동계 올림픽	90.4 (790)	9.6 (84)
	하계 올림픽	87.5 (813)	12.5 (116)
월드컵	FIFA성인 남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84.7 (686)	15.3 (124)
	FIFA성인 여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82.1 (170)	17.9 (37)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게임	87.9 (503)	12.1 (69)
	하계 아시안게임	83.1 (531)	16.9 (108)
국제야구 대회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83.0 (431)	17.0 (88)
성인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AFC(아시아축구연맹)아시안컵	76.6 (347)	23.4 (106)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74.2 (222)	25.8 (77)
	국가대표 평가전 (친선경기 포함)	88.2 (538)	11.8 (72)
패럴림픽	동·하계 장애인올림픽	67.1 (96)	32.9 (47)

한편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과 같은 인기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때 인기 종목 위주로 시청하는지 아니면 인기 종목과 비인기 종목을 고려하지 않고 시청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10명 중 6~7명은 인기종목 위주로 시청하는 편이라고 응답했다. 인기종목 위주로 시청한다는 응답은 동계 아시안게임 69.7%, 하계 아시안게임 67.7%, 동계 올림픽 66.3%, 하계 올림픽은 63.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기/비인기 종목 고려없이 시청한다는 응답은 올림픽은 30.1~33.0%, 아시안게임은 21.7~23.6%로 2~3명 정도는 인기/비인기 종목 가리지 않고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_9〉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 인기 VS 비인기 종목 위주의 시청여부

(단위: %, 명)

경기 종목 (n=1,510)		인기 종목 위주로 시청	인기/비인기 종목 고려없이 시청	시청하지 않았다
올림픽	하계 올림픽 (2024 파리)	63.3 (956)	33.0 (499)	3.6 (55)
	동계 올림픽 (2022 베이징)	66.3 (1,001)	30.1 (455)	3.6 (54)
아시안 게임	하계 아시안게임 (2022 항저우)	67.7 (1,022)	23.6 (357)	8.7 (131)
	동계 아시안게임 (2025 하얼빈)	69.7 (1,053)	21.7 (327)	8.6 (130)

4)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관심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중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가령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올림픽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4.11점으로 높은 관심도를 보였으나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는 2.38점으로 3점 미만으로 나왔다. 월드컵 경기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월드컵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5점 만점에 4.17점이나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경기에 대한 관심도는 2.57로 떨어졌다. 국민 관심도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아시안게임이나 국제 야구대회(WBC), 국가대표 A매치 모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우에는 관심도가 높았지만,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심도가 떨어지는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은 2022년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에 대해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우와 출전하지 않는 경우로 나눠 국민 관심도를 물어보았다.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우 국민 관심도는 5점 만점에 2.87로,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경우는 1.97로 더 낮아졌다.

<표 4_10>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기에 대한 관심도

(단위: %, 명)

경기종목	관심 없다 (①+②)	보통 (③)	관심 있다 (④+⑤)	평균 (5점만 점)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올림픽	5.6 (84)	14.2 (215)	80.2 (1,211)	4.11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올림픽	56.0 (846)	31.5 (475)	12.5 (189)	2.38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월드컵	7.0 (106)	12.9 (195)	80.1 (1,209)	4.17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월드컵	47.9 (724)	30.5 (460)	21.6 (326)	2.57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9.4 (142)	20.1 (304)	70.5 (1,064)	3.89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아시안게임	62.8 (948)	25.3 (382)	11.9 (180)	2.23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야구대회(WBC)	17.0 (256)	24.6 (372)	58.4 (882)	3.63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국제야구대회(WBC)	59.9 (904)	26.2 (395)	14.0 (211)	2.26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성인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14.9 (225)	20.7 (312)	64.4 (973)	3.74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성인 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58.2 (879)	27.4 (413)	14.4 (218)	2.28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패럴림픽	37.0 (558)	32.5 (490)	30.6 (462)	2.87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패럴림픽	70.0 (1,057)	21.9 (331)	8.1 (122)	1.97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중에서 유지되거나 혹은 제외되어야 하는 종목에 대한 인식을 7

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7점 척도의 경우 4점을 중심으로 그 이상이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4점 미만이면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단 국민관심행사 전 종목이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FIFA 성인 남자 월드컵이 5.4점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월드컵은 5.4점, 아시안게임은 5.1점, FIFA 성인여자 월드컵은 4.93점을 받았다.

〈표 4_11〉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 중 유지 혹은 제외되어야 하는 종목에 대한 의견

경기 종목 (n=1,510)		평균 (7점척도)
올림픽	동계 올림픽	5.67
	하계 올림픽	5.75
월드컵	FIFA성인 남자 월드컵(지역예선 포함)	5.51
	FIFA성인 여자 월드컵(지역예선 포함)	4.93
아시안 게임	동계 아시안게임	5.41
	하계 아시안게임	5.44
국제야구대회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5.09
성인남자축구 국가대표 A매치	AFC(아시아축구연맹)아시안컵	5.05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4.57
	국가대표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5.1

5)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패럴림픽은 현재 국민관심행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향후 국민관심행사에 패럴림픽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5점 척도로 보면 3.6점, 비율로 보면 58.2%가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을 나타냈다. 즉 국민 10명 중 6명이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패럴림픽

을 국민관심행사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6%에 불과했다.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지만, 패럴림픽의 시청정도는 5점 만점에 1.91점으로 '거의 시청하지 않는 수준'이다. 이를 비율로 보기 위해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와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를 합산하면, 8.6%가 과거에 패럴림픽을 적극적으로 시청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패럴림픽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 '적게 시청하는 편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26.1%,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18.5%로 국민의 절반정도는 패럴림픽 기간 동안에 장애인 올림픽을 시청한 경험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즉 적극적으로 패럴림픽을 시청한 사람들의 비율은 10명중 1명 정도이지만, 10명 중 4~5명은 적극적으로 시청하지는 않았지만 패럴림픽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표 4_12>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동의한다	5점만점 평균
2.9 (44)	9.7 (146)	29.3 (442)	41.7 (629)	16.5 (249)	3.6

<표 4_13> 패럴림픽 시청정도

(단위: %, 명)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적게 시청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	5점만점 평균
46.8 (707)	26.1 (394)	18.5 (279)	6.8 (103)	1.8 (27)	1.91

6) 국민관심행사 중계에 대한 의견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식에 대해서,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설문했다. 분석결과 두 가지 의견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먼저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3.42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에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는 3.47점으로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흥미로운 점은 2022년에도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3.34점)는 의견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3.40점)는 의견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2025년 응답과도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다. 두 문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한 것임에도 동의 정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 중계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방송사의 자율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은 것도 다른 한쪽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닌,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_14〉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식에 대한 의견

(단위:%, 명)

질문		동의하지 않는 편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	평균 (5점 만점)
		(①+②)	③	(④+⑤)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2022	21.5(466)	29.1(631)	49.4(1,069)	3.34
	2025	18.1(273)	32.5(490)	49.5(747)	3.42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중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2022	19.6(424)	29.7(644)	50.7(1,098)	3.40
	2025	16.9(255)	30.8(465)	52.3(790)	3.47

성,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령 나이가 많을수록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60대의 동의 정도는 5점 만점에 3.79점인데 반해 30대는 3.19로 동의 정도에서 차이가 컸다. 60대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3.79점인데 반해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3.34점으로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에 대한 중계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반대로 60대를 제외한 20대부터 59대까지의 연령대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M=3.51)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M=3.32)는 의견(M=3.32)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표 4_15〉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식 의견에 대한 연령별 일원변량 분석
(단위:5점만점 평균)

연령	빈도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 중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	
		평균(5점)	표준편차	평균(5점)	표준편차
20~29세	239	3.31	1.002	3.41	1.020
30~39세	276	3.19	1.021	3.51	0.936
40~49세	313	3.27	1.056	3.58	1.048
50~59세	357	3.46	0.946	3.52	1.015
60~69세	325	3.79	0.972	3.34	1.131
전체	1510	3.42	1.019	3.47	1.038
유의도		p=17.251***		p=2.638*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최근에는 스포츠 경기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가령 네이버나 유튜브 또는 구독형 OTT에서 시청하는 경향이 많아짐에 따라 “국민관심행사가 방송을 통해 중계되더라도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네이버, 유튜브 등) 또는 구독형 OTT(티빙, 쿠팡, 웨이브 등)에서 추가로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66.4%가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구독형 OTT에서도 추가로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이를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연령별로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즉 젊을수록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유료 OTT에서도 추가로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했다.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유료 OTT에서도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20대의 동의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9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30대(M=3.86), 40대(M=3.75)의 순으로 나타났다. 60대는 평균 3.62점으로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표 4_16〉 (방송채널에서 중계가 되는 경우에도) 온라인 스트리밍, 구독형 OTT의 국민관심행사 추가 시청 필요성에 대한 인식
(단위:5점만점)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20~29세	239	3.99	0.857
30~39세	276	3.86	0.862
40~49세	313	3.75	0.977
50~59세	357	3.64	0.883
60~69세	325	3.62	0.858
전체	1510	3.75	0.899
유의도		8.148***	

7) 국민관심행사 편성 만족도

국민관심 스포츠 중계 편성에 대한 의견을 4개 문항으로 물어보았다. 우선 “국민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이 질문에 대해 37.0%는 국민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응답했다. 또 35.2%는 그런 생각을 몇 번 했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27.7%만이 아쉬웠던 경험이 없었다고 응답했다. 전체적으로 “국민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는 문항은 5점 만점에 평균 3.11점을 받았는데, 이 수치는 국민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크게 아쉬워하는 않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2022년 조사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2025년 조사결과(3.11점)보다 다소 높았었다. 또한, 단 18.7%의 응답자만이 “국민의 관심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는 문항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해당 비율이 2022년 대비 2025년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반을 약간 넘긴 51.1%가 그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5점 만점 기준 3.43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복 편성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다소 아쉬웠다는 경험이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다만 2022년 조사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5점 만점에 3.63으로 2025년보다 높았고, 시청비율도 봐도 63.7%로 10명 중 6명이 중복편성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표 4_17> 국민관심행사 편성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질문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 (①+②)	그런 생각을 몇번 했다. (③)	그런 생각을 종종 했다 (④+⑤)	평균 (5점 만점)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중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	2022	19.7 (427)	31.7 (687)	48.6 (1,052)	3.37
	2025	27.7 (419)	35.2 (532)	37.0 (559)	3.11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	2022	15.5 (336)	20.8 (450)	63.7 (1,380)	3.63
	2025	21 (317)	27.9 (421)	51.1 (772)	3.43

세 번째 질문은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의 경우 여러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되는데, 이렇게 중계되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물어보았다. ‘동의한다’는 의견은 38.8%였고 특별히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응답자도 37.7%로 비슷하게 나왔다. 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23.5%로 나왔는데, 이를 5점 만점 평균으로 보면 3.17점으로 여러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방송되는 것을 방송중계 품질에서의 차별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성은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조사에서는 이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3.05점으로 2025년(3.17점)보다 낮았었다. 따라서 2022년과 2025년 조사결과를 비교해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를 보면 2022년 대비 2025년에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의 경우 여러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되는데, 이렇게 중계되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질문은 “올림픽, 월드컵 등은 1~2개 방송사에서만 중계하고 다른 방송채널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53.2%는

“올림픽, 월드컵 등은 1~2개 방송사에서만 중계하고 다른 방송채널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고, 14.5%는 그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도 3.51점으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2022년(3.57점) 조사결과와도 비슷한 수준이다.

<표 4_18> 국민관심행사 동시 중계에 대한 의견

(단위: %, 명)

질문		동의하지 않는 편 (①+②)	보통이다 (③)	동의하는 편 (④+⑤)	평균 (5점만 점)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개의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	2022	28.2 (610)	36.4 (789)	35.4 (767)	3.06
	2025	23.5 (355)	37.7 (569)	38.8 (586)	3.17
올림픽, 월드컵 등은 1~2개 방송사에서만 중계하고, 다른 방송채널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2022	13.1 (283)	30.1 (652)	56.8 (1,231)	3.57
	2025	14.5 (219)	32.3 (488)	53.2 (803)	3.51

편성관련 4개 문항 중에서 국민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문항은 “올림픽, 월드컵 등은 1~2개 방송사에서만 중계하고 다른 방송채널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M=3.51)와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M=3.43)는 두 문항이 3.4~3.5점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M=3.11)는 문항과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개의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M=3.17)는 두 문항은 3.1점대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설문 내용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또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조사에서는 2025년 조사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과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았고, 이 두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25년 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민관심행사 편성에 대한 의견을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았는데, 우선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은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는 것으로 남성(M=3.21)이 여성(M=3.00)보다 아쉬움을 더 피력했다. 그 외 편성 관련 다른 문항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_19>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에 대한 성별 차이 분석

(단위: 5점만점 평균)

성별	빈도	평균	표준편차	t값
남자	769	3.21	1.083	3.891***
여자	741	3.00	1.060	

반면 연령별 차이는 두드러졌다. 국민관심행사 편성에 대한 4개 질문 모두에 대해 연령별로 유의미한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는 의견에 대해 30대(M=3.16)와 40대(M=3.18)의 동의율이 평균(M=3.11)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이 문항은 5점 만점에 3.1점대로 높지 않아 국민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을 시청하지 못한 것이 크게 아쉽지는 않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표 4_20> 국민관심행사 중목 편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단위:5점만점 평균)

질문문항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중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	20~29세	239	3.02	1.167
	30~39세	276	3.16	1.089
	40~49세	313	3.18	1.082
	50~59세	357	3.10	1.033
	60~69세	325	3.07	1.040
	전체	1510	3.11	1.077
	F값			0.963*

* $p < .05$, ** $p < .01$, *** $p > .001$

중복편성과 관련해서는 두 개 문항으로 측정했는데, 하나는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는 문항이다. 이 두 문항은 동일한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질문한 것인데, 중복편성으로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왔다. 20대(M=3.21)와 30대(M=3.39)의 동의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낮았고, 40대(M=3.49), 50대(M=3.54), 60대(M=3.44)에서는 동의율이 다소 높아졌다. 그러나 5점 만점에 평균 3.43이라는 수치는 연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편함을 조금은 느꼈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관련하여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20대(M=3.46)와 40대(M=3.28)의 동의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았고, 반면 60대는 2.98점으로 중계방송 해설이 달라져도 차별성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요약하면,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하는 것을 방송중계의 차별성으로 인식하는 집단은 20대와 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시청층이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품질 차별성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60대가 국민관심행사를 여러 채널에서 중복 편성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전체적으로 봐도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율은 평균 3.43점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 개의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M=3.17)는 의견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중복편성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4_21> 국민관심행사 중복 편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단위:5점만점 평균)

질문문항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	20~29세	239	3.21	1.218
	30~39세	276	3.39	1.112
	40~49세	313	3.49	1.118
	50~59세	357	3.54	1.031
	60~69세	325	3.44	1.100
	전체	1510	3.43	1.114
	F값	3.591**		

* $p < .05$, ** $p < .01$, *** $p > .001$

<표 4_22> 국민관심행사 동시 편성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단위:5점만점 평균)

질문문항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개의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	20~29세	239	3.46	0.897
	30~39세	276	3.12	1.011
	40~49세	313	3.28	1.017
	50~59세	357	3.08	0.954
	60~69세	325	2.98	1.011
	전체	1510	3.17	0.994
	F값	10.372***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올림픽, 월드컵 등은 1~2개 방송사에서만 중계하고, 다른 방송 채널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동의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 문항에 대한 60대 동의율은 5점 만점에 3.77점으로 높게 나왔는데 반해 20대는 3.19로 60대와 20대간 의견의 차이가 컸다. 50대(M=3.68), 40대(M=3.45)도 다른 문항에 비해서는 높은 동의율을 보여주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4_23> 국민관심행사 편성 채널에 대한 연령별 차이 분석

(단위:5점만점 평균)

질문문항	연령	빈도	평균	표준편차
올림픽, 월드컵 등은 1~2개 방송사에서만 중계하고, 다른 방송채널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20~29세	239	3.19	1.011
	30~39세	276	3.33	1.003
	40~49세	313	3.45	1.018
	50~59세	357	3.68	0.959
	60~69세	325	3.77	0.923
	전체	1510	3.51	1.001
	F값	17.292***		

편성과 관련한 4개 설문은 편향되지 않는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진술문으로 구성해 동의 정도를 물어본 것이다. 네 문항에 대한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 편성과 관련해 성별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국민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다양한 올림픽 종목을 보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반면 연령별 차이는 두드러졌다.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60대에서 스포츠 중계를 중복 편성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20대는 동일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도 해설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이라는 의견을 보이며 60대와는 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그러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편성과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라 하더라도 모든 채널에서 중복해서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8) 스포츠 경기 시청패턴

스포츠는 다른 미디어콘텐츠에 비해 매니아층이 강한 장르이다. 스포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별도의 비용(OTT 구독료 등)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분석결과, 10명 중 3명은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OTT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국내·외 인기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유료 구독료 등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질문에서는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은 22.5%로 “현재 별도의 비용(OTT 구독료 등)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있다는 비율(30.3%) 보다 낮게 나왔다. 유보적인 의견이 25.2%로 나왔고, 스포츠 경기를 위해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52.4%로 과반수를 넘겼다.

그래서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눠 향후 인기스포츠 시청을 위해 유료 구독료 등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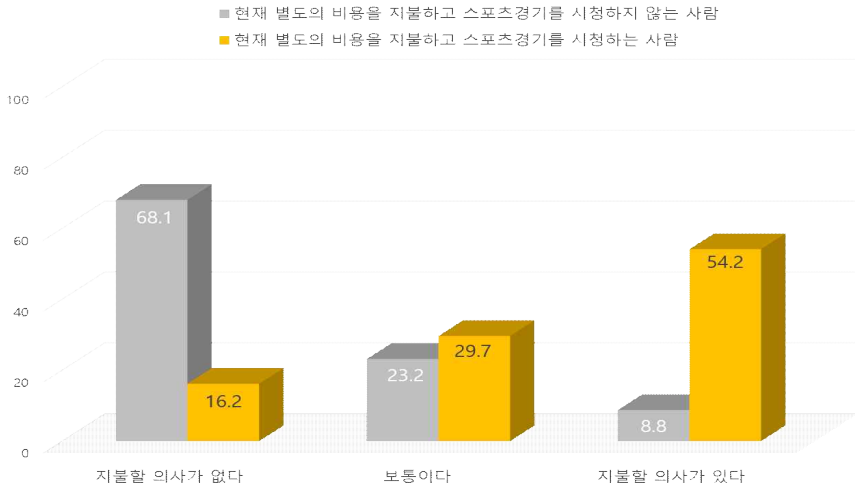
는지를 물어보았다. 우선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향후 인기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8.8%에 불과했다. 지불할 의사가 없다(전혀 없다+별로 없다)는 의견은 68.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보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는 23.2%로 나왔다. 반면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 향후 인기스포츠 경기 시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자는 54.2%로 나왔다. 즉 현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며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있지만 이중 2명 중 1명은 앞으로도 인기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고, 3명 중 1명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앞으로는 인기스포츠 시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사람은 16.2%에 불과했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현재 인기스포츠 시청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사람들은 향후에도 유료구독료를 지불하면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은 향후에도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향후에도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4_24> 추후 인기스포츠 시청을 위해 유료 구독료 등의 비용지불의사 여부

추후 인기스포츠 시청을 위해 유료 구독료 등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경기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	
	빈도	%	빈도	%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다	302	28.7	16	3.5
지불할 의사가 별로 없다	414	39.4	58	12.7
보통이다	244	23.2	136	29.7
지불할 의사가 조금 있다	86	8.2	210	45.9
지불할 의사가 아주 많다	6	0.6	38	8.3
전체	1052	100.0	458	100.0

[그림 4_7] 추후 인기스포츠 시청을 위해 유료 구독료 등의 비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의 여부



3. 요약 및 결론

1) 조사결과 요약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고시 규정에 따라 3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번 조사는 2025년 11월 13일 (목)부터 21일(금)까지 약 9일 동안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성/연령/지역별 할당표본추출을 바탕으로 인구 구성비에 맞추어 전국 20~69세 일반 국민 1,510명을 대상으로 표본 비례할당하여 조사를 진행했다. 설문 항목은 주로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와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인지도

우선 국민 10명 중 6명(64.0%)은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가령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일정수준 이상의 가시청가구를 확보해야 한다”는 문항에 대해서 44.6%정도만이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중계범위에 대한 의견

그래서 구체적으로 현 제도의 기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즉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와 같은 국민관심행사 그리고 이보다는 국민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시안게임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 그리고 WBC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몇 % 이상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등과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경우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응답자는 27.9%(420명)로 가장 높게 나왔다. 특히 젊을수록 국민관심행사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의견(20대 33.1%, 30대 31.9%, 40대 28.1%)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아시안게임이나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와 같은 국민관심행사 중계에 대한 의견도 현 규정인 ‘75%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이 나왔다. 특히 ‘75% 이상’, ‘80% 이상’, ‘90% 이상’을 모두 합하면 63.4%로 더 높아진다.

- 국민관심행사 콘텐츠 이용행태

국민관심행사 스포츠경기 11개에 대해 실제로 얼마나 시청하는지를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이 중에서 3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스포츠 경기는 하계 올림픽(M=3.5), 동계 올림픽(M=3.35), FIFA 성인 남자 월드컵(M=3.34), 하계 아시안게임(M=3.04), 동계 아시안게임(M=3.0) 뿐이며, 나머지 종목은 모두 3.0점 미만으로 시청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왔다. 국가대표 평가전(친선경기 포함)(2.88점), 국제야구대회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2.76점),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2.69점), FIFA 성인 여자 월드컵(2.21점)은 시청경험이 높지 않았고, 국민관심행사는 아니지만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조사항목에 넣은 패럴림픽의 시청정도는 5점 만점에 1.91점으로 나왔다.

이를 2019년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2019년 대비 2025년 시청이 늘어난 종목이 있는가 하면 떨어진 종목도 있었다. 2019년 대비 시청이 늘어난 종목은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

픽, 동계 아시안게임이다. FIFA 성인 여자 월드컵도 2019년에 비해 2025년 시청비율이 소폭 늘어났으나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중에서는 '시청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이다. 반면 2019년 대비 2025년 시청이 감소한 스포츠 경기는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경기와 성인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로 나왔다. 성인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는 3개인데,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은 2019년에 비해 2025년 시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고, 국가대표 평가전(친선경기 포함)은 다른 두 경기에 비해 시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따라서 성인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경기중 2019년 대비 2025년 시청 감소폭이 큰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과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경기의 경우 향후 시청 추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외 하계 아시안게임과 국제야구대회인 WBC는 2019년 대비 2025년 시청정도에 거의 변화가 없었다.

- 시청방식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를 어떻게 시청했는지를 물어본 결과,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 40% 이상이 되는 인기 스포츠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 40% 미만인 경우는 하이라이트로 시청했다는 응답이 많았다. 참고로 '많이 또는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 40% 이상이 되는 인기 스포츠는 동, 하계 올림픽,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세 종목 뿐이다. 한편 '경기 종료 후 전체 다시보기'로 시청한 경우는 대부분 20%대 이하로 나와 스포츠 경기 시청방식이 실시간 생방송에서 하이라이트, 다시보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인기 종목 위주로 시청하는 행태도 바뀌지 않았다.

- 생방송 시청매체

생방송으로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경우 대부분 텔레비전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왔다. 인기 스포츠의 경우는 10명 중 8~9명이, 상대적으로 시청정도가 낮은, 즉 5점만점에 3.0 미만인 성인 남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시청정도 5점만점 2.41~2.79) 경기도 10명 중 약 7명은 텔레비전으로 경기 중계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왔다.

-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관심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중에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에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나라 선수가 출전하지 않는 경기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경향은 2022년 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관심행사는 아니지만 국민관심행사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올림픽인 패럴림픽도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우 관심도가 높아졌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우에도 국민 관심도는 5점 만점에 2.87로 높지 않았다. 패럴림픽에 대한 국민관심도가 다른 국민관심행사에 비해 낮은 이유로는 방송중계 시간이 현저히 적은 이유도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2021년에 개최된 2020 도쿄 패럴림픽의 경우 텔레비전은 개막식, 폐막식 위주로 편성되었고, 전체 중계 시간도 도쿄 올림픽 중계방송의 1/10 수준이었다.

-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중 유지되거나 혹은 제외되어야 하는 종목에 대한 인식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중에서 유지되거나 혹은 제외되어야 하는 종목에 대한 인식을 7점 척도로 물어보았다. 7점 척도의 경우 4점을 중심으로 그 이상이면 유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4점 미만이면 제외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국민관심행사 전 종목이 4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계 올림픽(5.75)과 동계 올림픽(5.67)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종목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패럴림픽은 현재 국민관심행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국민의 58.2%가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추가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였다. 즉 국민 10명 중 6명이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한 것이다.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6%에 불과했다.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는 의견이 과반을 넘었지만, 패럴림픽의 시청정도는 5점 만점에 1.91점으

로 낮게 나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청정도로 보았는데, 패럴림픽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46.8%로 나와 53.2%는 패럴림픽을 시청한 경험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중 '매우 많이 시청한다'와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고 답한 적극적 시청자는 8.6%로 나왔고, 나머지 44.6%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패럴림픽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 국민관심행사 중계에 대한 의견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식에 대한 의견과 관련해서는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3.42점)는 의견과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3.47점)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비슷하게 나왔다. 2022년 조사에서도 두 의견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고, 동의 수준도 2025년과 비슷했다. 두 문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한 것임에도 동의 정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중계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방송사의 자율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은 것도 다른 한쪽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닌,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경기 중계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정부가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은 아닌가 한다. 다만 연령별로 보면 인식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60대는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에 동의한 비율(M=3.7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고, 20대부터 59대까지의 연령대에서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방송중계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M=3.51)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이 “스포츠 경기 등의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M=3.32)는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왔다.

-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한 국민관심행사 시청 의견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를 방송을 통해 중계하더라도 추가로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유료

OTT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66.4%로 높게 나왔다. 또 연령별로는 뚜렷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는데, 즉 젊을수록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또는 유료 OTT에서도 추가 시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 국민관심행사 편성 만족도

국민관심 스포츠 중계 편성에 대한 의견은 4개 문항으로 측정했는데, 편성관련 4개 설문문항은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편향되지 않는 응답을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진술문으로 구성해 동의 정도를 물어본 것이다. 비 인기스포츠 경기를 편성하지 않은 문제와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편함에 초점을 두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4개 문항 중에서 국민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문항은 “올림픽, 월드컵 등은 1~2개 방송사에서만 중계하고 다른 방송채널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M=3.51)와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M=3.43)는 두 문항이 3.4~3.5점대의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나머지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M=3.11)는 문항과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개의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M=3.17)는 두 문항은 3.1점대의 점수를 받았는데, 이는 설문 내용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또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22년 조사에서는 2025년 조사보다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과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의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는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더 높았고, 이 두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가 2025년 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연령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특히 60대에서 스포츠 중계를 중복 편성하는 것에 대한 반감을 강하게 나타냈다. 20대는 동일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도 해설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이라는 의견을 보여 60대와는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 스포츠경기 시청패턴

스포츠는 다른 미디어콘텐츠에 비해 매니아층이 강한 장르로 현재 별도의 비용(OTT 구독료 등)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30.3%가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OTT를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향후에도 인기 스포츠 시청을 위해 유료 구독료 등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지 않은 사람들은 향후에도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으며, 현재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향후에도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정책적 제언

이상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관심행사 지정 및 중계 편성과 관련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중계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올림픽이나 월드컵과 같은 인기 종목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올림픽이나 월드컵 보다는 국민 관심도가 떨어지는 아시안게임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 등은 75%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따라서 현 국민관심행사 중계 범위 기준이 되는 90%와 75%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경기는 총 11개이다. 이중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종목은 무엇이고 또 제외해도 되는 종목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조사결과 국민관심행사 전 종목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경기에 대한 시청정도를 2019년과 2025년을 비교해 볼 때, 올림픽과 같은 인기종목은 2019년에 비해 2025년 소폭이나마 시청이 늘어났고, 일부는 2019년과 2025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런데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경기와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경기는 2019년에

대비 2025년 시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따라서 이들 종목의 경우에는 향후 시청 추이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민관심 인기 스포츠 경기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경우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경기 종료 후 다시보기'로 시청한다는 의견이 높지는 않지만 20% 이하로 나오고 있고, 10명 중 6명은 방송을 통해 중계하더라도 추가로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유료 OTT 서비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한 점을 고려할 때, 국민관심행사의 중계범위를 온라인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넷째,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 종목에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58.2%(매우 동의+동의를 하는 편)가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로 추가하는 것에 동의했다.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에 포함시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6%에 불과했다. 한편 패럴림픽 시청정도를 보면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은 46.8%로 나와 53.2%는 패럴림픽을 시청한 경험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중 '매우 많이 시청한다'와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고 답한 적극적 시청자는 8.6%로 높지 않지만, 나머지 44.6%는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패럴림픽을 시청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이다. 따라서 패럴림픽을 국민관심행사 종목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패럴림픽 경기에 대한 시청이 늘어나는 추세를 고려하여 판단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로 2022년 대비 2025년 패럴림픽에 대한 시청은 소폭이지만 증가했다.

다섯째, 국민관심행사 스포츠 경기 중계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방송사의 자율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정부의 관여가 필요한지를 물어보았는데, 2022년과 2025년 모두 두 의견에 대한 국민의 동의 정도가 비슷하게 나왔다. 두 문항은 서로 다른 내용을 기술한 것임에도 동의 정도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스포츠 경기중계에 대한 정부의 관여와 방송사의 자율은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은 것도 다른 한쪽이 반드시 틀린 것도 아닌, 상황에 따라 혹은 필요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스포츠 경기 중계는 방송사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정부가 관여해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여섯째,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 편성과 관련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은 국민관심 스포츠 경기라 하더라도 모든 채널에서 중복해서 스포츠 중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으며, 일부 채널에서는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분명히했다. 다만 2022년에 비해 2025년 중복편성으로 인한 불편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20대 젊은 층에서는 동일한 스포츠 경기를 중계해도 해설자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적이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일곱째, 스포츠 경기 유료 시청과 관련해 현재 별도의 비용(OTT 구독료 등)을 지불하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은 10명 중 3명 정도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재 별도의 비용을 내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한 사람들은 향후에도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높은 반면, 현재 별도의 비용을 내고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지 않는 사람들은 향후에도 스포츠 경기를 시청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5장 결론

국민관심행사의 범위에 대한 논쟁은 기존에 TV채널, 포털 등을 통해 추가 지출 없이 시청 가능하던 스포츠 경기가 구독형 유료 OTT를 통해서 중계될 때마다 부상하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현행 목록이 국민의 관심도와 소비 행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며, 결국 어떤 이벤트가 ‘국민적 관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기준 설정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해당 이슈는 ‘국민적 관심’의 판단기준과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해야 할 적정 수준을 정립한 뒤, 이를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의 문제로 접근하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관심행사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행 목록에 대한 국민의 인지·관심 수준을 측정하고, 제외 또는 신규 편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행사, 보편적 시청권 및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접근 보장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분석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중계 범위의 기준과 목록 구성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한편,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제도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올림픽·월드컵과 같이 국민적 관심이 압도적으로 높은 이벤트에 대해서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아시안게임이나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 A매치처럼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이벤트에 대해서는 ‘75% 이상이 시청 가능한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우세했다. 이는 현행 국민관심행사 중계범위 기준인 90%와 75%가 국민 인식과 대체로 정합적임을 시사하며, 당장 기준 자체를 변경하기보다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또한 국민관심행사로 지정된 스포츠 경기(행사) 목록 전반에 대하여 국민적 수용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시청 추이를 비교하면 올림픽과 같은 인기 이벤트는 2019년 대비 2025년에 소폭 증가하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AFC 아시안컵, EAFF 동아시아안컵은 2019년 대비 2025년 시청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향후 해당 종목의 관심도 변화와 시청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식과 관련해 정부의 관여 여부에 대한 인식은 한쪽으로 뚜렷하게

기울지 않았다. “중계는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3.42점)와 “국민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여가 필요하다”(3.47점)라는 두 질문에 대한 동의 수준이 2025년 조사에서 거의 동일하게 나왔고, 2022년 조사 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자율’과 ‘개입’을 대립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중계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시청 방식과 보편적 시청권 제도 운영에 관한 인식은 해당 이슈를 방송 중심으로만 접근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드러났다. 66.4%의 응답자는 방송을 통해 경기가 중계되더라도 추가로 온라인 스트리밍 또는 유료 OTT 서비스를 통해 함께 시청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응답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국민들의 인식과는 달리, 현행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디지털 중계권에 대한 공백을 안고 있다. 스포츠 시청의 중심축이 TV에서 OTT·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이동했음에도, 현행 규율은 여전히 지상파·유료방송 등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요 스포츠 경기의 중계가 OTT로 전환되는 국면마다, 온라인 동영상 매체를 보편적 방송 수단으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방송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가시청 가구 기준 등 온라인 매체에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와 같은 쟁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이에 보편적 시청권의 디지털 중계권 이슈는 단순히 적용 매체의 확장 여부를 넘어, 디지털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정책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방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보편적 시청권 체계에 포함한 국가의 제도 현황과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주요국의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여전히 무료 지상파 또는 공영방송(PSB)이 보편적 제공의 중심축을 형성하지만, 온라인·스트리밍 이용 증가가 가져온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영국과 호주는 온라인·스트리밍 환경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방법을 택했다. 영국은 방송 중심의 보편적 시청권 틀을 유지하되, 법제 차원에서 온라인 제공을 보편적 제공의 중요한 수단으로 명시하며 공영방송(PSB/PSM)의 서비스 범위를 TV에서 스트리밍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 다수의 합리적 접근 가능 여부를 중심 가치에 두고, 특정 범주의 이벤트에 대해 유료

독점 계약이 사실상 규제기관의 통제·동의 절차와 결합되도록 설계했다. 즉, 보편적 시청권을 '권고적 편성 관행'이 아니라 권리 계약의 성립과 유통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장치로 다루면서, 중계권 거래의 상업적 현실을 인정하되 공익적 하한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호주 역시 유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지만 접근 방식은 달랐다. 안티-사이포닝 체계를 온라인 스트리밍까지 확장해 권리 취득 우선권을 재조정하고, 연결형 TV 환경에서 무료 지상파·공적 서비스의 접근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를 함께 도입함으로써, 디지털 유통이 확대되는 조건에서도 보편적 시청권이 후퇴하지 않도록 규제의 범주를 넓혔다. 두 나라 모두 디지털을 단순히 '추가 매체'로 취급하기보다, 권리 구조와 유통 경로가 바뀐 현실에서 보편적 시청권이 작동하는 지점을 온라인 플랫폼 단계로 끌어올려 설계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는 제도 외형상 여전히 전통적 방송 중심의 틀을 유지하는 간접적 대응이 두드러진다. 독일은 방송을 기본적으로 TV 편성표에 따라 송출되는 선형서비스 중심으로 엄격히 구분해 규율한다. 이런 체계에서 보편적 시청권 논의는 OTT까지의 접근성을 보장한다기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암호화, 특별요금 부과 등 유료화로 인해 시청이 배제되는 상황을 막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공영방송이 대형 이벤트를 무료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면서, 법적 의무보다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가령 독일 공영방송인 ARD·ZDF가 예산의 약 5%를 중계권에 투입하여 핵심 이벤트 권리를 꾸준히 확보해 온 것은 대형 이벤트를 무료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공적 책무의 일환이다. 프랑스 역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벤트가 폐쇄적 유료 서비스에 의해 독점되는 상황을 제한하는 틀은 유지하되, 실제 제공은 공영·지상파 사업자가 공식 웹·앱을 통한 동시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 중계 및 시청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기존의 '지상파 무료 중계 여부'만으로 보편적 시청권 이슈를 접근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유료 OTT 중계의 시청 가능 여부는 구독료 등 추가 비용, 서비스 이용 장벽, 실제 도달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향후 제도 개선은 매체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무료 접근 가능성, 추가 부담의 존재 여부, 합리적 접근 조건, 국민 다수에게 도달 가능한 범위라는 기준을 중심으로 '플랫폼 중립적 보

편성'의 의미를 먼저 정립해야 한다. 이 기준이 있어야 온라인 제공을 보장 수단으로 인정할지, 인정한다면 어디까지를 보장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제도 운영 방식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서는 중계권 거래가 민간의 상업적 계약에 맡겨지고, 보편적 접근권은 편성 관행이나 여론을 통해 사후적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영국은 보편적 시청권을 계약 단계에서 작동시키는 구조를 두어 실효성을 확보한다. 국내 또한 국민관심행사에 해당하는 이벤트에서 계약·유통 단계에서 충족해야 할 보편성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제공 방식에 대해 규제기관이 개입할 수 있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 핵심은 거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전제로 삼아야 할 최소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국민관심행사 목록 운영의 정당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정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 영국은 사회·문화적 의미와 합리적 시청자의 기대, 전 국민 접근 필요성을 기준으로 삼고, 프랑스는 일반적 공명과 문화적 중요성, 국가 대표성, 무료 중계 관행과 시청자 기대를 판단 요소로 제시한다. 호주는 가이드라인으로 목록의 유지·제외 원칙을 관리한다. 한국도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행사'라는 추상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사회·문화적 중요성, 국가 대표성, 접근 필요성, 배제 위험, 시청자 기대와 관행 같은 핵심 기준을 시행령 또는 운영지침 수준에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현행 중계범위의 기준과 목록이 국민의 인식과 크게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당장의 전면 개편을 전제로 접근하기보다는 현행 틀을 기반으로 제도의 작동 방식을 보완하는 접근이 보다 합리적이다. 다만 중계와 시청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흐름을 감안하면, 향후 논의는 'OTT 포함 여부'와 같은 형식적 쟁점에 머무르기보다는 무료 접근 가능성, 추가 비용·가입 장벽, 국민 다수의 실제 도달 가능성 등 보편성을 구성하는 기준을 정교하게 다듬고, 그 기준이 중계권 거래와 제공 방식에 무리 없이 반영되도록 절차와 운영 원칙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국내 문헌

- 곽규태 (2023). 스포츠 중계권 확보 경쟁과 보편적 시청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412>
- 곽동균 외 (2015).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제도화 방안 연구>. 미래창조과학부.
- 김원제 (2024). OTT 시대 스포츠 중계와 보편적 시청권. <방송문화>, 428호, 61-71.
- 김정용 (2024). 국제 스포츠 이벤트 중계권 관련 분쟁사례 및 법적 분석을 통한 국내 보편적 시청권 연구.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석사학위논문>.
- 권영·이영주 (2025). TV와 OTT에 대한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 인식 차이 연구. <한국소통학보>, 24권 2호, 137-168.
- 노창희·이찬구·성지연·윤금남·이수연 (2019).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관심행사 기준 개선에 관한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노창희 외 (2022).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서 보편적시청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노창희 (2023). 디지털 대전환기 보편적 시청권 제도 재검토. <언론과법>, 22권3호, 123-160.
- 뉴스토마토 (2024.8.6). 야구·농구·축구 품은 OTT…돈 내야 보는 스포츠 증가. <https://www.newstomato.com/ReadNews.aspx?amp%3Binflow=N&no=1237163>
- 뉴시스 (2024.7.17). SOOP, 2024 파리 올림픽·패럴림픽 생중계. https://www.news1.com/view/NISX20240717_0002815157
- 뉴시스 (2024.7.30). 웨이브 "한국 女 양궁 단체전 생중계, 동시접속자 5.2배↑". https://www.news1.com/view/NISX20240730_0002830750
- 도준호 (2025). OTT의 스포츠 중계 확대와 보편적 시청권.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 논문지>, 25권 2호, 191-198.
- 매일일보 (2024.1.8). 티빙, 프로야구 중계권 확보…온라인 중계 유료화 우려.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082531>

메조미디어 (2024). <2024 OTT 업종 분석 리포트>.

메조미디어 (2025). <2025 OTT 업종 분석 리포트>.

미디어오늘 (2025.12.10). 한국 시장 휩쓴 넷플릭스 10년, '독'인가 '독'인가.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069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2025년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2024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2024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25). <2024 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

백지원 (2023). 스마트 TV와 OTT 서비스 이용이 IPTV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경제연구>, 45권4호, 153-172.

백진주 (2023). OTT 서비스 선택의 결정 요인 및 이용자 특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봉미선·신삼수. (2022). OTT 시대 보편적 시청권 실현을 위한 시론적 논의: 스포츠 이벤트를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1권 2호, 165-201.

비즈워치 (2025.3.16). 스포츠 중계로 또 맞붙는 쿠팡·티빙...승자 누굴까. <https://v.daum.net/v/HoQUIGloTp?f=p>

신삼수·봉미선 (2024). 방송과 통신의 '보편적 서비스' 개념과 용어 사용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127호, 182-205.

심미선·하주용·홍평기·김지연 (2024). <해외 보편적 시청권 보장 제도 분석 및 국내 제도 발전방안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연합뉴스 (2025.9.14). 쿠팡플레이, '손흥민 뛰는' LAFC 전 경기 한국어 생중계. <https://v.daum.net/v/20250914130905082>

윤성욱 (2019). 방송사 순차편성 합의에 따른 올림픽 중계방송 편성분석. 베이징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7권 3호, 89-129.

이선미 (2024). OTT 서비스와 유료방송 이용 간 관계에 관한 연구: 국내 6개 OTT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8권9호, 47-58.

이코노믹데일리 (2024.9.4). 쿠팡 '와우 멤버십' 구독료 인상에도 이용자 더 늘었다. <https://www.economidaily.com/view/20240904083346123>

전자신문 (2025.2.16). 네이버 치지직, 하얼빈 아시안게임 중계 '특수'...신규 이용자 10배 증가. <https://www.etnews.com/20250214000223>

조선비즈 (2025.2.06). 쿠팡플레이, 세계 최대 스포츠 축제 'NFL 슈퍼볼' 풀 패키지 생중계 한다. https://biz.chosun.com/sports/sports_general/2025/02/06/MWOVWWY2L5A4GBYJXWNVFVYUTQ/

조선일보 (2022.4.12). K리그 중계권의 혁명, 한국 프로스포츠 사상 최초 OTT 생중계 도전. https://www.chosun.com/sports/sports_photo/2022/04/12/IJMIAUCJMMVTKJL2IYVHBD5TBY/

조선일보 (2024.6.27). 프로농구도 티빙에서 본다... 4년간 KBL 중계권 확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06/27/BMC6WLOJSBEM5JCIBEOBJKSQDY/>

지디넷코리아 (2024.8.7). 숲, 파리 올림픽 효과 톡톡... "심야에도 45만 명 시청". <https://zdnet.co.kr/view/?no=20240807111353>

지디넷코리아 (2025.12.17). 티빙, '2026 WBC' 전 경기 OTT 독점 생중계. <https://zdnet.co.kr/view/?no=20251217103405>

주성희·김현정·노은정(2019). <보편적 시청권 개념 및 제도 재정립 방안 연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계청 (2025). <2025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파이낸셜뉴스 (2025.6.15). "충성고객 유입"... OTT, 스포츠 중계권 쟁탈전 후끈. <https://www.fnnews.com/news/202506151822369897>

한겨레 (2022.8.14). "손흥민 경기 보려면 돈내" OTT 경쟁에 '보편적 시청권' 논란.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054692.html

한국경제 (2025.2.6). "유명 스트리머와 함께"...치지직, 동계 아시안게임 중계.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2068081g>

한국경제 (2025.3.24). 쿠팡플레이, 2025~2026시즌부터 EPL 국내 독점 중계. <https://www>

w.hankyung.com/article/202503244214i

한국방송진흥공사 (2025). <2024 방송통신광고비조사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4). <2024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2025 콘텐츠 이용행태 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2025). 2024년도 글로벌 및 국내 OTT 서비스 사업자 결산 분석. <방송 영상·OTT트렌드>, 2025-1호. https://www.kocca.kr/trendott/vol01/data_2.html

한영주 (2022). 방송콘텐츠의 시청자 감성에서 나타난 TV 채널과 OTT 서비스의 경쟁 관계에 관한 연구: 미디어 적소 분석을 활용한 적소폭, 적소중복, 경쟁우위를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23권3호, 35-75.

국외 문헌

ABC (2025.3.4). AFL Saturday matches disappear completely from free-to-air TV for home-and-away season in Victoria, Tasmania and NT. <https://www.abc.net.au/news/2025-03-04/afl-saturday-pay-tv-versus-free-to-air/105008308>

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2025. 3. 4.). AFL Saturday matches disappear completely from free-to-air TV for home-and-away season in Victoria, Tasmania and NT. <https://www.abc.net.au/news/2025-03-04/afl-saturday-pay-tv-versus-free-to-air/105008308>

ACMA (2006). Meeting the Digital Challenge - Reforming Australia's media in the digital age: Discussion Paper on Media Reform Options [ACMA Media consultation paper]. https://www.iecee802.org/18/Meeting_documents/2006_May/ACMA_Media_consultation_paper_Final_.pdf

Australian Government (2022. 10.). Review of the anti-siphoning scheme: Consultation paper. Department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 <https://www.infrastructure.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anti-siphoning-consultation-paper-oct-2022.pdf>

Australian Government (2023. 08.). Anti-siphoning review-Proposals paper. Department

- of Infrastructure, Transport, Regional Development, Communications and the Arts. <https://www.infrastructure.gov.au/sites/default/files/documents/anti-siphoning-review-proposals-paper.pdf>
-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Impact Analysis (2017. 11) Reform of the Anti-Siphoning Scheme: Regulation Impact Statement. https://oia.pmc.gov.au/sites/default/files/posts/2017/11/anti-siphoning_ris.pdf
- Australian Government, Office of Impact Analysis (2023. 11). Reform of the Anti-Siphoning Scheme: Second Pass Impact Analysis. https://oia.pmc.gov.au/sites/default/files/posts/2023/11/Impact%20Analysis_0.pdf
- Australia Minister for Communications (2024. 11. 29). Broadcasting Services(Anti-Siphoning List) Instrument 2024. https://www.legislation.gov.au/F2024L01655/asmade/2024-12-16/text/original/epub/OEBPS/document_1/document_1.html
- Back, A. & Sung, D. (2024. 8. 13). How to watch Olympics 2024: live stream options, TV channels, closing ceremony, full replays. <https://www.techradar.com/how-to/watch-olympics-live-stream>
- Begründung zum Siebten Staatsvertrag zur Änderung medienrechtlicher Staatsverträge Reform des öffentlich-rechtlichen Rundfunks (Reformstaatsvertrag). https://rundfunkkommission.rlp.de/fileadmin/rundfunkkommission/Dokumente/ReformStV/7._MAESTV_ReformStV_Staatsvertrag_und_Begrueundung/7._MAESTV-ReformStV_Begrueundung_FINAL_mit_Datum.pdf
- BR 24 (2025.11.30.). Reformstaatsvertrag: Was sich bei ARD und ZDF ändert. <https://www.br.de/nachrichten/deutschland-welt/reformstaatsvertrag-was-sich-bei-ard-und-zdf-aendert,V3kV9eT>
- Broadcasting Act 1996, c. 55 (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1996/55>
- Broadcasting Services Act 1992 (Australia). https://www.legislation.gov.au/C2004A0440/1/2024-12-17/2024-12-17/text/original/epub/OEBPS/document_1/document_1.html

Bundesrepublik Deutschland (2020). Medienstaatsvertrag (MStV).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MStV>

CMS Law-Now (2025. 8. 11). Ofcom consultation on listed events concludes. <https://cms-lawnow.com/en/ealerts/2025/08/ofcom-consultation-on-listed-events-concludes?format=pdf&v=12>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2a). Listed events: Digital rights review–Terms of reference. UK Government.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listed-events-digital-rights-review/listed-events-digital-rights-review-terms-of-referenc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2b). Government adds women’s international football tournaments to listed events regime.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adds-womens-international-football-tournaments-to-listed-events-regime>

Department for Digital, Culture, Media & Sport (2023). Media Bill: Overarching impact assessment. UK Government.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media/65a9336294c99700daeba20/Media_Bill_-_overarching_impact_assessment.pdf

European Commission (2024). Commission Decision C(2024) 3936 final on the compatibility with Union law of the measures adopted by France pursuant to Article 14 of Directive 2010/13/EU.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4D3936>

European Commission (2025. 6. 30).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content & distribution rules.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policies/avmsd-content-distribution>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0).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95, 1-24.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

TXT/?uri=CELEX:32010L0013

- European Parliament and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2018). Directive (EU) 2018/180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L 303, 69-92. <https://eur-lex.europa.eu/eli/dir/2018/1808/oj>
- European Union Directive (EU) 2018/18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November 2018 amending Directive 2010/13/EU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rovision of audiovisual media services (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in view of changing market realities. EUR-Lex 32018L1808. <https://eur-lex.europa.eu/eli/dir/2018/1808/oj/eng>
- Fraser, N. (2024. 3. 20).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Prominence and Anti-siphoning) Bill 2023. BILLS DIGEST NO. 57, 2023, 호주 의회 입법조사처. https://parlinfo.aph.gov.au/parlInfo/download/legislation/billsdgs/9655992/upload_binary/9655992.pdf
- Gralon (2024. 7. 23). Paris 2024: How To Watch The Olympics On TV?. <https://gralon.com/articles/news-and-media/television/article-paris-2024-how-to-watch-the-olympics-on-tv-14032.html>
- Hutchins, B., Li, B., & Rowe, D. (2019). Over-the-top sport: live streaming services, changing coverage rights markets and the growth of media sport portals. *Media, Culture & Society*, 41(7), 975-994. <https://doi.org/10.1177/0163443719857623>
- Kelham, A. & Hart, H. (2022. 11. 23.). DCMS reviews broadcast rules around listed sporting events. Lewis Silkin LLP. <https://www.lewissilkin.com/insights/2022/11/23/dcms-reviews-broadcast-rules-around-listed-sporting-events-102i1h6>
- Kühling, J., & Goldhammer, M. (2021). *Medienrecht* (6th ed.). München: C.H. Beck.
- Lewis Silkin LLP. (2024). The Media Act 2024: Ofcom set for action - listed events and other updates.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90ae5de0-eeba->

4f8d-8e76-eb93a7557061

- Lonsdale, J. (2024. 8. 08.). How to watch the 2024 Summer Olympics online without cable, Rolling Stone. <https://www.rollingstone.com/product-recommendations/lifestyle/how-to-watch-2024-paris-olympics-online-live-stream-1235067220/>
- López-González, H., Stavros, C., & Smith, A. C. (2017). Broadcasting sport: Analogue markets and digital rights, *International Communication Gazette*, 79(2), 175-189
- Media Act 2024, c. 15 (UK).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24/15>
- Ofcom (2021). Small screen Big debate: 'Recommendations to government on the future of Public Service Media'.
- Ofcom (2023. 7. 25). Code on sports and other listed and designated events. <https://www.ofcom.org.uk/tv-radio-and-on-demand/listed-sporting-events/code-sports-events/>
- Ofcom (2024a. 7. 18.). Call for evidence: Listed events - Implementing the Media Act 2024. <https://www.ofcom.org.uk/tv-radio-and-on-demand/listed-sporting-events/cfe-implementing-the-media-act-2024/>
- Ofcom (2024b). Listed sporting events: Implementing the Media Act 2024.
- Ofcom (2025. 6. 13). Consultation: Listed events - Implementing the Media Act. <https://www.ofcom.org.uk/siteassets/resources/documents/consultations/category-3-4-weeks/consultation-listed-events---implementing-the-media-act-2024/main-documents/consultation-listed-events---implementing-the-media-act-2024.pdf?v=398467>
- Osborne Clarke LLP. (2020. 11. 24.). Germany: New State Treaty on Media has entered into force - an overview. <https://www.osborneclarke.com/insights/germany-new-state-treaty-media-entered-force-overview>
- Parliament of Australia (2024.3.20). Communications Legislation Amendment (Prominence and Anti-siphoning) Bill 2023. Bills Digest No.57, 2023-24.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d/bd2324a/24bd057

- Régifrance française (2024). Décret n°2004-1392 du 22 décembre 2004 pris pour l'application de l'article 20-2 de la loi n° 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786247>
- République française (1986). Loi n°86-1067 du 30 septembre 1986 relative à la liberté de communication. <https://www.legifrance.gouv.fr/loda/id/JORFTEXT000000693916>
- République française (2024). Décret n°2024-699 du 5 juillet 2024 modifiant le décret n°2004-1392 relatif aux événements d'importance majeur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9908703>
- Schoenthal, M. (2006). Major Events and Reporting Rights. Strasbourg/Brussels: European Audiovisual Observatory & Institute of European Media Law (EMR). <https://rm.coe.int/16807833ca>
- Serin, B. (2025. 9. 02). Où et comment regarder les JO 2024: chaînes TV, streaming et accès en direct [2024년 올림픽 시청 방법: TV 채널, 스트리밍 및 실시간 시청] <https://jo2024-paris.fr/ou-et-comment-regarder-les-jo-2024-chaines-tv-streaming-et-acces-en-direct>
- UK Parliament, House of Commons Library (2022). Broadcasting: listed sporting events (Research Briefing SN00802). <https://commonslibrary.parliament.uk/research-briefings/sn00802/>
- Weidner, M. (2024. 10. 29.). ARD & ZDF: No reduction in sports rights. The ARD and the ZDF are to continue to invest around five percent of their total budgets in sports rights. Teltarif.de. <https://www.teltarif.de/en/ardzdf-sportrechte-etat-kosten/news/96967.html>
- ZDF Presseportal (2025. 10. 07) ARD und ZDF übertragen 60 Spiele der FIFA Fußball-WM 2026. <https://presseportal.zdf.de/pressemitteilung/ard-und-zdf-uebertragen-60-spiele-der-fifa-fussball-wm-2026>
- Zweites Deutsches Fernsehen (2023). Staatsvertrag über das Zweite Deutsche Fernsehen

(ZDF – Staatsvertrag). <https://www.zdf.de/zdfunternehmen/zdf-staatsvertrag-100.html>

부 록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인식 조사

안녕하세요.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은 올림픽, 월드컵과 같은 국민관심행사 및 이들 행사에 대한 시청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 정보는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끝까지 성심껏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관심행사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설계(온라인 설문)

사전 질문

연령

SQ1. 귀하의 출생년도는 어떻게 되십니까?

0. 2006 ~ (10대) ->설문중단
1. 2005 to 1996 (20대)
2. 1995 to 1986 (30대)
3. 1985 to 1976 (40대)
4. 1975 to 1966 (50대)
5. 1965 to 1956(60대)
6. 1955 to 1900 (70대 이상) ->설문중단

성별

SQ2.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남자
- 2) 여자

지역

SQ3. 귀하가 거주하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
- 9) 강원
- 10) 충북
- 11) 충남(세종 포함)
- 12) 전북
- 13) 전남
- 14) 경북
- 15) 경남
- 16) 제주

설문에 앞서, 관련 제도에 대한 퀴즈(2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성
심껏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다음은 **보편적 시청권** 제도에 대한 퀴즈입니다.

Q1. 단순 퀴즈로 생각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정답 여부와 관계없이** 설문
은 계속 진행됩니다.

질문	그렇다	아니다
1.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국민의 관심이 매우 높은 체육 경기대회('국민관심행사')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다.	①	②
2. '국민관심행사'를 중계하고자 하는 방송사는 일정 수 준 이상(경기에 따라 전체 가구수의 75% 이상 또는 90% 이상)의 가시청 가구* 수를 확보해야 한다.	①	②

* **가시청가구** : 국민 전체가구 중 방송을 통해 해당 경기 및 행사를 시청
할 수 있는 가구

보편적 시청권, 국민관심행사는 무엇일까요?

- ◎ 보편적 시청권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및 그 밖의 주요 행사 등에 관한 방송을 일반 국민이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 국민관심행사 :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국가적 차원의 주요행사를 의미합니다.
- ◎ 국민관심행사의 종류 : 보편적 시청권 보장의 대상이 되는 국민관심행사의 종류는 정부가 지정·고시하며 2025년 현재 다음과 같습니다.
 1. **90% 이상:** 동·하계 올림픽과 FIFA(국제축구연맹)가 주관하는 **월드컵 중 성인남자 및 성인여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2. **75% 이상:** 동·하계아시아경기대회, 야구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중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AFC(아시아축구연맹) 및 EAFF(동아시아 축구연맹)가 주관하는 경기(월드컵축구 예선포함), 양 축구협회 간 성인남자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평가전 (친선경기 포함)

1. 국민관심행사 콘텐츠 이용형태

□ 다음은 국민관심행사를 포함한 국제스포츠 경기 시청경험에 관한 질문입니다.

Q2. 귀하는 아래 스포츠 경기를 얼마나 시청하십니까? 최근에 개최된 대회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시오.

- * A매치 : FIFA가 인정하는 공식 축구 국가대표팀 간 경기
- * AFC 아시안컵 : 아시아 총 47개 국가 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4개국이 참가하는 축구대회(4년 주기)
- * EAFF 동아시아컵 :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 동아시아 총 10개국이 참가하는 축구대회(약 2년 주기) 개최

경기 종목	시청 정도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적게 시청하는 편이다	보통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	매우 많이 시청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FIFA 성인 여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동계 아시안게임					
하계 아시안게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국가대표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동·하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Q3. 귀하께서는 아래의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때, **주로 어떤 형태로** 하십니까? (중복 선택 가능)

- * A매치 : FIFA가 인정하는 공식 축구 국가대표팀 간 경기
- * AFC 아시안컵 : 아시아 총 47개 국가 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4개국이 참가하는 축구대회(4년 주기)
- * EAFF 동아시아컵 :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 동아시아 총 10개국이 참가하는 축구대회(약 2년 주기) 개최

경기 종목	시청형태		
	실시간 생방송	경기 종료 후 전체 다시보기	하이라이트
동계 올림픽	①	②	③
하계 올림픽	①	②	③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①	②	③
FIFA 성인 여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①	②	③
동계 아시안게임	①	②	③
하계 아시안게임	①	②	③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①	②	③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①	②	③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①	②	③
국가대표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①	②	③
동·하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①	②	③

Q4. 귀하께서는 아래의 스포츠 경기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때 주로 어떤 매체**를 이용하십니까?

- * A매치 : FIFA가 인정하는 공식 축구 국가대표팀 간 경기
- * AFC 아시안컵 : 아시아 총 47개 국가 간 예선을 거쳐 선발된 24개국이 참가하는 축구대회(4년 주기)
- * EAFF 동아시아컵 : 한국, 일본, 중국, 북한 등 동아시아 총 10개국이 참가하는 축구대회(약 2년 주기) 개최

경기 종목	시청 매체	
	TV	PC,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
동계 올림픽	①	②
하계 올림픽	①	②
FIFA 성인 남자 월드컵(지역예선 포함)	①	②
FIFA 성인 여자 월드컵(지역예선 포함)	①	②
동계 아시안게임	①	②
하계 아시안게임	①	②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①	②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①	②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아컵	①	②
국가대표 평가전(친선경기 포함)	①	②
동·하계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①	②

Q5. 귀하께서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시청할 때, **인기종목 위주로 시청**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인기종목과 비인기 종목을 **고려하지 않고** 시청하는 편입니까? 최근에 개최된 대회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경기 종목		인기(또는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은) 종목 위주로 시청하는 편이다	인기/비인기 종목 고려 없이 시청하는 편이다
올림픽	하계 올림픽 (2024 파리)	①	②
	동계 올림픽 (2022 베이징)	①	②
아시안 게임	하계 아시안 게임 (2022 항저우)	①	②
	동계 아시안 게임 (2025 하얼빈)	①	②

2. 국민관심행사 인식

□ 다음은 국민관심행사를 포함한 국제스포츠 경기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Q6. 귀하께서는 아래의 스포츠 경기 중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경기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경기종목	전혀 관심이 없다	별로 관심이 없다	보통	관심이 있다	매우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올림픽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올림픽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월드컵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아시안게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아시안 게임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국제야구대 회 (WBC)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국제야 구대회 (WBC)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성인남자 축 구 국가대표 A매치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성인남 자 축구 국가대표 A매치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패럴림픽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출전하지 않는 패럴림 픽					

Q7. 다음 각 경기대회가 정부가 지정한 '국민관심행사'에서 **유지되거나** **혹은 제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아래 질문지를 보고 유지되어야 할지또는 제외되어야 할지 아래 7점 척도상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경기종목	1 제외해야 한다.	2	3	4 보통	5	6	7 유지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FIFA 성인 남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FIFA 성인 여자 월드컵 (지역예선 포함)							
동계 아시안게임							
하계 아시안게임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AFC(아시아축구연맹) 아시 안컵							
EAFF(동아시아축구연맹) 동아시안컵							
국가대표 평가전 (친선경기 포함)							

Q8-1. 정부가 지정하는 '국민관심행사'에 패럴림픽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하의 생각을 아래 5점 척도상에 체크해 주십시오.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⑤

Q8-2. 정부가 지정하는 '국민관심행사'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스포츠 경기나 문화행사가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3. 보편적 시청권 인식

□ 다음은 보편적 시청권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Q9-1. 법적으로 올림픽과 월드컵축구 등의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90%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방송 채널에서만 중계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법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려면 몇 % 이상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5% 이상	80% 이상	85% 이상	90% 이상	95% 이상
①	②	③	④	⑤

Q9-2. 아시안게임,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축구A 매치, WBC(월드베이스볼클래식) 등의 국민관심행사의 경우에는 75% 이상의 국민이 시청 가능한 방송 채널에서 중계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국민관심행사 중계는 몇 % 이상의 국민이 시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60% 이상	70% 이상	75% 이상	80% 이상	90% 이상
①	②	③	④	⑤

4. 국민관심행사 편성 만족도

□ 다음은 국민관심행사 편성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Q13. 국민관심행사 편성과 관련하여 귀하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그런 경험이 한번도 없었다.	그런 경험이 별로 없었다	그런 생각을 몇 번 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종종 했던 것 같다.	매번 그런 생각을 한다.
	①	②	③	④	④
국민의 관심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중계되지 않은 올림픽 종목 등을 시청하지 못해 아쉬웠던 경험이 있다.					
올림픽, 월드컵 등의 과도한 중복편성(동일한 경기를 동시에 여러 방송사에서 중계)으로 인해 기존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					

Q14. 국민관심행사 편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읽고 동의하는 정도를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	②	③	④	④
올림픽, 월드컵 등을 여러개의 방송 채널에서 동시에 중계해도 해설 등 방송중계 품질에서 차별성이 있어 괜찮다.					
올림픽, 월드컵 등은 1~2개 방송사에서만 중계하고, 다른 방송채널은 정규 프로그램을 편성해야 한다.					

응답자 배경 문항

학력

DQ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중졸 이하
- 2) 고졸
- 3) 대학교 재학 / 졸업
- 4) 대학원 재학 / 졸업

가구 월 수입

DQ2. 현재 **귀 닥의 월평균 총수입**은 얼마나 되나요? 보너스, 이자수입 등 모든 수입을 합해서 응답해 주십시오.

- 1) 월 99만원 이하
- 2) 월 100 - 199만원
- 3) 월 200 - 299만원
- 4) 월 300 - 399만원
- 5) 월 400 - 499만원
- 6) 월 500 - 599만원
- 7) 월 600 - 699만원
- 8) 월 700 - 799만원
- 9) 월 800 - 899만원
- 10) 월 900 - 999만원
- 11) 월 1,000만원 이상

OTT 이용 여부

DQ3. 귀하께서는 **현재** 유료 구독형 OTT 서비스(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 왓챠 등)를 하나 이상 이용하고 계십니까?

- 1) 이용하고 있다.
- 2) 이용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 시청을 위한 OTT 이용 여부

DQ4. 귀하께서는 **스포츠 경기 시청을 위해** 유료 구독형 OTT 서비스(넷플릭스, 쿠팡플레이, 티빙, 웨이브, 왓챠 등)를 이용하고 계십니까?

- 1) 이용한다.
- 2) 이용하지 않는다.

스포츠 경기 시청 선호도

DQ5. 귀하께서는 평소 스포츠 경기를 얼마나 즐겨 시청하십니까?

- 1) 스포츠 경기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다
- 2) 스포츠 경기를 즐겨 시청하는 편은 아니다.
- 3) 이따금 시청하는 편이다.
- 4) 선호하는 스포츠 경기 위주로 시청하는 편이다.
- 5) 스포츠 경기는 거의 시청한다.

● 저 자 소 개 ●

심 미 선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
- 현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홍 평 기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언론학과 석사
-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 박사

하 주 용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
- 미국 서던일리노이주립대 박사
- 현 인하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김 지 연

- 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언론학과 석사
- 갤럭시아SM 기획팀장
- 팬엔터드라마 총괄프로듀서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5-39

국민관심행사등의 적절성 및 개선방안 연구

2025년 12월 31일 인쇄

2025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mcc.go.kr
